

第190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6.4.3.~4.6.)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90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회식	3
II. 제19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5
III. 제19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3
IV. 부 록	
1. 의사일정	21
2. 2007학년도 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	23
3. 2008학년도 학교설립계획변경안	27
4. 2008학년도 학교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33
5.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7
6.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7
7.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49
VII. 별 책 부 록	
▶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별책1	
▶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 별책2	
▶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자료 : 별책3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4월 3일 (월요일) 15시 00분

開會式順(第190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신현영)

(15시 00분 개식)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신현영

(15시 02분 폐식)

지금부터 제19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전면의 국기를 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4월 3일 (월요일) 15시 02분

議事日程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90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7학년도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
3. 2008학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
4.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06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6.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90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007학년도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교육감 제출)
4. 2008학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5.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6. 2006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7.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제의)

(15시 02분 개의) 포함니다.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충청북도교

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

1. 경과보고

● 의장 고규강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

니다.

● **의사과장 서광범**

의사과장 서광범입니다.

임시회 소집요구와 의안접수 상황, 도의회 안건 처리상황, 그리고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 3월 2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임시회 소집요구와 함께 2007학년도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 2008학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 2006년도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4건이 접수되어 3월 24일 제19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청에 이송한 안건 중 도의회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8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신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3월 31일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부칙내용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괴산중평교육청 명칭에 관련된 사항만은 3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2007학년도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처

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고규강**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90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5시 05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 회기는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7학년도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산회 후에는 예산·결산소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4월 4일과 4월 5일 2일간은 의안 관련 현장방문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4월 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9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4월 3일부터 4

월 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 3. 2007학년도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
- 4. 2008학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
- 5.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6. 2006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5시 07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2007학년도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8학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신강택입니다.

존경하는 고규강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학년도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과 2008학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 기반조성과 취원 기회 제공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존 3학급의 홍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한 5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으로 설립·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2007학년도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
(별첨 2)

(끝에 실음)

다음은 2008학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건축에 따른 유입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당초 200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던 신설학교 중 단지 기반공사 지연, 주택 건축 개발 지연 등의 사유로 일부 학교의 개교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송 생명과학산업단지
에 2008년 3월 개교 예정인 오송중학교
를, 단지 내 문화재 발굴 추진 등으로 택
지 기반조성 공사가 지연되어 공동주택
입주 예정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개교시
기를 2009년 3월로 변경하고자 하며, 오
창 과학산업단지 단독주택 지역에 2008년
3월 개교 예정인 양청초등학교, 양청중학
교를 주택 건축이 지연됨에 따라 주택 건
축 추이를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개교시기
를 조정하고자 2009년 3월 이후로 연기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2008학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
(별첨 3)

(끝에 실음)

다음은 2006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본 의안은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
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유아 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12억 5,623만
원의 사업비로 가칭 홍광초유치원에 753
㎡의 유치원사를 증축하고 교육여건 개선
을 위해 10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생극
초등학교에 846㎡의 다목적교실을 신축코

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투자하는 재산조
성비는 총 2개교에 23억 2,623만원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청주
시 흥덕구 봉명동 1142번지에 위치한 교
육감 관사로 토지 1,225㎡와 건물 3동에
366㎡입니다.

당초에는 동 건물을 타 용도로 사용하
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였으나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활용도와 효율
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85년에 신
축된 건물로서 노후도가 심해 수리비의
과다소요, 그리고 용도 전환을 위한 개조
및 유지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2006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별첨 5)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06년도 지방교
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부담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등을 재원으로 공교육 내실화로 학교교육 신뢰를 회복하고 교원사기와 전문성 제고, 그리고 근무여건 개선을 추진하며,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교육정보화를 추진하고 교직원 증원 인건비 및 인상분 등에 우선 순위를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교육재정 여건은 늘어나는 각종 교육수요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나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 달성에 우선 순위를 두고 반영함으로써 교육재정이 건실하고 계획성이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1,570억 3,185만원에서 5.6%인 644억 9,223만원이 증액된 1조 2,215억 2,4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258억 3,339만원과 일반회계부담수입 22억 960만원, 자체수입 225억 3,998만원, 학교신설 및 명예퇴직수당 지방교육채 138억 8,426만원,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 및 기타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 시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직원 증원 인건비 및 인상분과 명예퇴직수당 등의 인건비로 56억 7,269만원, 학습자 중심의 교육활동 지원 24억 4,126만원, 직업·유아·특수교육 및 체육활동 지원에 105억 3,845만원,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대비 교육에 6억 7,901만원 등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 사업비로 136억 5,872만원을, 의사소통 능력 중심의 외국어교육 지원에 2억 8,445만원, 과학·정보교육 지원에 36억 3,516만원 등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교실문화 실현 사업비로 39억 1,916만원, 흡연예방교육에 1억 4,640만원 학생 성교육 지원에 1,068만원 등 나와 우리를 함께 가꾸는 진취적 품성 함양을 위한 사업비로 1억 7,112만원, 학부모 정보화교육 지원에 3,900만원, 폭력없는 사회 만들기 충북협의회 운영에 9,500만원 등 모두 주체가 되는 자율적인 교육공동체 강화 사업비로 1억 5,817만원을,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에 24억 4,704만원, 사립유치원 교사 담임수당으로 2억 1,912만원 등 무한 봉사로 교육신뢰 풍토 정착 사업비로 36억 6,011만원을, 학생 수용시설 증축에 7억 6,200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59억 2,556만원, 도서관 및 다목적교실 신축 등 일반 시설사업에 20억 3,397만원 등 교실현대화 추진 사업

[제190회-제1차 본회의]

비로 87억 2,153만원을, 학교신설 6개교 130억 22만원, 농촌 우수 고등학교 지원에 32억원 등 균형있는 학교발전 도모 사업비로 160억 222만원을, 학교신설 3개교, 특수학교 이전 1개교, 교사, 다목적 교실 및 급식소 증·개축 24개교 등 민간 투자사업 추진 채무부담행위 642억 651만 원을, 교사내 환경위생 측정기구 지원에 3억원,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에 12억 9,461만원, 급식시설 확충에 11억 9,461만원 등 학교보건 및 교육복지 증진 사업비로 28억 9,247만원을 계상하는 등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 사업비로 총 919억 4,274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으로 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 목적대로 편성하였고 한정된 재원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하고 있는 각종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사업의 우선 순위, 시기 등을 고려하여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참 조 :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첨 6)
(끝에 실음)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책 1)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별책 2)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자료(별책 3)

이상으로 2007학년도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과 2008학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 그리고 2006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 중 2007학년도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 2008학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계획안, 2006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현장방문과 사전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하신 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

(15시 20분)

● 의장 고규강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를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안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즉시 예산·결산소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4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성영용 위원님과 송대헌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9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

[제190회-제1차 본회의]

0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위원 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5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서명범, 교육국장 박의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구명희,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총무과장 신건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2007학년도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별첨 2)
- ▶ 2008학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별첨 3)
- ▶ 2006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별첨 5)
- ▶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첨 6)

※ 별책부록

- ▶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책 1)
- ▶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별책 2)
- ▶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자료(별책 3)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4월 6일 (목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2007학년도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
2. 2008학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
3.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6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附議된 案件

1. 2007학년도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교육감 제출)
2. 2008학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교육감 제출)
3.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4. 2006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박의상 교육국장과 김주환 초등교육과장께서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주관으로 개최하는 녹색어머니

회의 참석차, 이재신 교육정보화과장께서 정보화 관련 회의 참석차, 김준철 평생교육체육과장께서 충북소년체전 사전 경기 총괄 운영 출장으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학년도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

(11시 01분)

● 의장 고규강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4월 4일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전 협의를 하신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학년도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학년도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학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한수정안

(11시 02분)

● 의장 고규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학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8학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에대

한수정안이 4월 4일 제출되었습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존경하는 고규강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중지를 모아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면서 2008학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반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오창 과학산업단지 단독주택 지역 내 설립예정인 양청초등학교와 양청중학교의 개교시기를 2008년 3월 개교에서 2009년 3월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3일 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드린 바 있으나 동 산업단지 단독주택 지역 내 초등학생들이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입주민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해 양청초등학교 개교시기를 2009년 3월 이후에서 2009년 3월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창 과학산업단지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학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2008학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한수정안(별첨 4)

(끝에 실음)

● 의장 고규강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학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 중 양청 초등학교 개교일을 2009년 3월 이후에서 2009년 3월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학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학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06분)

● 의장 고규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와 함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이상일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함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이상일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와 함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은 지난 3월 23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4월 3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는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의 예산

편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 여부와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570억 3,184만 7,000원에서 644억 9,223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2,215억 2,40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가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258억 3,339만 2,000원과 일반회계부담수입 22억 960만 3,000원, 자체수입 225억 3,997만 9,000원, 지방교육채 138억 8,426만 3,000원, 기관부담금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학교교육에 428억 7,318만 7,000원, 평생교육에 6억 70만 9,000원, 급여관리에 94억 1,210만 7,000원, 교육행정에 84억 2,007만 1,000원, 지방채 상환에 56억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예비비는 24억 1,383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보고서 5쪽에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조기에 제공하고 시중 여유 자금의 공공투자 연계로 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교육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이전 받고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투자비를 지급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금번 채무부담 행위액 조서 중 추정사업비를 살펴보면, 학교신설 3개교에 246억 4,461만원, 특수학교 이전 신축 1개교에 69억 6,565만 5,000원, 다목적교실 증축 15개교에 174억 9,750만원, 급식소, 본관, 다목적교실 개축 등 9개교에 150억 9,874만 9,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전교조 충북지부 사무실 임차료가 기 지원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계상된 전교조 충북지부 사무실 확장 임차료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이 되어 1억 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교사내 환경위생 측정기구 구입비로 본청 및 11개 지역교육청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을 고려해서 6개 지역교육청분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억 5,0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

정분과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부담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등을 재원으로 공교육 내실화로 학교교육 신뢰를 회복하고 교원사기와 전문성 제고, 그리고 근무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교직원 증원 인건비 및 인상분 등에 우선순위를 두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적정히 편성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교육재정 여건은 늘어나는 각종 교육 수요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나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교육행정 사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교육재정 운영 과정에 학부모 및 교직원의 요구를 수렴하여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각종 여비를 편성함에 있어서도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별로 산출 단가 책정에 차등을 두는 일이 없도록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비만퇴치프로그램 등을 방과 후 교육활동 일환으로 지역 보건소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학교 조성 방법 및 관리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각급 학교에서는 맹독성 약품이 살포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오송 생명산업단지 내 오송중학교와 오

창 과학산업단지 내 양청초, 양청중 개교 시기 변경에 대한 민원 제기 시 대처방안과 홍보방안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 등 지역별로 예산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예산 안배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고, 국외연수 등 불요불급한 사업비 확대를 지양하고 학생교육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에서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사업비 중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수정가결하였고, 소수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수정 예산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 동안 함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참 조 :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별첨 7)

● 의장 고규강

이상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세입·세출 예산 각각 1조 2,215억 2,048만 4,000원으로 1조 642억 651만 4,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의장 고규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의장님”)

● 의장 고규강

예, 말씀하세요.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고규강

예, 말씀하세요.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예산심의 과정 상에서 계수조정이 우리 제4대 교육위원회 일관되게 계수조정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제안도 했습니다만은 이제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위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들도 물론이지만은 공개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수조정 과정의 공개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고규강

지금 진옥경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개를 하는 게 마땅하다는 이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마친 다음에 그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고규강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4월 4일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또한 심도 있게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9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폐회)

0 출석위원 : 7명

-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 위원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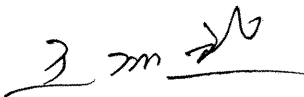
-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서명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구명희,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총무과장 신건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별첨 7)

제19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6. 4. .

의 장 고 규 강 
위 원 성 영 용 
위 원 송 대 헌 
의사국장 조 계 환 

(별첨 1)

의 사 일 정 (안)

제19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2006. 4. 3.~4. 6.(4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4월 3일(월) 15: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19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6. 4. 3.~4. 6. (4일간) 2. 2007학년도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안 3. 2008학년도 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4.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6. 예산·결산 소위원회 구성의 건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예산·결산소위원회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명
4월 4일(화)	<input type="checkbox"/> 의안관련 현장방문	본회의 휴 회
4월 5일(수)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예산·결산소위원회	본회의 휴 회
4월 6일(목) 11:00	[제2차 본회의] 1. 2007학년도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안 2. 2008학년도 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3.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190~호
의결 연월일	2006년 월 일 (제 회)

2007학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6년 3월 23 일

2007학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의안 번호	190 ~ 1
----------	---------

제출연월일 : 2006. 3. 23.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I. 설립 목적

-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화 기반조성
- 공립유치원 취원 기회 제공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특수교육기회 확대

II.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가. 설립계획

교육청	유치원명 (가칭)	개원시기 (예정)	설립 규모	위 치	추진방법	비 고
제 천	홍광유치원	2007. 3. 1.	5(1)	제천시 고암동970	홍광초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전환	

()는 특수학급으로 전체수에 포함

나. 수용계획

(단위 : 명)

유치원명 (가칭)	구분	2006. (병설)	2007. (단설)	2008. (")	2009. (")	2010. (")	비 고
홍광 유치원	대상아	1,312	1,129	1,045	956	856	
	취원아	70	113	112	109	102	
	학급수	3	5	5	5	5	

다. 소요예산 및 확보 계획

(단위 : 천원)

유치원명 (가칭)	학급규모	소 요 액		
		국 고	지 방 비	소 계
홍광유치원	5(1)	1,030,000	226,235	1,256,235

()는 특수학급으로 전체수에 포함

라. 시설확보계획

구 분	건물면적(m ²)		시설현황(실)							비 고
	건축 면적	연면적	보통 교실	유희실	관리실	자료실	수면실	기타	계	
기 준	408	583.42	3	1	0.5	0.5	0	3	8	
증 축	376.5	753	2	1	1.5	1	0.5	4	10	
합 계	784.5	1,336.42	5	2	2	1.5	0.5	7	18	

마. 인력확보 계획 및 비교

(단위 : 명)

유치원명 (가칭)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추가 소요	비 고
	교원	사무 직원	계	교원	사무 직원	계		
홍광유치원	3		3	6	1	7	4	- 원장1명, 교사2명, 일반직1명

바. 연간 운영비 소요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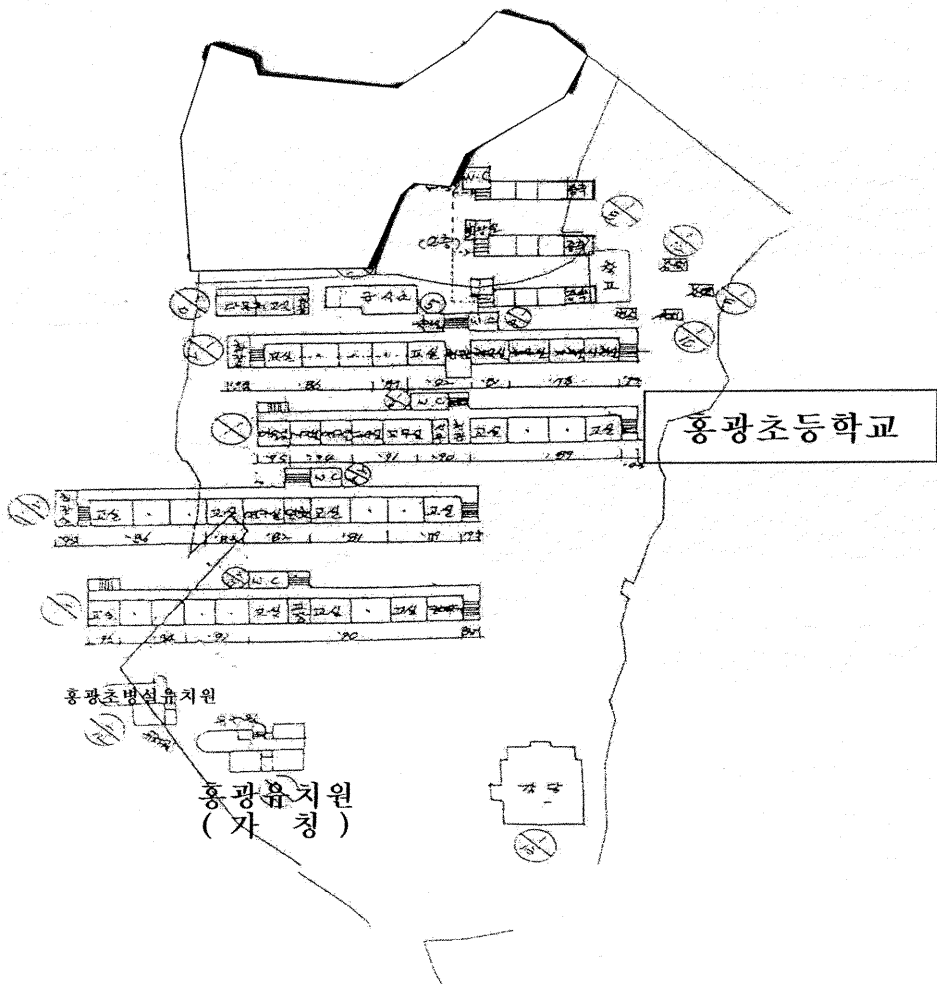
(단위 : 천원)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비교 증감	비 고
유치원명	학급수	운영비	유치원명 (가칭)	학급수	운영비		
홍광초병설	3	18,157	홍광유치원	5	84,821	66,664	

※ 2006. 유치원기본경비 적용(인건비 제외)

<붙임> : 위치도 1부.

(가칭) 흥광유치원 설립 위치도



(별첨 3)

의안번호	제 190 ~ 2호
의결 연월일	2006년 월 일 (제 회)

2008 학년도 학교설립 계획 변경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6년 3월 23일

2008학년도 학교설립 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190 ~ 2

제출연월일 : 2006. 3. 23.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사유

- 2008년 개교 예정인 초·중학교 개교시기 변경

2. 주요골자

- 2008. 3월 개교 예정인,
 - 오송생명산업단지내 오송중을 단지 기반조성공사 지연으로 2009.3월로 개교시기 변경
 -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양청초, 양청중 개교시기를 단지내 단독주택 건축 개발지연으로 2009.3월 이후로 개교시기 변경.

3. 학교설립계획 변경안

- 개교시기 변경안

지 역	학교명 (가칭)	당초계획	변경계획	변 경 사 유
청원	오송중	2008.3	2009.3	- 단지 기반조성공사 지연
	양청초	2008.3	2009.3월 이 후	- 단지내 단독주택지 건축 지연
	양청중	2008.3	2009.3월 이 후	- 단지내 단독주택지 건축 지연

□ 변경사유 및 추진 현황

○ 오송중

- 오송생명과학단지 문화재 발굴 추진 등으로 기반 조성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토지사용 가능시기가 2006.7월로 예정되어 단지내 주택 공사 착공 및 입주 시기 지연으로 개교시기를 2009.3월로 연기

○ 양청초, 양청중

- 오창과학산업단지 양청리 일대 단독주택 2,263세대 입주학생을 수용하고자 2008.3월 개교로 추진하였으나,
- 단독주택 건축 지연으로 주택 건축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신설하고자 2009. 3월 이후로 개교시기 연기

※ 2006.3월5일 현재 전체 세대중 6.3%인 145세대만 원룸형태로 건축

<붙임> : 위치도 2부

오송중 신설위지도(오송생명과학단지)



양정초, 양정중 신설위지도(오창과학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안)



(별첨 4)

의안번호	제 190-2호
의결 연월일	2006년 월 일 (제 회)

2008 학년도 학교설립 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6년 4월 4일

2008학년도 학교설립 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90-2
----------	-------

제출연월일 : 2006. 4. 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수정이유

- 오창과학산업단지 양청리 단독주택지역내 유입학생을 수용하고자 (가칭) 양청초등학교설립을 2009.3월 이후 개교연기를, 입주민의 편의 도모와 학생 통학 편의 제공 및 도시 기반 시설인 학교를 설립하여 도시발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9.3월 개교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당초 제출하였던 학교설립계획변경안 중 양청초 개교시기 연기를 2009. 3월 이후를 2009. 3월로 수정 함

3. 학교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 내용

- 당초 제출한 학교설립계획변경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 골자 중 양청초 개교시기 연기를 2009. 3월 이후에서 2009. 3월로 수정 함

개교시기 변경안

지 역	학교명 (가칭)	당초계획	변경계획	변 경 사 유
청원	오송중	2009.3월	2009.3월	- 단지 기반조성공사 지연
	양청초	2009. 3월 이 후	2009. 3월	- 단지내 단독주택지 건축 지연
	양청중	2009.3월 이 후	2009.3월 이 후	- 단지내 단독주택지 건축 지연

-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붙임>

원안과 수정안 대비표

형 태	원 안	수 정 안	비 고
안 의 일부수정	<p>I. 제안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개교 예정인 초·중학교 개교시기 변경 <p>II. 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 3월 개교 예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송생명산업단지내 오송중을 단지 기반조성공사 지연으로 2009.3월로 개교시기 변경 - <u>오창과학산업단지내 양청초, 양청중 개교시기를</u> 단지내 단독주택 건축 개발지연으로 2009.3월 이후로 개교시기 변경. 	<p>I. 제안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개교 예정인 초·중학교 개교시기 변경 <p>II. 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 3월 개교 예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송생명산업단지내 오송중을 단지 기반조성공사 지연으로 2009.3월로 개교시기 변경 - <u>오창과학산업단지내 양청초, 양청중 개교시기를</u> 단지내 단독주택 건축 개발지연으로 <u>양청초를 2009.3월로, 양청중을 2009.3월 이후로</u> 개교시기 변경. 	

(별첨 5)

의안번호	제 190-4호
의 결 연 월 일	2006년 월 일 (제 회)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 출 연 월 일	2006년 3월 23일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제190-4호
----------	---------

제출연월일 : 2006. 3. 23.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사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취 득

(단위 : m², 천원)

구 분	기 관 명	사 업 명	수 량	금 액
건 물	(가칭) 홍광유치원	단설유치원 신설	753	1,256,235
	생극초	다목적교실 신축	846	1,070,000
	소 계		1,599	2,326,235

나. 용도폐지 및 처분

(단위 : m², 천원)

기 관 명	처분재산명	구 분	소재지번	수 량	대장금액
본 청	교육감 관사	토 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225.10	415,309
		건 물	1142번지	366.11	126,121
		합 계		1,591.21	541,430

3. 제안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나.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붙임 : 취득·처분 위치도 3부.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

(단위 : m², 천원)

구 분		2006년상반기			2006년하반기			합 계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 득	계	토지									
		건물				2	1,599.00	2,326,235	2	1,599.00	2,326,235
		기타									
	1. 매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토지									
		건물				2	1,599.00	2,326,235	2	1,599.00	2,326,235
		기타									
처 분	계	토지				1	1,225.10	415,309	1	1,225.10	415,309
		건물				1	366.11	126,121	1	366.11	126,121
		기타									
	4. 매각	토지				1	1,225.10	415,309	1	1,225.10	415,309
		건물				1	366.11	126,121	1	366.11	126,121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토지									
		건물									
		기타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금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 득 소유자	비 고
	기 관 명	구분	소재지번	수 량					
1	(가칭) 홍광유치원	건 물	제천시 모산동 396-1	753.00	1,256,235	2006년 하반기	수용시설 확충	교육감	도면 1쪽
2	생극초	건 물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451-1	846.00	1,070,000	2006년 하반기	교육여건 개선	교육감	도면 2쪽
합 계		건 물		1,599.00	2,326,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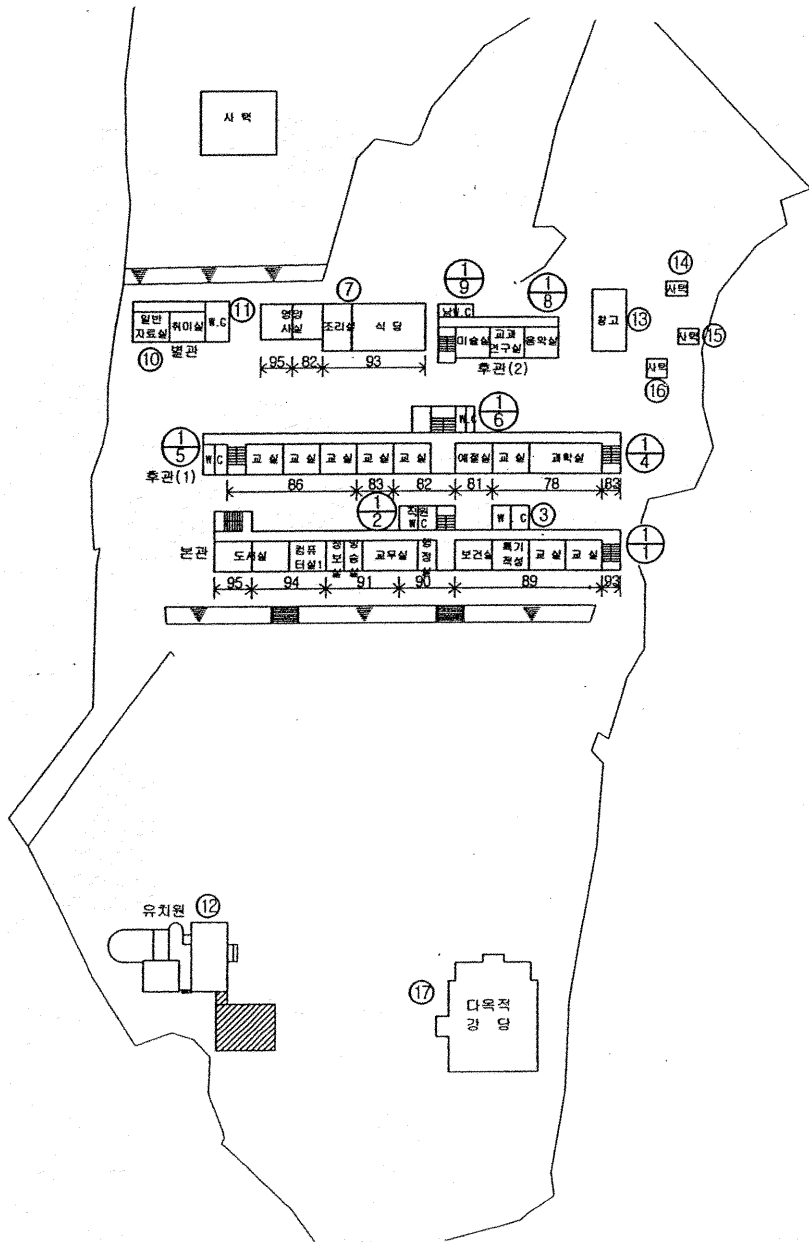
처 분 대 상 재 산 목 록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대 장 금 액	처분 시기	처 분 사 유	용도	비고
	기관명	구분	소 재 지	수 량					
1	본 청	토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142	1,225.10	415,309	2006년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년 신축 건물로 건물의 노후가 심해 수리비 과다 소요 ○ 타용도 사용시 개조 및 유지비 과다 소요 ○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향후 재산 가치 하락 예상 ○ 부족한 교육재정 확충 	교육감 관 사	도면 3쪽
		건물		366.11	126,121				
		소계		1,591.21	541,430				
합 계		토지		1,225.10	415,309				
		건물		366.11	126,121				
		소계		1,591.21	541,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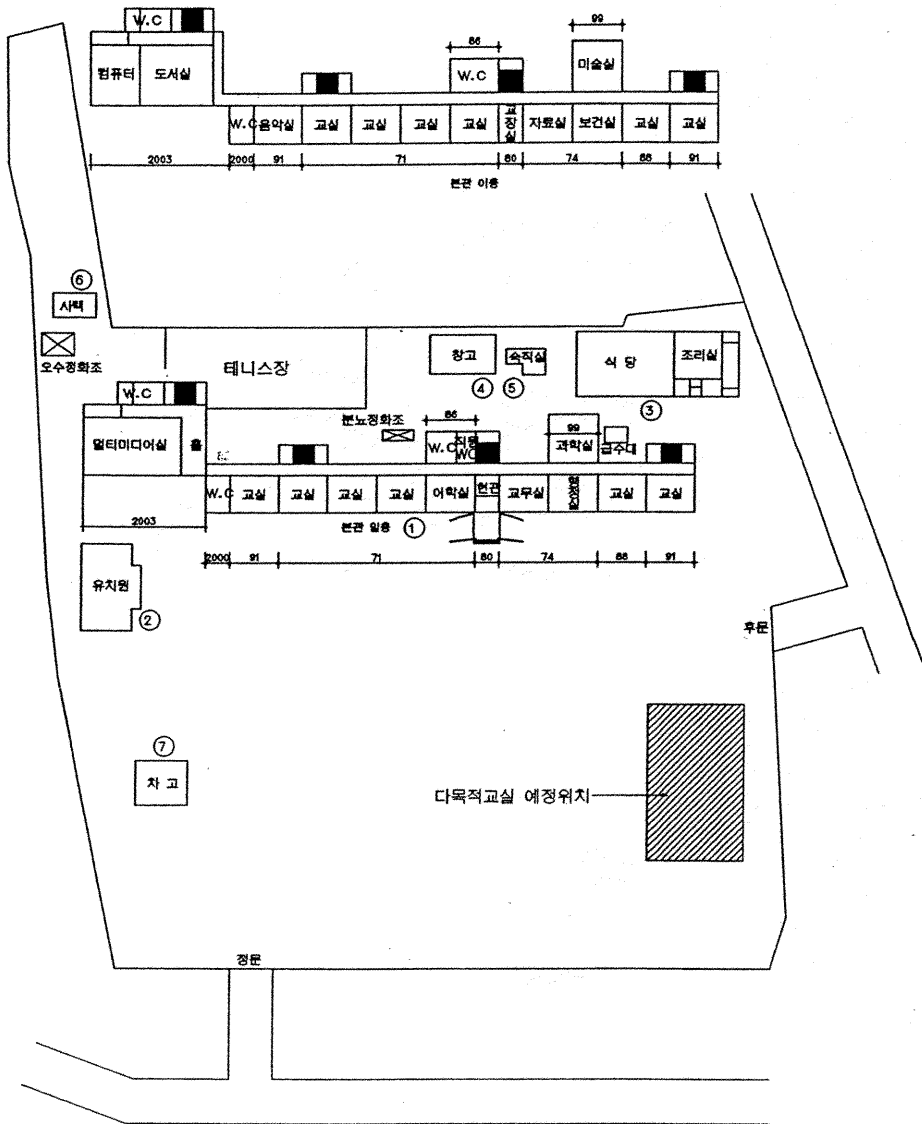
(1) 가칭 흥광유치원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유
유치원사	제천시 모산동	396-1	철콘슬	753.00	1,256,235	○ 수용시설 확충



(2) 생극초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유
다목적교실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451-1	철콘슬	846.00	1,070,000	○ 교육여건개선



(3) 본청 관사 처분 위치도

구 분	소재지	수 량 (㎡)	대장금액 (천원)	사 유
토 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142	1,225.10	415,309	○ 건물노후 ○ 수리비 과다 소요 ○ 교육재정 확충
건 물		366.11	126,121	
합 계		1,591.21	541,430	



(별첨 6)

의안번호	제 190~3 호
의 결 연 월 일	2006. 3. . (제 회)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6. 3. 23.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 번호	190~3
----------	-------

제출연월일 : 2006. 3. 23.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조 1,570억 3,184만 7천원에서 644억 9,223만 7천원이 증액된 1조 2,215억 2,408만 4천원으로 편성
-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258억 3,339만 2천원, 일반회계 부담수입 22억 960만 3천원, 자체수입 225억 3,997만 9천원, 지방교육채 138억 8,426만 3천원, 주민(기관 등)부담수입 및 기타 2,500만원 계상
- 세출예산은 학교교육 428억 7,318만 7천원, 평생교육 6억 70만 9천원, 급여관리 94억 1,210만 7천원, 교육행정 84억 2,007만 1천원, 기타경비 31억 8,616만 3천원 계상

예산(안) : 별책

사항별설명서 : 별책

(별첨7)

제190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6. 4.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2006년도 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3월 23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6년 4월 3일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소위원회(2006년 4월 3일)

○ 제2차 소위원회(2006년 4월 5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570억 3,184만 7천원에서 644억 9,223만 7천원이 증액된 1조 2,215억 2,408만 4천원으로 편성.
-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258억 3,339만 2천원, 일반회계 부담수입 22억 960만 3천원, 자체수입 225억 3,997만 9천원, 지방교육채 138억 8,426만 3천원, 주민(기관 등)부담수입 및 기타 2,500만원 계상.
- 세출예산에 학교교육 428억 7,318만 7천원, 평생교육 6억 70만 9천원, 급여관리 94억 1,210만 7천원, 교육행정 84억 2,007만 1천원, 기타 경비 31억 8,616만 3천원 계상.

3. 토론 주요내용 :

- 가. 교육정책 연구과제는 어떻게 선정 하는지
 - 공모를 통해 연구우수계획서를 선정
- 나. 교육재정 운영과정에 학부모 및 교직원의 요구를 수렴하여 예산에 적극 반영 여부
 - 앞으로 적극 반영토록 노력
- 다. 교사내 환경 측정기구를 본청 및 11개 지역교육청에 일률적으로 2,500만원씩 총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구이며 필요성 여부
 -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 증진 등 보건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라. 각종 여비를 편성함에 있어서도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별로 산출단가 책정에 차등을 두는 일이 없도록 고려
 - 차등을 두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 마. 연구시범학교 지도여비가 2006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되고 제1회 추경에 2,640천원만 편성되었는데 그 여비로 지도 가능 여부
 - 본청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시범 학교 지도
- 바. 아동 비만 퇴치 프로그램 등을 방과후 교육활동 일환으로 지역 보건소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안
- 사.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지원비 중 재원이 부족한데 초청경비 계상의 타당성 여부
 - IT 산업의 잠재적인 창출 차원에서 1 : 1 대응 사업임
- 아. 녹색학교 조성 방법 및 관리함에 있어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각급학교에서는 맹독성 약품이 살포되지 않도록 당부
- 자. 전교조 충북지부 사무실 확장 임차료 1억원 계상 사유
 - 전교조충북지부와 협의 사항에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 요구에 의하여 편성
- 차. 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비 등 지역별로 예산 편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별 예산 안배에 적정을 기해 줄 것을 당부

4. 심사보고 주요내용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예산편성 개요

□ 예산규모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1,157,031,847천원보다 64,492,237천원이 증액된 1,221,524,084천원으로 편성하였음.

(단위 :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 감		비 고
		금 액	비 율	
1,221,524,084	1,157,031,847	64,492,237	5.6% 증	

□ 세입예산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25,833,392천원, 일반회계부담수입 2,209,603천원, 자체수입 22,539,979천원, 지방교육채 13,884,263천원, 주민(기관 등)부담수입및기타 25,000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관별 재원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장 관 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금 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국가 부담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22,808,604	83.7	1,001,610,337	86.6	21,198,267	2.1
	국고지원금	11,118,866	0.9	6,483,741	0.6	4,635,125	71.5
	소 계	1,033,927,470	84.6	1,008,094,078	87.2	25,833,392	2.6
일반회계 부담수입	법정전입금	95,890,168	7.9	94,076,000	8.1	1,814,168	1.9
	비법정전입금	465,330	0.0	69,895	0.0	395,435	565.8
	소 계	96,355,498	7.9	94,145,895	8.1	2,209,603	2.3
자체수입	재산수입	978,534	0.1	829,743	0.1	148,791	17.9
	입학금및수업료	27,282,640	2.2	27,282,640	2.3	0	0.0
	사용료및수수료수입	1,656,291	0.1	1,656,291	0.1	0	0.0
	잡수입	14,986,971	1.3	5,427,200	0.5	9,559,771	176.2
	이월금	30,831,417	2.5	18,000,000	1.6	12,831,417	71.3
	소 계	75,735,853	6.2	53,195,874	4.6	22,539,979	42.4
지방교육채	지방교육채	15,480,263	1.3	1,596,000	0.1	13,884,263	869.9
주민(기관 등)부담수 입및 기타	기관(주민등)부담금	25,000	0.0	0	0.0	25,000	100.0
합 계		1,221,524,084	100.0	1,157,031,847	100.0	64,492,237	5.6

□ 세출예산

세출예산은 학교교육 42,873,187천원, 평생교육 600,709천원, 급여관리 9,412,107천원, 교육행정 8,420,071천원, 기타경비 3,186,163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관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장 관 별		예 산 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금 액	비율
학교 교육	유 치 원	19,955,409	1.6	14,112,693	1.2	5,842,716	41.4
	초등학교	130,691,483	10.7	110,566,207	9.6	20,125,276	18.2
	중 학 교	95,195,069	7.8	86,249,263	7.5	8,945,806	10.4
	고등학교	115,347,744	9.4	107,322,198	9.3	8,025,546	7.5
	특수학교	16,351,611	1.3	16,417,768	1.4	△66,157	△0.4
	기타학교	376,115	0.1	376,115	0.0	0	0.0
	소 계	377,917,431	30.9	335,044,244	29.0	42,873,187	12.8
평생 교육	평생교육	2,264,625	0.2	1,663,916	0.1	600,709	36.1
	소 계	2,264,625	0.2	1,663,916	0.1	600,709	36.1
급여 관리	급여관리	789,549,368	64.6	780,137,261	67.4	9,412,107	1.2
	소 계	789,549,368	64.6	780,137,261	67.4	9,412,107	1.2
교육 행정	교육위원회	473,185	0.1	456,185	0.0	17,000	3.7
	선거관리	272,612	0.0	272,612	0.0	0	0.0
	본 청	19,995,735	1.6	14,355,081	1.3	5,640,654	39.3
	지역교육청	7,344,968	0.6	5,553,046	0.5	1,791,922	32.3
	교육지원기관	7,986,437	0.7	7,015,942	0.6	970,495	13.8
	소 계	36,072,937	3.0	27,652,866	2.4	8,420,071	30.4
기타 경비	지방채상환	10,600,000	0.9	5,000,000	0.4	5,600,000	112.0
	예 비 비	5,119,723	0.4	7,533,560	0.7	△2,413,837	△32.0
	소 계	15,719,723	1.3	12,533,560	1.1	3,186,163	25.4
합	계	1,221,524,084	100.0	1,157,031,847	100.0	64,492,237	5.6

□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

○ 공무원 인건비	7,258,867천원
○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4,162,729천원
○ 명예퇴직수당	1,472,476천원
- 공립교원(초18명, 중등 5명)	630,255천원
- 사립교원(8명)	518,919천원
- 지방공무원(7명)	323,302천원
○ 부담금(건강보험료)	576,077천원
○ 수준별 학습자료 개발	103,350천원
○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방과후 학교운영	677,170천원
○ 클리닉 사이버 가정교사 운영	28,080천원
○ 학교운영평가 우수교	102,500천원
○ 학력제고 대상교	115,000천원
○ 교육정보화 우수교	134,000천원
○ 사학경영평가 우수기관	100,000천원
○ 연구시범학교(2교)	90,000천원
○ 순회교사 운영(사립중 28명)	12,800천원
○ 학교도서관 구축 및 리모델링(52교)	1,000,000천원
○ 영재교육운영	78,360천원
○ 실습용컴퓨터(400대)	480,000천원
○ 실습기자재 확충 및 수리(32교)	742,600천원
○ 특성화고 지원(4교)	40,000천원
○ 청풍명월 직업교육종합촉제	32,000천원
○ 직업 진로교육센터운영(30교)	30,000천원
○ 실고생 예비 창업제 운영(32교)	57,000천원
○ 통합교과 실습지침 자료 개발(3교)	10,500천원
○ 직업 기초능력 신장(3교)	10,500천원
○ 공동실습소 운영(3개소)	250,000천원
○ 자영농과 운영(1교)	25,974천원
○ 기업·공고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30,000천원
○ 영농학생 전진대회	18,600천원
○ 협약학과 운영	50,000천원
○ 직업 종합체험실 설치운영	220,000천원
○ 직업교육컨설팅	5,000천원
○ 우수실업고 학생 해외직업교육연수(20명)	30,000천원

○ 장애아 무상교육비(84명)	185,412천원
○ 만 3, 4세아 무상교육비(5,852명)	3,928,334천원
○ 만 5세아 무상교육비(3,380명)	1,028,330천원
○ 유치원 종일반 운영	23,000천원
○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운영	7,908천원
○ 단(병)설 유치원 설립(2개원)	1,399,135천원
○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31,587천원
○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	124,500천원
○ 각종대회 지원	310,410천원
○ 운동부 휴게시설 및 훈련장(2교)	574,663천원
○ 우수성적 거양 순회코치 포상금	101,000천원
○ 운동부용 사위실 및 탈의실 설치(11교)	792,000천원
○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제천, 단양)	400,000천원
○ 평생학습관 운영(14기관)	70,000천원
○ 충북교육사랑봉사단 운영	31,000천원
○ 평생학습 중심학교 운영(11교)	22,000천원
○ 통일대비교육	156,016천원
○ 영어권국가 현지 어학연수(54명)	278,650천원
○ 제2외국어교사 국외연수(6명)	5,800천원
○ 학교과학관운영(12교)	68,000천원
○ 발명교실 운영(10교)	80,000천원
○ 실험실 현대화(36교)	780,000천원
○ 과학선도학교 운영(3교)	45,000천원
○ 과학교실 운영(30교)	75,000천원
○ 과학동아리 운영(30교)	30,000천원
○ 과학탐구 체험학습 지원	200,000천원
○ 컴퓨터(교육용, 교원용, 교단선진화용)지원(1,655대)	2,090,600천원
○ ICT활용교육지원단 운영	67,320천원
○ 작품전람회	26,265천원
○ 교육행정업무 전산화 추진	67,000천원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32,000천원
○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73,980천원

○ 흡연예방교육	146,400천원
○ 학생 성교육 지원	10,680천원
○ 아가모운동	5,660천원
○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8,380천원
○ 학부모 정보화 교육지원	39,000천원
○ 학부모 교육센터운영	24,175천원
○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충북협의회 운영	95,000천원
○ 교원의 전문성 신장	2,447,040천원
○ 교과교육연구회(유1, 초등20, 중등24교과)	209,800천원
○ 교과수업 연구회(중등16교과)	64,000천원
○ 교육과정연구회(9교과)	45,000천원
○ ICT활용 교과연구회(8개회)	32,000천원
○ 특별연구교사제 운영	14,160천원
○ 유치원 연수기회 확대(4개과정)	99,150천원
○ 초등 연수기회 확대(5개과정)	626,450천원
○ 특수 연수기회 확대(2개과정)	72,900천원
○ 중등 연수기회 확대(11개과정)	1,142,194천원
○ 과학실업 연수기회 확대(4개과정)	41,000천원
○ 정보화 연수기회 확대(4개과정)	43,980천원
○ 체육 연수기회 확대(1개과정)	6,406천원
○ 교육정책연구과제 개발(2과제)	50,000천원
○ 농·산촌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담당교사 수당	281,400천원
○ 사립유치원교사 담임수당	219,120천원
○ 교원단체 활동지원	155,650천원
○ 공동주택 신축(1동 9세대)	500,900천원
○ 사택보수(2동)	56,000천원
○ 학생수용시설 증축(3교)	762,000천원
○ 건물보수(4교)	2,736,556천원
○ 화장실보수(18실)	957,600천원
○ 지붕보수(74.5실)	627,290천원
○ 바닥보수(14.5실)	94,250천원
○ 외벽단열 및 보수(71실)	389,080천원
○ 승강기 시설(1교)	160,000천원

○ 책·결상(2,979조)	131,718천원
○ 냉·난방개선(1교)	316,650천원
○ 녹색학교 조성(20교)	300,000천원
○ 포장(1교)	64,320천원
○ 옹벽(2교)	58,000천원
○ 배수로(2교)	90,100천원
○ 도서관 증축(1교)	500,000천원
○ 다목적교실 신축(1교)	1,070,000천원
○ 다목적교실 보수 및 냉·난방시설(3교)	463,970천원
○ 학교신설(초등학교 4교)	9,238,243천원
○ 학교신설(중학교 2교)	3,761,981천원
○ 농촌거점 우수고교 지원(4교)	3,200,000천원
○ 교사내 환경위생 측정기구 지원(12기관)	300,000천원
○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1,294,613천원
○ 급식시설비(3교)	592,150천원
○ 급식기구 구입(10교)	602,000천원
○ 난치병학생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	103,712천원
○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5,600,000천원

나. 2006년도 민간투자사업(BTL)총 사업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신설	이전신축	다목적교실증축	개 축	계
학 교 수	3교	1교	15교	9교	28교
면 적	24,522m ²	6,931m ²	13,998m ²	13,727m ²	59,178m ²
사업비한도액	24,644,610	6,965,655	17,497,500	15,098,749	64,206,514

다. 2006년도 채무부담행위액 조서

(단위 : 천원)

세부현황	년도	사업비 (추정)	채무부담행위(추정)액		비고
			연간임대료	20년 임대료	
초·중학교 신설(3교)	2006	24,644,610	2,201,251	44,025,020	
특수학교 이전신축(1교)	2006	6,965,655	622,171	12,443,420	
초·중·고등학교 다목적교실증축(15교)	2006	17,497,500	1,560,591	31,211,820	
초·중학교 본관, 다목적교실 개축(9교)	2006	15,098,749	1,348,616	26,972,320	
합 계		64,206,514	5,732,629	114,652,580	

라. 삭감내역

삭감액 : 250,000천원

삭감내역 및 사유

○ 전교조 충북지부 사무실 확장 임차료 △ 100,000천원

전교조 충북지부 사무실 확장 임차료 10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사무실 임차료가 기 지원됨에 따라 100,000천원을 삭감하였음

○ 교사내 환경위생 측정기구 △ 150,000천원

교사내 환경위생 측정기구 구입비로 계상된 300,000천원 중 6개 지역교육청분 150,000천원을 삭감하였음

마. 종합의견

- 금번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 200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부담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등을 재원으로,
 - 공교육 내실화로 학교교육 신뢰를 회복하고,
 - 교원사기와 전문성 제고, 그리고 근무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 또한,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 교직원 증원 인건비 및 인상분 등에 우선 순위를 두어 추가경정 예산안을 적정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됨.
 - 다만, 교육재정 여건은 늘어나는 각종 교육 수요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나, 지방교육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교육행정 사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교육재정 운영 과정에 학부모 및 교직원의 요구를 수렴하여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각종 여비를 편성함에 있어서도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별로 산출 단가 책정에 차등을 두는 일이 없도록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 아동 비만 퇴치 프로그램 등을 방과 후 교육활동 일환으로 지역 보건소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녹색학교 조성 방법 및 관리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각급학교에서는 맹독성 약품이 살포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림.
 - 오송생명산업 단지내 오송중과 오창과학산업 단지내 양청초, 양청중 개교 시기 변경에 대한 민원 제기 시 대처 방안과 홍보방안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람.
 - 또한, 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비 등 지역별로 예산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예산 안배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투자를 지양하고 학생 교육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5. 수정안의 주요내용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 4. 6.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나. 수정이유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사항별 설명서 95쪽 전교조 충북지부 사무실 확장 임차료 100,000천원을 계상 하였으나 사무실 임차료가 기 지원됨에 따라 100,000천원 전액을 삭감 하고자 하며,

교사내 환경위생 측정기구 구입비로 계상된 300,000천원 중 사항별 설명서 313쪽 청원교육청 25,000천원, 330쪽 보은교육청 25,000천원, 361쪽 영동교육청 25,000천원, 379쪽 진천교육청 25,000천원, 397쪽 괴산중평교육청 25,000천원, 433쪽 단양교육청 25,000천원등을 각각 삭감하고자 함.

다. 주요골자

- (장)교육행정 (관)본청 (세항)중등교육관리
 - 전교조충북지부사무실확장임차료 100,000천원을 삭감함.
- (장)교육행정 (관)지역교육청 (세항)학무행정관리
 - 교사내 환경위생측정기구 275,000천원 중 150,000천원을 삭감함.
- (장)기타경비 (관)예비비 (세항)예비비
 - 예비비 5,119,723천원을 5,369,723천원으로 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6년 4월 6일

제안자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사항별 설명서 95쪽 전교조 충북지부 사무실 확장 임차료 10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사무실 임차료가 기 지원됨에 따라 100,000천원을 삭감 하고자 하며,

교사내 환경위생 측정기구 구입비로 계상된 300,000천원 중 사항별 설명서 313쪽 청원교육청 25,000천원, 330쪽 보은교육청 25,000천원, 361쪽 영동교육청 25,000천원, 379쪽 진천교육청 25,000천원, 397쪽 괴산중평교육청 25,000천원, 433쪽 단양교육청 25,000천원 등을 각각 삭감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장)교육행정 (관)본청 (세항)중등교육관리
 - 전교조충북지부사무실확장임차료 100,000천원을 삭감함.
- (장)교육행정 (관)지역교육청 (세항)학무행정관리
 - 교사내 환경위생측정기구 275,000천원 중 150,000천원을 삭감함.
- (장)기타경비 (관)예비비 (세항)예비비
 - 예비비 5,119,723천원을 5,369,723천원으로 함.

3. 수정안 : 따로 붙임.

4. 수정안 대비표 : 따로 붙임.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장)교육행정 (관)본청 (세항)중등교육관리
 - 전교조충북지부사무실확장임차료 100,000천원을 삭감한다.

- (장)교육행정 (관)지역교육청 (세항)학무행정관리
 - 교사내 환경위생측정기구 275,000천원 중 150,000천원을 삭감한다.

- (장)기타경비 (관)예비비 (세항)예비비
 - 예비비 5,119,723천원중 250,000천원을 증액한 5,369,723천원으로 한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세출>

(단위:천원)

과 목				교육감제출 예산액	교육위원회 의결		예산액	수정내역
장	관	항	세항		감액	증액		
10000. 학교교육				377,917,431	0	0	377,917,431	
20000. 평생교육				2,264,625	0	0	2,264,625	
30000. 급여관리				789,549,368	0	0	789,549,368	
40000. 교육행정				36,072,937	250,000	0	35,822,937	
43000. 본청				719,316	100,000	0	619,316	
43100. 본청운영				719,316	100,000	0	619,316	
43122. 중등교육관리				719,316	100,000	0	619,316	○ p95 전교조총복지부사무실확장임차료 △100,000
44000. 지역교육청				2,030,916	150,000	0	1,880,916	
44100. 지역교육청운영				2,030,916	150,000	0	1,880,916	
44101. 학무행정관리				2,030,916	150,000	0	1,880,916	○ p313,P330,P361,P379,P397,P433 교사내 환경위생측정기구(5종) △25,000 × 6기관 = △150,000
50000. 기타경비				15,719,723	0	250,000	15,969,723	
53000. 예비비				5,119,723	0	250,000	5,369,723	
53100. 예비비				5,119,723	0	250,000	5,369,723	
53101. 예비비				5,119,723	0	250,000	5,369,723	
합 계				1,221,524,084	250,000	250,000	1,221,524,084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6. 4. 6.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이상일

李相一

간사

성영용

成永龍

위원

김남훈

金南勳

송대현

송대현

이기수

이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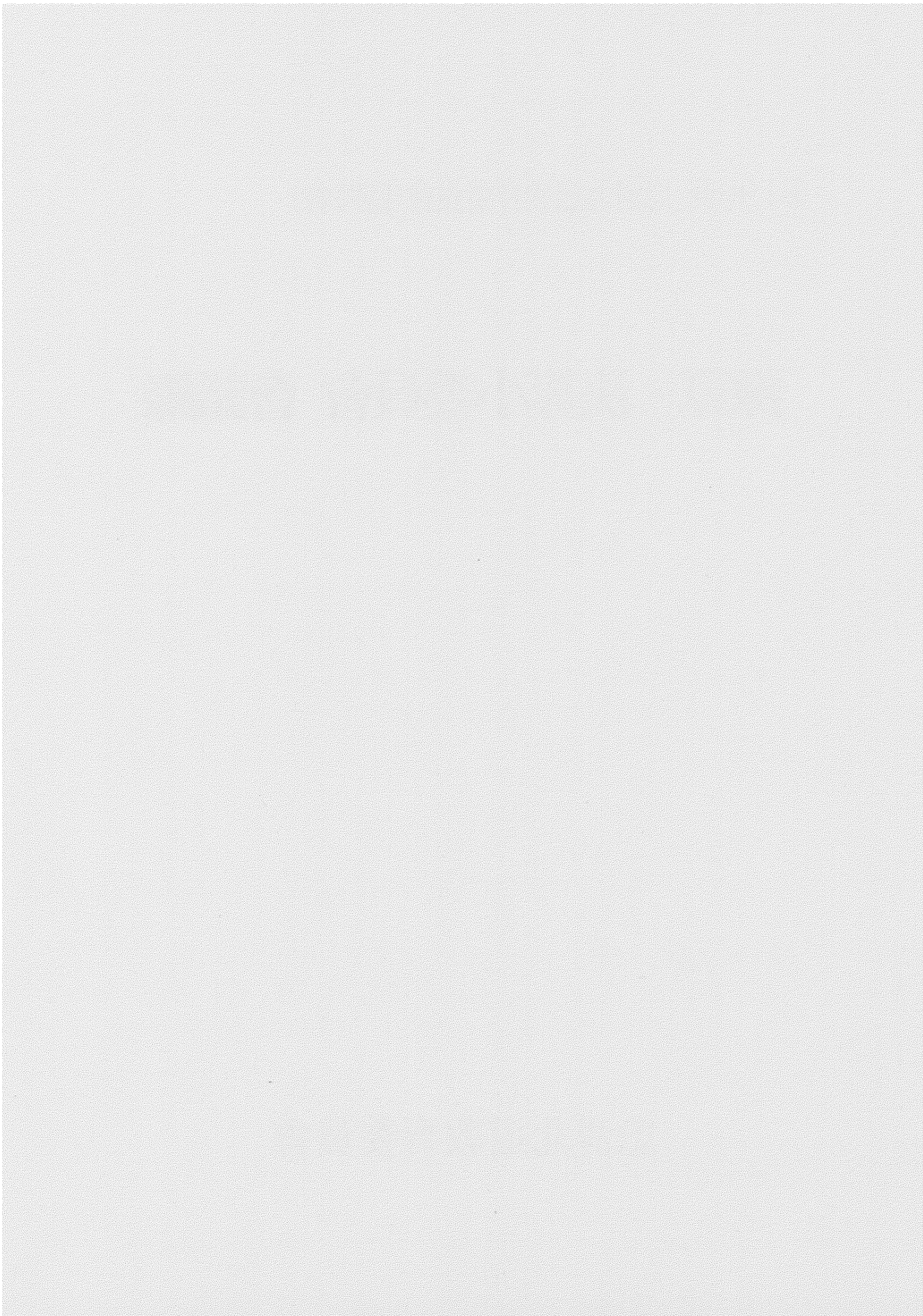
진옥경

진옥경

第190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豫算・決算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19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69
II. 제19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73
III. 부록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155
2. 서면답변서 157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4월 3일 (월요일) 15시 27분

議事日程 (제19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5시 27분 개회) 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소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이상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더 없으시죠.

이상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일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상일**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견**

(15시 30분)

● **위원장 이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 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성영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상일**

성영용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성영용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성영용**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도와서 이번 예·결산이 원만하게 또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견**

(15시 31분)

● **위원장 이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견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과 4월 5일 2일간으로 하여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참 조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별첨 1)

(끝에 실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4월 5일 10시에 제2차 소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상일, 간사 성영용,
위 원 김남훈, 송대헌, 이기수, 진옥경.

○ 출석공무원 : 2명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 부 록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4월 5일 (수요일) 10시 03분

議事日程 (제19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회)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위원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 편성의 주관과장인 기획관리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이상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

▶ 참 조 :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본회의 별책3)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의견을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좌석 순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두 분 위원님이 일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 질의순서를 희망하시는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발언 희망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 희망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해당 국·과장이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집행청에서 644억이 더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결하게 질의드릴 테니 간결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규모로 보면 1조 1,570억에서 644억 9,200만원이 증액된 예산규모가 1조 2,200억으로 생각됩니다. 그 1조 2,200억의 예산인데 요번에 증액된 644억을 필요에 따라 갖고서 분배해 놓은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가 의심나는 부분 또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교육정책개발에서 2과제가 있는데 물론 뒤에 수입에서 그걸 뒤에도 상세한 내역이 있습니다. 보면 과제당 2,500만원으로 해 갖고서 교육정책개발을 5,000만원으로 잡았는데 그 2,500만원 곱하기 두 과제 해 갖고서 5,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은 겁니까?

어떤 과제를 개발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연구과제를 저희들이 작년에는 2억원 예산으로 한 17개 연구과제를 선정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연구과제 적은 금액으로 너무 많은 과제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어떤 학교혁신이라든가 학력제고에 필요한 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한 과제당 2,500만원씩 두 과제를 선정해서 좀 세부적이고 밀도 있는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과제를 맡아서 하는 기관은 연구소 내지 대학의 교수들한테 과제를 부여하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장 우수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는 연구책임자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과제당 평균 금액이 한 2,500만원 정도는 소요됐던 겁니까, 그거는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작년에는 과제별로 연구비가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적게는 한 7,8백정도 금액으로 정책 연구한 게 있고, 또 대부분 한 1,000만원정도 선에서 이렇게 연구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

무 적어 가지고 제대로 정책개발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금액을 좀 높여서 정책과제를 충실하게 연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2,500만원씩 두 과제만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래서 이게 1,000만원 정도가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걸 2,500이라고 잡으셨는데, 또 과제가 대개 우리 교육에 대한 연구과제는 되도록 무슨 실험이나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고, 대개 인력에 의해 갖고 연구한다든지 또는 문헌을 찾는다든지 이런 걸로 다 가능한 애기이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예산은 그렇게 잡았다고 하지만 적정 선을 잘 생각해서 갖고서 그걸 하셔서 교육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 부탁하고 선정문제까지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제에서 이공계 계통은 실험 같은 걸 많이 하고 하지만 이쪽은 대개 논문 수집해 갖고서 데이터 분석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 해 갖고서 대개 과제를 완성하기 때문에 잘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리고 페이지 29에 충북교육사랑복지카드에서 1억 3,871만원의 수입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대개 요번 충북교육사랑카드를 우리 교육계 종사하는 선생님들이든지 집행청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 저희들 교육위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어 그걸 아주 애용하고 있는데 요것이 매년 그 사랑카드를 쓸려고 해 갖고서 농협에서 아마 저희 쪽으로 이런 금액을 아마 지원하는 모양 같은데, 첫해인가 언젠는 다 우리 교직원들이 카드를 사랑함으로써 얻어지는 금액으로 생각해서 전부 수혜자로 봐서 다수 사용한 분서부터 이렇게 선정했던지 어떻게 해 갖고 금강산을 한 번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해는 그렇게 썼고 그 이후서부터는 전체 액수가 얼마나 되고 그걸 어떤 부분에다 사용했습니까, 그걸.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북사랑카드는 카드사용 금액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기금으로 저희들이 적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이렇게 보면 보통 전체 기금에 한 50%정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

로 교직원 어떤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50%는 난치병 환자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지원 이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1억 1,000만원정도를 적립을 해서 그 중에서 5,100만원은 교직원 연수로 사용했고 나머지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치병 환자, 또 소년소녀가장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2006년도에도 같은 비율로 이렇게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 집행할 때는 교직원들의 사기양양이라든지 어느 뭘니까 시설비라든지 다른 쪽에 투자하지 마시고 그런 쪽에 사용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알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혁신팀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보면 생소한 것이 많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균형성과관리시스템 BSC라고 해서 구축하는데 2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고 또 재산관리시스템구축 KMS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 3,400만원 또 정책품질관리비 990만원 이렇게 금년예산에 편성되고, 또 이것이 아마 교육부로부터 권장하는 건지 대개 부산교육청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구축을 해 갖고서 지금 구축 완료해서 현재 진행중이라고 하고, 나

머지 교육청은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갖고서 앞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부 국고지원 없이 전부 지방비에서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본 위원은 아주 생소한 거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지방마다 이렇게 구축비를 신설해 갖고서 이렇게 들이느니 종합적으로 개발한다든지 해 갖고 벤치마킹한다든지 해 갖고서 이걸 적당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예산이 적게 들 텐데, 2억 6,000만원, 1억 3,000만원 하면 3억 9,000에서 한 4억 정도가 되는 이런 예산을 꼭 이렇게 지역교육청마다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갖고서 그걸 구축해야 되는 건지 종합적으로 구축해 갖고서 같이 이용하는 방법은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균형성과관리시스템이라든지 지식관리시스템구축이라든지에 대한 어떤 내용인가 생소한 거니까 구체적으로 그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한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경비절감 차원에서 더욱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복지담당관 구명회

혁신복지담당관 구명회입니다.

먼저 이걸 지방비로 부담한 배경은 지금 BSC 성과관리시스템이라든지 지식관리

시스템, 교육정책품질화시스템이 전 우리나라에서 혁신 공통과제로다가 어느 기관 할 것 없이 혁신에 완전히 시스템을 구축하자 어떤 일개의 바람이 아니고 완전히 체제로 해서 구축해서 이걸 온라인 상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필수로 들어가 있는 것이 BSC하고 KMS가 필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이거를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BSC구축시스템은 부산교육청에서 작년엔 선도 교육청으로 구축을 해 냈고,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이 지금 경남교육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같이 툰키베이스방식으로 각 시·도가 공동으로 같이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각 개별 교육청별로 한 군데에서 해 가지고 쓸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다가 그 주요업무계획이 다르고 또 시책이 다르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이렇게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활용하는 거고,

이 지방비로 하는 이유는 지난해 혁신평가를 하면서 62억 5,000만원을 저희들한테 시상금을 탄 걸 각 시·도별로 저기 해서 758억을 작년엔 혁신평가 시상금으로 배분했습니다. 저희들이 62억 정도를 탔는데 그걸 금년도 평가에 시상금을 가지고 어떻게 혁신역량을 확보하는데 쓰겠느냐 하는 걸 주요평가 사항으로 넣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 답이 의향을 두고서 배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선 BSC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뭐냐하면 Balanced Score Card라고 해 가지고 균형성과관리제도입니다. 그 기관의 종래에 하던 업무를 저희들이 예를 들면 충북교육청의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실현 이렇게 하던 것을 이제는 구현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실현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대 주민 선언을 하는 쪽으로 책임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우선 미션을 정하고,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비전을 중단기보다 2010년까지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비전이 충북에듀스타 2010 충북에 인재가 넘치게 만들자 2010년까지 그래서 신나는 교실,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 이것이 저희들 충북교육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략목표라 해 가지고 전략맵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한 전략맵을 만드는데 거기에 전략목표를 선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업무를 주요 교육정책을 갖다가 고객 관점에서 보는 업무 또는 내부 프로세스적인 업무, 그 다음에 학습과 성장적인 관점에서 보는 업무, 그 다음에 재무 쪽에서 보는 관점업무 이 네 가지가 같이 어느 한 부분이 특출나서도 안되고 똑같이 균형적으로 맞춰 가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추구하면서 내부의 목표한 그 임무를 향해서 미션을 향해서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걸 평가를 해 가지고 잘된 업무는 파란 불이 들어와 가지고 실시간으로 다가 얼마이상 성과가 나오면 양호한 성과가 나오고 아직 못 가고 있으면 빨간 불로 나오고 현재 보통 상태라면 노란 불이 켜져 가지고 항상 시스템을 업무가 현재 어느 쪽 수준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사항을 체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식관리시스템은 뭐냐하면 지식이 바로 재산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지식이 과거서부터 1948년도 정부수립 이후에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많은 일을 해왔는데 그 많은 일을 해 오는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가 하나의 매뉴얼화 되지 않고 그 사람이 없어짐으로 해서 자기만이 알고 있던 지식이 소멸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이 바로 돈이다 가치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하나의 시스템화해 가지고 개개인별로 성공한 사례, 또는 그 업무를 추진하다 실패한 사례까지도 그걸 지식으로 넣어 가지고 올리면 지식관리관 제도가 있어 가지고 각 부서의 장이 지식관리관이 그 거를 평점을 해 가지고 이걸 올려도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올리면 그걸 다른 사람들까지 보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예산이 들어간 이유는 지금 홈페이지에 지식창고라고 해 가지고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쌓이면 각 업무별로 단위업무별로 시간별로 분류해 가지고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도 부산교육청이 선도 교육청이 되어 가지고 같이 16개 시·도가 같이 공동으로 텀키베이스식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 이기수 위원

교육도 물론 경영학적 측면에서 관리해 갖고서 분석하는데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이만큼의 돈을 들여 갖고서 수행했을 때 여기에 대한 평가분석은 해 본 것이 있습니까?

● 혁신복지담당관 구명회

이 BSC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평가분석을 전제로 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축이 되면, 과거에 3년 동안에 저희들이 한 업무실적을 토대로 해서 기본을 잡고 앞으로 향후 Y 플러스 1년 앞으로 1년 후의 목표, 2년 후의 목표, 3년 후의 목표를 세워 가지고 그 달성수준을 그때그때 측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회사경영이나 다른

쪽에서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교육이라는 대상을 놓고도 그렇게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 혁신복지담당관 구명회

이게 성과관리시스템이 지금 정부에서 법으로 직무성과계약제라고 해 가지고 4급 이상 공무원들은 아주 법으로다 이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 대한 평가지 어떤 직무에 대한 부서평가 또는 개인평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부서평가 쪽으로 다 방향을 잡고 가고 있고, 이것이 어떤 교육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행정 전체 업무 있죠 시책에 대한 추진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3에 외국어에 대한 영어회화대회 이런 게 산출한 걸 보면 말입니다 문제편집수당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꼭 그때그때 편집해 갖고 해야지 됩니까, 기존에 있던 문제를 갖다가 문제은행 식으로 해 갖고서 적용시켜 갖고서 테스트한다면 더욱더 간편하고 그럴 텐데 매년 보던지 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능력향상과 또 초등학교의 어린이들에게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해마다 지역교육청 단위로 외국어대회 그 평가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것이 지역교육청마다 문제를 내서 녹음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녹음 시설이나 그런 것이 잘 안되어 가지고 지역교육청마다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본청에 해결방안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이걸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해마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지역교육청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는 것이 해마다 문제은행에서 뽑아서 다른 것들을 다시 편집을 해서 녹음을 해서, 일종의 평가고 또 경시니까 문제가 다르게 해마다 다르게 해서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 이기수 위원

페이지 76페이지에 병원학교든지 이런 거는 본 위원이 부산교육청 예를 들어 갖고서 권고한 사항인데 금년에는 저희도 그걸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정책을 새로 도입해서 하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계획으로 할 건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멘토링제 있을 때 그건 교육대학 학생만 의뢰해 갖고서 하는 건지 그외 중등계통은 어떻습니까, 어느 대학 대개 사범대학 있는 대학은 사립이든 국립이든 간에 다 그런 학생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원학교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일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부산 같은 데서 이미 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것보다 좀더 발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종합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현재 충북대학교에 32명, 며칠한 3일전 통계입니다. 의료원에 22명, 또 작은 병원 같은 데는 한 열 몇 명 이렇게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일단 두 군데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저희들 요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하려고 병원 측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병원 측에서 장소는 제공해 주고 환자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장소를 제공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선생님을 일정 시간에 그 환자의 맞는

시간에 보내서 그 어린이의 교육과정에 맞는 교육을 지도해 줄 이런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복안은 서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 멘토링제라고 하는 건.....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멘토링제는 지금 교육대학에서는 이미 대학 자체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산도 서 있습니다. 다마는 대학에서 학생들에 대한 일정수당이라든가 보수를 대학기금으로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고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최소한도 교통비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일단 신청하는 교원대학교와 교육대학은 저희들이 초등교육과에서 했고 또 대학마다 사립대학, 사범대학의 특수한 과마다 그 과별로 해당되는 학교에 가서 중학교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평중학교라든가 또 이런 몇 군데는 학교와 학교로 이렇게 하고 있는 학교가 지금 몇 군데 있고 앞으로 이것이 많이 확산되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지금 그러면 교육대학이 초등 쪽이고 중등이 교원대학을 아마 지금 시작을 하는 모양인데, 이 제도는 학생들의 복지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보통교육기관에서도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나 또는 컨설팅 또는 여러 가지 지식교육차원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 학교를 우선하고서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늘려 가는 방법도 있지만은, 도내에 중등교육기관의 사범대학이 충북 대학도 있고 서원대학도 있고 청주대학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정도라든가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혜택만 주고 나머지는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적당한 복지측면에서 복지장학금의 혜택 같은 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다면, 학교의 기존 장학금제도를 안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좀 그쪽에서 요청이 있을 때 우리는 협의를 해 갖고 한다는 측면보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수혜학생들 우리 학생들이니까 대학 측과 협의를 해 갖고서 거기서 나오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부담하고 우리는 교통비정도 준 다든지 이렇게 해 갖고서 많은 학생들이 일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할 용의는 없는지?

● 위원장 이상일

저기 녹음을 위해서 관계관계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위를 반드시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도내의 대학교 총장, 학장님들을 모시고 교육감님과 간담회를 가졌을 때 이 멘토링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대학, 교원대학 그리고 충북대학, 서원대학, 청주대학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결과 교육대학, 교원대학, 충북대학 여기에서 저희들과 직접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서원대학에서는 원평중학교하고 직접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주대학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확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내의 모든 대학에 협조를 다시 또 얻어서 멘토링제를 활발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통 교육청에서는 교통비정도만 부담하는 거죠, 그 학생에 대해서.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하기는 교통비 일

인당 5,000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을 적게 들이고 나머지 대학에서는 결국은 복지장학금이라는 장학금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학생들 그걸로 장학금으로 수혜를 받게끔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교육예산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부탁 올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에 과장님 또 하나 교과교실 리모델링 어떤 품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있다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럼 있다가 종료 후에 서면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이것은 청주중학교의 경우인데요, 여기에서는 1회 추경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000만원은 연구학교운영비로 쓰이는 것이고 그리고 교과교실 리모델링은 지금 1대 1 경비로써 교육인적자원부에서 3,00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비로 3,000만원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중학교에 교과교실을 새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에 시설과 설비비로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특별히 보통교실과 다르게끔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까?

대개 중학교라든지 하면 교실에서 강의 받고 나머지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도서관에서 책보고 이런 품인데, 이것은 교실 하나를 특별히 단장한다든지 또는 설비를 해 갖고서 하는 건지 이게 어떻게 아직까지는 구체안이 나온 겁니까, 앞으로 돈을 받든지 하면 그때 구상을 해 갖고서 그렇게 리모델링하는 건지?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교과교실은 지금까지의 기존 교실과 다르게 모든 동영상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그곳에서 모든 다목적실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교과교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과든지 그 교실에서는 모든 수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좀 효율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히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 111페이지에 처음 등장하는 애기가 있는데 잉글리시 파크(English Park)라고 있습니다. 영어공원이라는 애

기인지 요즘에 잉글리시 빌리지, 잉글리시 타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잉글리시 파크라고 해 갖고 별도로 이거 어떻습니까 공원 같은데 조성하고 나서 네이티브 스피커(Native Speaker)들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건지 이건 처음 등장하는 이런 용어가 나오고 여기 예산도 편성되고 했는데 거기 좀 얘기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잉글리시 파크 프로그램은 방과후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시내에 일정한 장소를 잉글리시 파크로 지정을 해서 원어민 교사가 방과후에 희망 학생들과 함께 교과 중심의 경직된 내용이 아니라 보다 좀더 자유스러운 주제로 다정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를 위한 체험중심 영어학습 프로그램입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예정이 청주시하면 청주시 중앙공원이라든지 어떤 공원 같은 데를 선택해 갖고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갖고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 해서, 학생들은 그 시간을 예고해 갖고서 오고 거기에는 외국인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몇 사람이 와서 자연스럽게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그래서 장소는 한 곳에 일정한 곳이 아니고 그날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은 수시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수시로 지정하든지 하면 학생들 홍보도 어려울 테고 또한 학생들이 수업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거리가 먼 거리가 있다든지 하면 그것도 이용가치가 별로 없거든요.

대학에도 잉글리시 존이라고 있어 갖고 도서관 앞에다가 원어민 교사들 거기는 영문과 쪽 있고 과별로도 다 있으니까 나와서 대기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수시로 점심 먹으로 가던 학생도 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학교마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중앙공원이다 어디 어디다 하든지 하면 그게 홍보가 잘 안 된다고 하고, 또 학생들은 보통교육기관에서는 9시에 시작한다면 4시이면 4시까지 수업시간이 딱 짜여져 있어 갖고 학생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만약 한다든지 하면 저녁시간이라든지 학교를 모든 수업을 마친 오후시간 저녁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이용해 갖고서 홍보를 잘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지, 이 대학에서 하는 잉글리시 존을 잉글리시 파크로 이름을 아마 그렇게 명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실효성 있게 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큰 효과가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지금 말씀하신 것을 고려하고 그리고 이것은 학교별로 희망자가 많을 경우 또 지역별로 그러한 문제를 최대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페이지 114하고 페이지 120에 있는 것이 얼버무려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흡연예방교육에 1억 4,600만원이고 폭력예방 학생생활지도 페이지 120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폭력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갖고 지금 스쿨폴리스관계를 시범 학교를 우리 충북에서도 지난해까지 3개 하다 금년에는 2개 학교 늘려 5개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갖고 그 효과가 클 경우는 앞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쿨폴리스에서 대개 전직 경관들이나 또는 정년하신 선생님들이 대개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는 모양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 있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우리가 편성하는 건.....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학교별로 시범학교 정해 갖고 우리 5개 학교하고 있는데 확실한 지침이 없으니까 체계적으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연구를 해서 확실한 지침을 취 갖고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을 이용해도 좋고 지금 뭐니까 학교에서 컨설팅 이걸 담당했던 선생님들이나 경찰에서 청소년계에서 폭력을 담당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정년하고서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이용해서 간단한 여비정도만 주고서도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폭력예방에 대한 감동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상당한 폭력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학교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으로써 학생폭력을 예방한다든지 또는 줄인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그쪽으로 한번 과장님 노력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저희들이 학생폭력을 없애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러한 문제도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면에서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교육적인 효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고, 청소년 흡연문제나 음주 이런 것도 그렇겠고 그것이 지금 그런 연사들 이용해 갖고서 학교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네.

● 이기수 위원

기사에 보면 영국에 어떤 왕따 당해 갖고 나중에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인해 갖고 정부를 상대로 해 갖고서 한 25세, 30세 이상 됐을 때 정부를 상대로 해 갖고서 소송을 걸어 갖고서 몇 천 만원씩 교육기관에서 배상을 한 예도 있습니다만 그런 걸 잘해서 폭력이 없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한 두 가지만 더하고 제 질의는 끝내려

고 합니다.

페이지 125페이지 교직원 연수교재 발간은 교직원체를 연수하는 것이 됩니까,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지금 교직원체가 교총 그리고 전교조, 한교조 지금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직원체에 대해서 이해를 넓히고자 교장선생님들이나 또 지역교육청의 노조담당자들에게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연수 때 필요한 책자를 발간하게 되는 겁니다.

● **이기수 위원**

알았습니다.

안 과장님한테 주로 질문이 집중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고 마칠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저개발국가에 컴퓨터를 제공하는데 우리 교육감도 거기를 갔다 오시고 또 우리가 연수도 시키고 다시 거기서 됩니까 지사하고 교육감하고 오늘 계획도 보고 받은 게 있는데, 우리가 지원할 때 컴퓨터를 지원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쪽 기관에 가서 인도네시아나 어디 갈 때는 이쪽에 대해서 가시는 분들에 대한 여비는 다 우리가 아마

준비해 갖고 가지죠?

●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잘 사는 나라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생각하면 별 문제는 아닌데 거기서 우리 여비로 가서 거기서 해 주고 또 올 때 컴퓨터 갖다 주고 하는데, 거기서 오는 분들도 초청해서 하는 얘기인데 여비 물론 경비도 전부 우리 예산에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지만 전액 그분들 여행하는 것까지 전부 우리 예산에서 편성된 것은 이거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 토론토교육감도 여기와 갖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얘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끝났을 때 그 이후에 연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 갖고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캐나다 같은 데는 우리보다 GNP가 높은 나라인데 만약에 거기도 결국 돈만 들어가고 무슨 과실이 없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해외관계 서로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

그래서 저희가 우리의 세계적인 IT강국으로서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아울러서 그네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 문화를 전파하는 데까지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 우리 통상관계에서까지 어떤 기반이 구축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기수 위원**

이상 질의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11시 09분 속개)

● **위원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성영용**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예산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교육감님 관사처

분의 건에 대해서 매각대금의 활용계획 및 향후 대책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현 교육감님관사는 현재 '85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써 굉장히 노후도가 심하고 그 대체 활용하는 것 때문에.....

● **간사 성영용**

매각대금에 대한 활용계획 및 교육감관사의 대체방안만 그거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정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 아는 사항이니까

● **총무과장 신건환**

그 매각이 됐을 때에 그 매각대금의 활용계획은 그 당시에 매각하고 나서 주변 여건이라든지 타 시·도 현황이라든지 그걸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 **간사 성영용**

그러세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기용 교육감님은 댁에서 출퇴근을 하시지만 향후 다른 분이 교육감이 되어서 관사가 필요할 경우는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신건환**

매각대금은 다른 교육재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관사 대체방안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매각대금은 다른 용도에 활용하지 않

겠습니다.

● **간사 성영용**

알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에는 교육재정 운영과정에 학부모 및 교직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예산편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학부모라든가 또는 교직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교육재정의 투명성이라든가 건전성을 높이고자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의견 수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활용한다든가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 **간사 성영용**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우선 예산편성 하나 하나에 대해서 저

희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건의라든가 어떤 교육예산 정보라든가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하나 하나 이렇게 어떤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간사 성영용**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 예산편성 중에서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학부모 의견에 의해서 요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 **간사 성영용**

예산편성매뉴얼에는 그게 되어 있는데 너무 소홀히 하신 부분입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그 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간사 성영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내 환경위생측정기구 5종을 본청하고 지역교육청 11개에 일률적으로 2,500만원씩 약 3억 원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기구이고 꼭 필요한 필요성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교사 내 환경위생측정기구는 교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 먼지나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소음 등 측정하기 위한 기구로 2005년 3월 24일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청 관내에는 산하에는 측정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생각되어서 본청에 하나, 지역교육청에 하나씩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필요시 측정해서 저희들 교사환경에 참고하고자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간사 성영용**

이렇게 고가 같으면 본청에 하나 두고서 각 지역교육청에 늘 측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역교육청에 돌려서 쓰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지역 관내에 보통 학교가 초·중·고 합치면 한 3,40개 일반 지역도 그렇게 되어서 지역교육청에 하나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간사 성영용**

알겠습니다.

이번에 2006년도 제1회 추경 국외연수에 대한 예산을 잠깐 좀 봤습니다. 혁신에 한 번, 초등에 5건, 중등이 11건, 과

학실업과가 3건, 교육정보화과가 4건, 평체과가 1건, 총무가 2건, 기획 하나, 학운 각 하나씩인데 총 23번의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엔 전혀 없다가 이번에 이렇게 많이 선심성 같은 예산을 해서 6억 5,200만원씩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교직원 국외연수 여비를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2억 59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5년도 국외연수 예산보다 요렇게 되면 7억 4,100이 총 국외연수여비가 7억 4,100이 되겠습니다만 2005년도보다 약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새로 추가로 사업한 것은 우수 실업고등학교 학생들 영농학생진진대회나 기능경기대회에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학생들에 대한 국외연수여비하고, 전국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지도능력이 우수해 가지고 노력한 선생님들에 대한 해외연수 그게 추가되어서 증액이 된 것이고 나머지 인원은 전년도보다 증액된 건 아닙니다.

● **간사 성영용**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에 특히나 유공자 포상이 이래 많은데 꼭 이래 많아야 됩니까?

● 혁신복지담당관 구명회

혁신복지담당관 구명회입니다.

혁신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아직 혁신의 바람이 전도적으로 불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는 사람들에 대한 포상 또 인센티브 이런 것이 혁신평가에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혁신을 하고자 하는 조직이나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가 시·도교육청 평가에 엄청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소한도 필요한 거만 세운 겁니다.

● 간사 성영용

알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선도학교 운영에 있어서 초등학교 1, 중등은 1, 고등학교 4 이래서 6개 학교인데 고등학교가 특히 집중적으로 많은 이유가 어떻게 해서 많은지?

● 혁신복지담당관 구명회

저희들 도 단위에서 6개교를 하는데 고등학교가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교육청이 고등학교를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많이 넣었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관장하는데 시범적으로 선도학교를 하나씩만 지정하고 지역교육청 단위로 자체적으로 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4개교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 간사 성영용

알겠습니다.

다음 초등교육과 소관인데 사립유치원 담임수당이 11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66명만 되어 있는데 담임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사립유치원 월 11만원씩 담임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산·어촌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 지역은 제외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인가 받은 학급이 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간사 성영용

담임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사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갖겠네요.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담임은 다 줍니다.

● 간사 성영용

담임은 다 됩니까, 그러면.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네.

● **간사 성영용**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과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구입이 34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당초 이거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지금 도내에 당초보다 4개원이 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원된 것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 **간사 성영용**

아, 그렇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네.

● **간사 성영용**

알겠습니다.

다음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지원 관계인데 59쪽이 되겠습니다. 59쪽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여비가 청주·청원지역 만원씩 해서 240명이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사업량은 100명이 증원되어서 100명에 대한 예산으로 되어있는데 이 240명이란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은 국가에서 3 대 7로

예산을 주고서 실시하는 건데 타 도의 경우 기존 예산에서 다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번에 편성했는데, 240명의 근거는 전체 유치원에 대한 학급에 대한 비율로 요정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통계를 내니까 계산해 보니까 240명정도 하면 되어서 240명 인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 **간사 성영용**

그러면 사업계획 이게 240명으로 되어야지 100명만 증원된 것으로.....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아, 처음에는 즐었는데 100명이 교육부에서 더 증원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명 증원 분을 더 추가를 한 겁니다.

● **간사 성영용**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 량조 이 설명자료에 의하면요.

그리고 외국어 회화대회 관계는 학생이 외국어교육원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초등교육과에서 꼭 해야 됩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지역교육청에서 합니다. 지역교육청별로.

● **간사 성영용**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방과후 학교운영

에 있어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인력 활용 3만원씩 해서 4명이 150회라고 나와 있는데 150회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지금 도내에는 많은 분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교에서 방과후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는 본교에서 다 소화를 시키니다마는 분교 작은 학교 소규모 학교는 우선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학교에 대해서 3,4교를 지정해서 인력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150회는 1년에 한꺼번에 갈 수 없으니까 매일 갈 수가 없으니까 2,3일에 한번 이렇게 가서 지도할 숫자를.....

● 간사 성영용

2,3일에 한번이면 저 수업일수가 220일로 계산하면.....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최소한도 150회 정도를 저희들 240일을 잡으면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150회 정도를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간사 성영용

2,3일에 간다고 그러면 이틀에 한 번 간다고 그래도 110번밖에 안되는데 150회라는 게 가상 수치입니까, 아니면.....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저희들이 150회 정도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 간사 성영용

계획상입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네.

● 간사 성영용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등교육과 93쪽이 되겠습니다. 93쪽에 학교 운영평가 우수교 지원에 있어서 그 중간에 사업개요에 초등·특수 교당 500만원씩 유치원은 원당 200만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유치원이 100만원 되어 있고 초등·특수가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차이나는 부분이 왜 차이나고 어디가 맞는 겁니까, 계획이 맞는 겁니까, 산출근거가 맞는 겁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학교 전국평가에서 주는 기준이 유치원은 100만원, 초·중등은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초등, 내년에는 중등, 고등학교는 3년마다 평가해서 선정.....

● 간사 성영용

지원금이 사업개요에 여기 나타난 사항은 지금 초등·특수는 교당 5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예.

● **간사 성영용**

그런데 밑에 산출근거 지원금은 지금 3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건 해당 과에서 설명서 작성할 때 처음에 예산 요구한 걸 가지고 사업내용을 기재한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교당 500만원, 유치원은 2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예산 부서에서 300, 100으로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아마 요거 사업내용을 당초 요구한 금액으로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 **간사 성영용**

다음 중등교육과 10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7만원씩 10명 4회로 되어 있는데 교육과정위원회가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교육과정위원은 부교육감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대학교수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교육계에 교장 그리고 학부모위원 그리고 초등과장, 중등과장 이렇게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간사 성영용**

그럼 초등과장님이나 중등과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은 여기 예산에서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여기에는 인원이 12명인가 14명인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성영용**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하고,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네.

● **간사 성영용**

중등교육과 110쪽이 되겠습니다. 영어권국가 현지어학연수에 있어서 참가 교사가 미국에 27명 캐나다에 27명 해서 총 5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출근거에는 27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기획관리과에서 짚은 겁니까?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그 연수경비는 300만원 곱하기 27명 곱하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미국 27명, 캐나다 27명 요것을 2회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성영용**

2회로 해서 54명이다.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네, 그렇습니다.

● **간사 성영용**

알겠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학력제고대상교 지원에 있어서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가 총 49개로 알고 있는데 학력제고대상교 지원이 39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개교밖에 안빠지는데 이왕 하려고 그러면 다 주던지 그 10개교는 한 75%를 주고 한 25%는 안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다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여기에서는 지방 우수고등학교는 여기서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모든 학교를 전부 줬습니다마는 요번에는 그래서 지역 우수학교를 제외하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 **간사 성영용**

아니 여기 산출근거에는 선도교, 우수교, 장려교, 소규모교 이래서 400, 300, 200, 1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외했다는 말씀은 어떤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농촌우수고등학교 농촌우수고등학교는 단양고등학교, 영동고등학교, 진천고등학교, 괴산고등학교, 보은고등학교.....

● **간사 성영용**

과장님 제가 어느 학교를 알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총 49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39개 학교만 이래 지원을 해 주면 약간 차별화된 기분이 들지 않느냐 이 얘기요.

●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촌우수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그 지원받은 학교는 제외하고 현재 지금 선도교, 우수교, 장려교 이거는 학력제고를 위한 평가기준으로 선도교는 400만원 그 다음 차점을 받은 우수교는 300만원 이런 순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성영용**

다음 과학실업교육과 소관 155쪽이 되겠습니다. 과학 탐구 학습에 따른 학생수 송비 지원으로 해서 지금 2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초·중등학교 버스 800대 지원인데 어디서 뭐 하는 거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어서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입니다.

과학탐구·체험학습은 저희가 도내에 과학 체험 학습할 수 있는 곳에다 683곳을 지정해 났습니다. 그래서 그 683곳 지정된 곳을 지역별로 문화벨트를 만들어 갖고 요 벨트화된 곳을 가서 체험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겁니다.

● **간사 성영용**

800대에 대한 세부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예, 이게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 **간사 성영용**

서면으로 하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예.

● **간사 성영용**

다음 과학실업교육과 172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실업고학생 해외직업연수가 있는데 독일로 9일간 하게 되면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애네들이 가서 될 얼마나 배우고 올런지 지금 학생들도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학생들이

가서 얼마나 할지 그게 걱정도 많이 되고, 또한 이왕 이렇게 돈을 들일 거면 학생들보다 교사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좀더 직업교육을 시킬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입니다.

우수실업고학생 해외직업교육 연수는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이 나와서 그거에 의거해서 일단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수학생도 가지만 우수하게 지도한 교사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 **간사 성영용**

될 수 있으면 선생님들 비중을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7쪽에 전국소년체전 유공자 해외연수 300만원씩 해서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4명이 갔는데 10명이 늘은 이유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이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한번 알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입니다.

금년도 첫 사업으로써 저희 엘리트교육

에서는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소년체전, 전국체전 치루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그 엘리트교육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갖고 이런 문제를 걸어서 선생님 사기진작을 하고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 간사 성영용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아마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는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도 적은 것도 아닌데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죄송합니다. 이걸 작성을 저희들이 안 해서 냈습니다.

● 간사 성영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작성해서서 이런 하자가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네, 알겠습니다.

● 간사 성영용

기획관리과에 농·산촌 교육발전 지역 협의 운영에 있어서 협의회 구성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미리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참석수당을 편성할 때 뺄 사람은 빼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집행할 때는 소속공무원은 지급을 안하고 외부위원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성영용

알겠습니다.

다음 단재교육연수원 부분인데 332쪽이 되겠습니다. 연수생 수송버스 구입비가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퇴근 내지 연수생 수송이라면 연수계획에 의해서 시간이 충분히 조정이 되니까 차량은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임차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백남권

단재교육원 총무부장 백남권입니다.

지금 그 차가 너무 노후되어서 지금 2년이 내용 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연 한 앞으로도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서 쓰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 간사 성영용

질의 주요내용은 이것을 임차로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차량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경비가 들기 때문에 임차의 방향이 어떤가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버스를 교체하지 않고 임차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기존의 운전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전원 퇴직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성영용**

그러면 학생외국어교육원에 차량 임차 관계는 운전기사가 없기 때문에 임차하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외국어교육원에 입소하는 학생들을 시·군별로 이렇게 수송하는 임차료입니다.

● **간사 성영용**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느 위원님?

김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교육위원 김남훈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관계관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에 의하면 당초 예산보다 여비지급 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는 공문이 일선 학교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에는 여비지급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예산도 추경에 다시 포함해서 더 인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는지 아니면 추경예산 편성 없이 여비지급 기준만 변경해서 내려 보내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여비기준이 30%정도 기준이 증액됐습니다. 기준상은 근데 저희들이 학교운영비 총액 교부하고 나서 요번에 추경에 인상분을 반영 못했습니다.

다만 교원자격 연수여비를 저희들이 집중해서 12억 정도를 본청에 세웠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는 출장여비가 좀 인상됐더라도 저희들이 학교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서 요번에 인상분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기관에는 기본여비만 기본여비를 100만원씩 해서 행정기관의 여비는 요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단위학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 **김남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런데 연수여비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일괄해서 지급하는 방안이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시에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 학교회계제도에 포함시키고 않고 관계 해당 과에서 실시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내 여비에 대해서 1일 만원 하던 것을 2만원으로 인상했고 그리고 자격연수 같은 경우에 165만원으로 인상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비를 인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이 추경 편성표에 보면 본청과 직속기관에는 이번에 여비인상 분을 갖다가 추경에 전부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본여비만 직원들은 35만원 했고.....

● 김남훈 위원

그리고 장들은 100만원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예, 그렇게만 인정했고.....

● 김남훈 위원

그것이 다시 여비가 다시 인상된 부분이죠.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예, 기본여비입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런데 이 예산편성표를 보면 본청 11개 과에는 과원수 곱하기 35만원 이렇게 나왔고, 직속기관 같은 데는 일반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일반직.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교육과학연구원이라든지 단재교육원이라든지 아니면 학생수련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문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직 수는 뺀단 말이죠. 다만 전문직이 들어간 데는 어디냐 하면 학생외국어교육원에만 일반직 및 전문직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빠진 전문직 여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다 들어가 있는데 표시를 저희들이 일반직 위주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4,5급에 장학관이라든가 연구관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숫자상으로는 그 다음 6급 이하에는 지급기준이 같기 때문에 장학사라든가 연구사는 다 포함된 겁니다.

● 김남훈 위원

포함된 건데 표시만 그렇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그렇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럼 그 표시가 일반직 및 전문직이 맞습니까, 그냥 일반직이 맞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표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유념을 해서 표기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청 같은 경우에 과원수로 나왔는데 이 과원수 중에는 일반 기능직도 전부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맞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런데 본청의 기능직들은 35만원으로 공히 여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직속기관에는 기능직은 별도로 나와있어요. 17만원씩 그래서 35만원 대 17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차이에서 나온 겁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그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직원들 여비기준 일인당 행정여비기준을 작성할 때 사업소의 기능직과 본청 기능직은 당초에 본청 기능직은 일인당 85만원으로 했고 사업소는 7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요번에 증액분 인정할 때도 좀 차등을 둔 것 같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근데 차등을 두었다는 것은 똑같은 교육감소속의 공무원인데 본청에서 근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5만원이고 그리고 직속에 근무한다는 것 때문에 17만원이고 이렇게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출장 갈 때 여비를 차등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어떤 업무 비중에 따라서 교육이라든가 출장 횟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단가를 차등을 둔 겁니다.

● 김남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상된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예산액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에 보면 교육과학연구원에 연구학교지도 여비가 1,452만원 그러니까 연구학교지도여비는 100% 다 삭감이 됐습니다. 100% 이번에 추경에 얼마가 반영이 됐느냐 하면 264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264만원 그 항목이 뭐냐 하면 연구시범학교 운영보고회 참석 그걸로 해서 264만원이 나왔는데 종전여비 1,452만원이 삭감

되고서 이번에 추경에서 264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연구학교 운영지도를 하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연구학교 선생님들 전원을 교육과학원에 불러서 지도를 할건지, 그리고 48개교만 종결보고회 때 참석을 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는데, 충청북도 내 지금 현재 연구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 안 나오셨어요,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나오셨습니까?

●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오인세**

총무부장 오인세입니다.

● **김남훈 위원**

이번 2006년도 본예산에 연구학교 운영지도 출장여비가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오인세**

예, 알고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런데 이번에 264만원만 추경에 편성됐는데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오인세**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오인세입니다.

저희들 방침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연구학교지도는 담당선생님들이 연구원을 내방해 가지고 지도를 받고 중간보고나 종결보고만 연구사님들이 참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남훈 위원**

알았습니다, 부장님.

그런데 이 연구학교 운영지도라고 하는 것을 연구사님들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가만히 앉아서 어디 어디 와라해서 지도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장을 가서 둘러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본 다음에 거기서 상황판단을 거쳐서 연구학교 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이 삭감된 예비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요구를 안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태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오인세**

교육과학연구원 오인세입니다.

요구를 안한 것이 아니라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나고 한 700만원 정도 했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러면 700만원 요구했는데 260만원밖에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근데 예산편성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목적여하에 따라서 일 추진성과에 따라서 예산삭감할 부분이 있고 또 삭감하지 않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구학교라는 것이 도내에 120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20여 개의 학교를 전부 가만히 앉아서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을 갖다가 본원에 불러서 연구를 지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차후에도 시정해 주셨으면 하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운영에 대한 지도사무가 어떻게 이원화 됐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하고 본청하고, 제가 알기에는 행정부분은 본청에서 맡고 실질적인 연구학교 지도는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지금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적인 지도는 본청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인 과정지도라든지 내용지도라든지 또 평가관계는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연구담당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것 좀 명백히 해 주시고 이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빠졌으면 다음 2회 추경에서라도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연구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세요.

연구학교운영에 막대한 인력소모와 예산이 들어가는데 불구하고서 실질적으로 지도를 해야 할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제대로 연구학교운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사항별 설명서 64페이지와 79페이지를 보면 초·중등 평생교육사자격 연수여비가 있습니다. 초등은 10명, 중등은 14명이라는데 40일간 연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평생교육사자격연수가 어떤 것이며 이 자격연수 이수를 받고 오면 어떻게 활용되고 이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중등교육과장님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 업무이기 때문에 초등교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평생교육사라는 것이 최근에 된 건가 봅니다. 저도 업무를 맡고서 공부를 했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부터 교육인자원부와 교원단체의 교섭 합의사항이랍니다.

그래서 합의사항으로써 현직에 있는 선

생님들을 평생교육사로 연수를 시켜서 교육의 계획, 추진 이런 것들을 자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시·도에 연수인원이 배정이 되고 연수실적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못하고 있고 또 연수기관이 전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전국 6개권으로 나누어 있는데 충청도에서는 천안의 백석대학교밖에 이걸 안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요 인원수를 일정 인원수를 연수를 시켜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걸 평생교육사업이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문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금년부터 다시 만들어진 신설사업이군요 알았습니다.

역시 초등교육과 소관인데 사항별 설명서 60페이지를 보면 초등학교 통일교육용 교재구입비로 1억 3,801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통일연수 교재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당초 본예산에 이것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됐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사유와 이 통일교육용 교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검정용 교과서로 알고

있습니다. 검정용 국가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검정용 교과서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갖다가 채택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초등교육에 질문해 주는데 감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검정교과서고 이미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통일교재는 2003년까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1,2,3학년은 변경된 교재로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4,5,6학년용은 2005년도부터 다시 구입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 못해 가지고 금년부터 변경된 교재를 4,5,6학년에 공급을 하고, 1,2,3학년은 이미 공급이 됐는데 왜 공급을 했느냐 하는데 1,2,3학년 애들은 교재를 많이 썼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되고 또 일선 학교에 더 많은 양을 공급을 요청을 해 와서 그에 비준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표에서 보시는 만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 김남훈 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 양이 각 학교에 한 학급 분으

로 주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려고 하면 과거에 2001년도인가 '02년도인가 이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고심고심하다가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 통일교재 초등학교 교재를 학교비품으로 비치하고서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활용하거라 하는 단서를 붙여서 그걸 갖다가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교비품으로다가 해서 사용을 해왔는데 이것을 다시 전 학급을 대상으로 해서 구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오래 사용해서 떨어졌다고 하면 그 훼손된 물량만 다시 구입하면 되는 거지 각 학교의 한 학년 분을 전부 다시 구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1,2,3학년 분은 훼손된 부분 또 일선 학교에서 더 요구하는 부분을 보충해서 보급하고 4,5,6학년 분은 변경됐습니다. 구 교과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교재가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새로운 교재로 보충해서 보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남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방금 전에 성영용 위원이 질문

하신 사항인데 저도 교원국외연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과 보편은 64페이지, 70페이지에 교실수업 비교연구 국외연수 또 70페이지에도 교실수업 비교 국외연수 이렇게 똑같은 연수타이틀을 가지고서 이쪽하고 저쪽하고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서 10명, 20명해서 30명을 보낸다고 예산서에 나타낸 그 이유가 뭐니까 이게 연수내용이 똑같은 것 아니에요 64페이지, 70페이지.

(“70페이지는 없잖아요” 하고 회의장 내에서 말함)

없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 보편 수업스타 선진지 체험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해마다 하는 겁니까, 금년도만 하는 겁니까? 중등 87페이지.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수업스타 선진지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단교사의 수업연구를 활성화하고 교실수업 도약.....

● 김남훈 위원

아니 해마다 하는 거냐 계속 사업이나 그것만.....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요것은 수업스타지원단 활동을 통해서 신규교사 연수, 강사 또 학교별 동료장학

뭐 이런 지역별 협동장학위원, 각종 교수 학습자료개발위원 등으로 요것은 적극 활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 김남훈 위원

근데 이것이 수업스타면 지금 현재 이미 선발된 스타가 아니고 앞으로 선발될 스타를 갖다가 이 연수에 해당시키는 거죠?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그렇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스타 연수가 없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것이 작년에는 같은 수업스타인데 이런 사업이 없다가 금년에는 또 있고 또 내년에는 그만 두었다가 후년에는 다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2004년도 이때는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띄웠다가 금년에는 다시 실시하는 이유가 됩니까?

그럼 작년에는 하지 않았던 수업스타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알기로는 수업스타로 수업연구발표대회에서 최고의 상을 받은 선생님들은 장학위원으로 저희들이 활용

을 했고 그리고 장학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 김남훈 위원

아니 체험연수, 해외연수 시킨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혁신인센티브 차원에서 금년부터 해외 연수는 실시하게 됩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사람이 가서 맛이 아니라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수는 400만원, 뭐 300만원 이렇게 넣었는데 100만원 가지고 무슨 이 사람들 수업스타에 대한 연수를 시킨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 100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서 업무보고를 들으면 이 수업스타를 갖다가 활용한다는 것이 아주 대대적으로 PR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답변 못하시면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예.

● **김남훈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 보면 외국어영어연수원이 진천 문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지 원어민들을 채용해서 지금 영어수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어권 현지 어학연수를 갔다가 27명이나 이렇게 계획이 서있고 또 아까 말씀 들으니까 이권 전반기이고 후반기에는 2차로 해서 54명을 한다는 소리를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구태여 54명씩이나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해마다 보낼 필요가 있는 건지 그 외국어영어연수원 갖다가 활용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외국어교육연수원에서는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이고 1년 동안 그래서 방학기간 중에도 학생연수로 스케줄이 꽉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어권국가 현지 어학연수는 요것은 초등학교 선생님과 중등 선생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써.....

● **김남훈 위원**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전서부터 사뭇 있었습니다.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지금 4주 동안 실시하려고 하는 요 내용은 방학을 이용해서 7월 15일부터 8월 11일까지 지금 현재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신규사업입니다.

● **김남훈 위원**

과거에도 있었던 문제인데 인원수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혁신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하는 교육행정혁신비교 해외연수 그 다음에 직무능력향상 혁신연수 이렇게 타이틀 비슷한 것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37명이나 되는데 이 혁신 아까 성영용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을 적에 혁신마인드가 지금 현재는 부족해서 이것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안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해외연수를 보내야만 이것이 불 조성이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건지 의심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가요?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혁신부서의 해외연수 저희들 예산계상한 2명은 혁신업무에 유공자, 노력한 사

람들 교육부 주관으로 하는 해외연수 2명 계상한 것이고 총무과에 일반직 해외연수 15명, 또 직무해외연수 20명은 일반직 해외연수 경비는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일반직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일정 부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김남훈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9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236페이지를 보면 교사내환경위생측정기구라고 있습니다. 5종 기구에 11개 지역교육청에 일률적으로 2,500만원씩 배당을 했어요. 그래서 총 3억을 배당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관계관 석에서 “아까 성영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하고 말함)

그러면 답변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 5종이라는데 5종이 어떤 어떤 기구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측정기구 5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측정기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세 먼지를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4,000만원 계상을 했고 이산화탄소 측정기가 있습니다. 폼알레히드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실내환경종합측정기라고

해서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보존, 온·습도 등을 측정하는 기구 등 그리고 소음측정기 이렇게 해서 5종입니다.

● 김남훈 위원

이거 구입하게 되면 어디다 설치합니까?

● 교육국장 박의상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측정기로써 필요한 때에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 김남훈 위원

아니 글썽 어느 곳에 설치해서 측정하느냐 이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교사내에다 설치합니다. 교사내입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러니까 어떤 학교를 지정해서.....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지역교육청에 1대씩 내보내서 필요한 데서 그걸 교사에 설치해서 하게 됩니다.

● 김남훈 위원

이것이 지역에 관계없이 이것을 일률적으로 11개 교육청에 전부 청주가 같은 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청정지역이나 이런 데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2,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지금 교육재정이 빈약하다 하면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1대씩 구입하는 이유가 정말로 무엇인가 하

는 걸 갖다가 제가 공급해서 여쭙보는 겁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입니다.

금년도부터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연 1회씩은 꼭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연 1회씩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예, 연 1회입니다.

● 김남훈 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학생종합수련원 보편은 중앙공급식정수기가 3,100만원씩 2대가 거기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천 임해수련원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 건지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앙공급식 정수기 정수기가 3,100만원씩 하는 게 있어요?

●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곽종수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곽종수입니다.

그것은 저희 수련원 특성상 여름철에 많은 학생들이 수련하고 교직원들이 이용하는데 그것은 대천에 1대, 진천에 1대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이 유해세균이라든지 중금속 등을 완전히 제거해 주고 물 관리 이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러면 진천에는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죠?

●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곽종수
예.

● 김남훈 위원

대천에는 상수도 들어오죠?

●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곽종수
예.

● 김남훈 위원

그런데 그 1대를 구입하면 몇 명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곽종수

1일 정수능력이 30톤 정도 됩니다.

● 김남훈 위원

30톤

●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곽종수
예.

● 김남훈 위원

30톤이면 몇 명 정도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곽종수

그게 1대가 그게 지역별로 1대씩 필요합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어서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알아봤더니 물 500톤이래 하루에 500톤을 갖다가 할 수 있고 용량이 커 가지고서 이것은 하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살균까지 되고 뭐

여러 가지 불순물도 제거할 수 있고 걸러내서 좋다고 하는데 임해수련원은 이해가 가는데 학생수련원 같은 데는 이것이 필요할 건지?

●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곽중수
외국어교육원 학생들하고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여름철에.....

● 김남훈 위원
외국어연구원까지요?

●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곽중수
예.

● 김남훈 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에서 93페이지를 보면은 주요사업 설명서 131페이지입니다. 농촌우수고등학교 지원사업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원한 데는 16억씩 이렇게 지원한 걸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지원금액이 전부 틀려요, 9억 4,000만원, 그 다음에 9억 3,000만원, 7억 7,000만원 심지어는 5억 6,000만원 이렇게 과거에는 16억씩 주던 것이 이렇게 같은 사업인데 불구하고 3분의 1수준으로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당초에 영동고등학교와 단양고등학교는

교육환경시설이 열악해서 영동고등학교는 다목적교실 신축 등에 13억 여 원이 소요가 된다고 했고, 그리고 단양고등학교는 정독실 그리고 급식소를 증축을 하고 화장실 개선 그리고 천장설치 등에 12억 8천여 만원 등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에 많은 재정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괴산고등학교와 보은고등학교 그리고 옥천고등학교, 음성고등학교는 다목적교실이나 강당 그리고 기숙사, 도서관, 급식소 등 기본시설이 잘 갖추어져 관계로 농촌우수고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서 4개 학교에 분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학교별 필요 예산을 저희들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강사 초빙비 3,300만원 그리고 학교자율경비 5,000만원 등 각 학교 공통 8,300만원씩과 그리고 괴산고등학교는 급식소 이전 및 기숙사 확충 등 시설사업비 8억 5,700만원 그리고 보은고등학교는 교실바닥재 설치와 천장보수 등 시설사업비로 8억 4,700만원 그리고 옥천고등학교는 플로링 바닥교체, 화장실 개선 등 해서 시설사업비가 6억 8,700만원, 음성고등학교는 본관벽체 보수 및 도장공사 등 시설사업비 4억 7,7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해서 학교별로 차이가 나게 됐

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기본 금액은 16억으로 똑같은데 우리 도의 학교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2개 학교 지원할 걸 갖다가 3학교 내지 4학교로 다시 실정에 맞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네, 그렇습니다.

● 김남훈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김남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경과가 됐고 또 시간상으로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진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진옥경 위원입니다.

일단 궁금한 부분부터 여쭙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세입예산 중에 과년도 수

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서 과년도 수입에 94억 여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2005년도 지방교육채 미발행 부분이라고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입출관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2005년도에 미발행되었던 부분요.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2007년도 학교신설비인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지방교육채 170억을 저희들이 승인받은 사항인데, 기채를 안하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신설학교 확정교부금 올 때 신설학교 부족 분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94억 원을 기채로 약정만 해놓고 수입은 금년도에 저희들 자금 봐 가지고 부족하지 않으면 기채를 안하고 부족하면 기채하려고 그래서 금년도 과년도 수입으로 일단 예산은 잡아놨습니다. 그 94억은 신설학교 3개교에 대한 시설비 부족 분입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게 들어올 가망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저희들 지금 예상은 94억은 가급적이면 기채를 안하고 넘어가려고 자금운영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확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그래서 일단은 과년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래서 물론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의 예산들도 그렇겠지만 학교단위에서 1년간에 예산들이 어느 시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 오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는가요?

그런 연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지금 예산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 는 해마다 추경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가 어떤 것을 본예산에 세우고 어떤 것은 1차나 2차 이런 무슨 법칙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 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사업 같은 것들이 새로 만들어져서 내려온 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반적인 어떤 예산을 학교나 지역교육청 단위로 예측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을 잡을 수가 있느냐 말씀이죠.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학교는 저희들이 총액교부 당초예산 총액교부 가지고 거의 1년치 예산으로 살림 운영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저희들이 추경에 일부

예산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극히 드물고 당초에 총액 교부한 것 가지고 학교살림은 1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 살림은 어떤가요?

● 기획관리국장 김장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전년도 8월경에 확정교부도 아니고 예정교부를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확정교부는 그 이듬해 2월경에 확정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작년도 확정 교부금이 지금 보통교부금이 179억 늘어 가지고 추경재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교부가 예정교부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습니다. 추경에, 1회 추경에 그런데 학교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총액교부를 하니까 거의 1년치 살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들이 우수학교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도 그렇고 아무런 대비가 없다가 이렇게 교부가 되는 것입니까?

너무 지금 제가 예산 전체의 어떤 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도 그렇겠지만, 문학에서도 작품을 쓸 때 글을 위해서 정을 억지로 꾸며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마치 돈이 생겨나면 억지로 사업을 거기에다가 맞추고 그렇게 해서 학교사정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들을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지금 우수학교, 농촌학교라든지 이런데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그것들이 어떤 뭐랄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것을 해당 학교가 알고 있는지를 저는 알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몇 개년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해당 학교들이 알고 있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농촌지역 우수학교 육성은 5 대 5 사업입니다. 국고 16억, 지방비 16억인데 당초에는 이게 2009년도까지 1군에 1개교씩 할 계획이었는데, 금년에 내년도까지로 해서 완성하는 걸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에 4개교로 됐으니까 이게 계획대로 하면 금년에 2개교입니다 2개교인데 이게 계획이 앞당겨져서 금년에 4개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으니까 저희들로서도 예측은 못했었죠. 교육부지침이 바뀌니까 늘어났습니다.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예산항목이 여러 가지로 정확하냐 안하냐 이런 부분들에 많이 초점을 맞추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총체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다 지난 2월 달에 교육위원들 차원에서 결의문을 작성을 하기도 하고 낭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육예산이 과연 적정하게 설정이 되고 효율적으로 뭐랄까 세워졌느냐 이런 차원에서 좀 보았습니다. 결국 다른 위원님들 내내 많은 예산들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제가 지적한 사항들이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보시는 어떤 예산의 관점과 일선 학교나 아이들의 교육의 어떤 문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학부모들이나 이런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청렴도 향상 연찬회를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이게 지금 어쨌든 1차 추경이 지금 오늘 4월 달에 하는데 지난 3월 29일날 이미 1차 연찬회를 가지셨죠, 어떻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지난번에 3월 29일날 저희들이 연찬회를 한 것은 반부패와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직장교육과 맞물려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가 사전에 방이나 사전교육을 위한 반부패교육을 별도로 만든 거고 지난번에 한 것은 직장교육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했던 겁니다.

● 진옥경 위원

이거와는 그럼 다른 사업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예, 그렇습니다.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연찬회를 가져야된다 또 반부패을 위한 연찬회를 가져야한다 이런 것들이 돈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는 뭐 연찬회니까 그런 것들이 강사부르고 또 자료집 만들고 플래카드 만들고 이렇게 그냥 세트로 전부 예산이 책정이 되고 집행되죠.

그런데 이런 데에 반부패나 청렴도를 위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단적으로 말해서는 교육공무원 여러분

들이 그런 어떤 절실한 자기 뭐랄까 자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외부적인 요인 남의 어떤 일시적인 설득이라도 좋고 그런 이야기에 의존하기 위해서 이런 돈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과도기적으로 불가피하다면 할 수 없겠지만 이런 예산은 사실은 불필요한 단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 하나 마음을 바로 잡고 또 올바르게 가게 된다면 이런 예산들은 불필요한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런 연찬회가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어떤 자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성과관리라든지 균형성과관리 또 지식관리 이런 여러 명칭의 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책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도 진작에 좀 자체적인 차원에서 마련이 됐어야 되고 여러분 때로는 어떤 위원님들께서도 업무간에 그러니까 실·과간에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들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또 다른 기관들의 어떤 혁신모델

같은 것들을 교육분야에도 이제 도입하려는 그런 노력으로 보고, 어쨌든 썩 탐탁치는 않지만 이런 기반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것들은 불가피한 것이라면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선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폭력사업에 관련한 초등교육과인가요 폭력없는 사회 만들기에 대해서 2005년도 3회 추경에도 1,0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됐고 다시 또 이번에도 9,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고보조금의 사업인가요?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예, 그렇습니다.

● **진옥경 위원**

폭력없는 사회 만들기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예.

● **진옥경 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비로 사업별 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폭력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충북협의회 운영비하고 사업비에 관해서는 요것은 지방비에 쓰여 있는 것은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기록이 되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런데 돈이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작년, 올해 해 가지고요, 그런데 이것 아무리 국가적인 사업이고 이것이 또 폭력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염원이 간절하기로서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런 1억의 예산을 투입할 만한 어떤 아웃풋(output)이 어떻게 예상되는지 한번 저를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폭력없는 사회 만들기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은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그 용도까지 이것은 완전히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나 사업비는 저희들 교육청으로만 내려주고 바로 이것은 폭력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충북협의회로 저희들은 보내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이 사업계획서는 충북협의회에서 올려서 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재원 계획도 충북협의회에서 세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 돈을 배분함에 있어서 저희들 교육청을 통해서 이렇게 주고 있을 뿐입니다.

● **진옥경 위원**

그래도 어쨌든 사업내용은 잘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통해서 가고 온다 하더라도 중간적인 역할을 할 때 그 부여할 때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에 교육청 산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그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 말씀이죠.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여기에서 지금 지난해에도 충북협의회에서 캠페인활동을 벌였고 그리고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실무위원회에서 또 협의를 한 운영 그 사업내용이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충북협의회 사업실적을 보면 위원회를 3회 개최를 했고 그리고 실무위원회를 4회 개최를 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부모교육을 4회 실시했고 폭력추방캠페인을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폭력추방을 위한 대형현수막을 19개 학교에 설치를 했고 그리고 심성개발 프로그램 고운 심성 기르기 운영을 4회 실시한 실적으로 저희들이 받았고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폭력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런 것들이 전혀 전무한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없겠지만 매우 많은 예산에 비해서 저는 참 무의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지금 충청북도에 우리 교육청 산하에서 지난 2005년도 6월 달에 모 학교에서 코치가 그야말로 학생을 허리를 못 쓸 정도로 병석에 누워있도록 만든 그런 사건들이 정말 9개월이나 넘도록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했다고 언론보도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이것들이 폭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사에 의한 폭력은 지난 3월 28일도 마찬가지로 순천에서도 운동부 제자 교사에 의한 폭력이 언론보도가 되고 또 구속이 되었습니다.

또 폭력은 아닐지라도 어쨌거나 지금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안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중등교육과를 통해서 받은 사안들도 보면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문제진단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진데 사실 그것은 예산이 별로 필요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등교육과를 통해서 제가 충북여고 교통사고 사안을 받았을 때 이게 며칠입니까 며칠전입니다. 저한테 이것이 왔는데 여기에는 피해자 학생의 이

름조차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 가해자가 교사인데 교사라는 표시가 어디에도 되어 있지 않고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과정에 대해서도 매우 부실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형태로 교육위원이라는 하나의 어떤 뭐랄까 일종의 교육행정의 파트너로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정보제공조차 하지 않는 이런 풍토가 더더욱 문제인 것인지, 1억에 가까운 이런 폭력추방캠페인이나 아니면 위원회 협의회나 이런데 돈을 쓸일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그야말로 들어내고 그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대처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것이지만 매우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이런 어떤 문제해결이 그야말로 학생들의 피부, 학부모들의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폭력없는 사회 만들기를 주선하시는 편이 훨씬 장기적으로 볼 때 의미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중등교육과장님은 지난번에 저한테 올려주신 이 교통사건에 대해서 더욱 조사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알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 다음에는 방과후 학교와 관련한 초등교육과에 대해서 예산서에 꼭 이렇게 장황한 수식어를 붙여야 됩니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이라는 그런 것들은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에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방과후 학교운영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 2월 28일 날 서울에서 방과후 학교에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을 못하고 자료집만 받아 봤는데 대체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학교이후의 생활을 보호받아야될 학생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 이런 것이 절실하고, 또 여러 가지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방과후 학교가 완전히 뭐랄까 전국적인 사업으로써 정책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문제는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하향식의 어떤 사업설정 그리고 또 사업내용에 있어서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된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방과후 학교의 운영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여전히 그런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서 실버스타 활용이라고 사항별 설명서 62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년하신 분들 또 연세 드신 분들을 방과후 학교운영에 동참시키는 이런 형태인 것 같은데 250명이나 됩니다, 여기에.

그대신 여성인력활용을 이걸 도를 통해서 훈련받은 어떤 인력을 아까 설명을 통해서 어떤 거리 상으로 멀리 있는 이런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여성인력 활용하는 것은 단지 4명에 불과한 이런 형태로 할 때는, 물론 횟수의 차이는 상당히 큼니다만 이 대상이 이렇게 실버스타에게 연세드신 분들에게 방과후 학교운영을 이렇게 많이 맡겨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방과후 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지적하신 아름다운 뭐 수식어에 대해서 그냥 정부에서 방과후 학교 이렇게 큰 정책으로는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시·도별로 그것을 좀더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느낌이 좋고 또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시·도별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 저희들 도도 나름대로 표현했는데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화점식 나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과후 학교라는 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또 자문을 받고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교육목표를 기술하다 보니까 백화점식 나열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실버스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목도 저희들 아까 설명드렸습지만 실버스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꼭 노인 분들만 고용하는 건 아니고 또 지금 여성분들이나 또 아름답게 표현하다 보니까 실버스타라고 했는데, 노인 분들도 좋고 여성분들 또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봉사를 하거나 하고 싶거나 또 재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다방면으로 여러 계층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찾아서 학교에 보내서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그 실버라는 건 나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시라는 말씀이군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연세드신 분들도 사실 역할이 있으시겠죠. 자원봉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드릴 수 있지만 주로 초등

학교 위주로 특기적성 형태의 방과후가 이루어질 거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과목 위주로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결국 특기적성 면에서 어떤 연세드신 분들이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시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 물론 한자라든지 예절이 있지만, 또 그것들에 대한 어떤 전달의 여러 가지 방식이라든지 아이들과 어떤 내포라든지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꼭 연세드신 분들에게 국한되지 않는 그야말로 은빛별처럼 반짝이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담회가 많이 있습니다. 양극화해소간담회, 여성인턴제간담회 해 가지고 프로그램개발비도 있지만 간담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위원회들도 데스크포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만든다 할 때 꼭 따라 가는 것들이 간담회비나 이런 것들이예요.

근데 물론 그런 어떤 역점사업 같은 경우들은 예산을 배분하기에 좀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간담회라는 게 주로 밥을 먹으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냥 뭐랄까 체계없이 그냥 흘러가는데 밥 먹는데 그냥 서로 인간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런 차원 이상의 어

떤 효과는 그다지 기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담회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줄이시면서 꼭 어떤 식사를 매개로 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서로 뭐랄까 진지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체제로써 약간 공적인 그런 관계로써 서로 돈독한 관계를 맺어 가시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조금 낭비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 부분에서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매우 경계합니다. 저는 제가 청주교육청이 지난 사교육비 경감 시범교육청으로 작년에 해 가지고 제가 경감방안에 대한 자료집을 2004년도입니다. 이걸 받아보기도 했는데 사실 학교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할 수 있느냐 우리 방과후가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것들은 너무나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 이만큼 해서 이만한 가시적인 그런 통계가 나왔다는 것들로 귀결이 되는 그런 자료집이라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기적성이면 특기적성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보충을 학교에서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열어놓는 그런 형태의 방과후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수치를 동원해 가지고 이것은 효과가 있다 그야말로 경감효과가 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태여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어쨌든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요새 흔히 말하는 선택과 집중 이런 차원으로 정리를 하시고 운영을 해 보시다 보면 어떤 것들이 더 여러 가지 노하우들도 이미 축적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고 예산을 할애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좀 뭐랄까 시야를 넓혀가시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어저께 제가 생노병사의 비밀을 보면서 느꼈던 겁니다.

서울에서 4개 지역보건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아동비만퇴치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것이 방과후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청주 같은 경우들은 비만들도 꽤 많은데 이런 아이들에 대한 비만퇴치프로그램을 방과후에 하면 아이들한테 실효성도 있고, 제가 보니

까 운동도 거기서 시키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을 모셔다가 식생활지도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교육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영양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배치된 분들이 학교로 가서 가지고 담임선생님 계신 가운데에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비만퇴치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학교교육에 침투하셔서 또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등산을 한다든지 가족들을 이끌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안내해 주고 이런 형태로 주5일제 형태로도 갈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연계성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 굉장히 실효성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지역에서야 또 어떻게 영양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청주나 이런 시 단위에서는 한번 지역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한번 해 보시는 것들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비정규직 영양사 인건비를 어느 과인가요, 중등교육과입니까 비정규직 영양사 인건비를 책정을 하셔 가지고 넣어 놓으셨는데요, 아 그건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보화과에서 인도네시아의 주지사를 초청하는 그런 내용, 이것들도 사실 여러 가지 쓸만한 컴퓨터를 모았다가 개발도상국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타 교육청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을 벤

치마킹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재정이 없다 하면서 왜 그런 시혜의 어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초청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여유가 많은 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우호적인 우리가 베푸니까 그것도 일종의 우호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니까 이후에도 우리들에게 우리도 초대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속에서 별 뭐랄까 여유 있지 않은 상태의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정보화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도국 정보화 지원은 교육부하고 국고 대 지방비 4 대 6의 매치펀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고 40%는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IT라든가 소프트웨어의 국제규격화 하는데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효과도 있고, 실례로 지금 나이스(NEIS) 프로그램을 수 십억의 수출상담이 개도국에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나이스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 모릅니

다. 그래서 이들을 불러서 이런 상황을 시연도 해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게 교육현장에 도입해야 되겠구나 하는 말하자면 IT분야에 대한 잠재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국가적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진옥경 위원**

글쎄요.

그것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시연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이어질 수 있는.....

●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

지금 교육부에서는 나이스프로그램을 수 십억원에 지금 태국하고 수출상담을 하고 있다고 요번 회의에 가서 들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것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고요, 지역교육청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

국고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도, 시·도 평가에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연수가 많다는 지적들을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으면 해외연수도 의

미가 있겠죠. 가서 많은 분들이 보고 오시는 것이 나쁘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예산이 많다면 그런 것들이 좋겠지만 적은 예산 중에 해외연수라는 것들은 사실은 삭감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고 또 많지 않고 사기진작의 차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단 한 번 교육위원이 되고 나서 외국에 나가봤더니 그런 어떤 역사적인 거리감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고 저는 절망하고 돌아왔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국외연수가 단지 눈요기 거리를 늘리거나 또 찬탄이나 하다가 오는 그런 형태라면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매우 떨어지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BTL사업이 있는데 아까 추가로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여전히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올해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많이

올라갔는데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요번에 여러 가지 올라왔습니다. 다 목적교실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오게 됐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된 어떤 이유도 있는지가 설명을 좀 일단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2005년도부터 처음 시행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어떤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학교를 신설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상당히 재정의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득이 하게 이런 BTL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어떤 재정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겠는데, 너무 어떤 학교 신설하거나 할 때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재정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다목적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교육위원회를 통과시켜주셔서 가지고 도의회까지 상정이 됐었는데, 도의회에서 어떤 지방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배제되는 부분

이 많다고 해 가지고 다목적교실을 관계는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소규모사업으로 이렇게 단위로 좁혀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침이 바뀌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채무를 지고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을 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최소화시켜서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글쎄요. 이제 아까 무슨 현가계수라는 그런 생소한 용어를 제가 설명을 듣고 20년 정도의 어떤 기간을 외부에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받아서 그 다음에 20년 그러니까 상환을 하는 형태로 교육청의 예산을 나누어내는 형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런 계수들이 의미있는 어떤 판단의 또 기준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지방사업자들이 다목적교실을 지었을 때의 액수와 그 다음에 이 BTL사업을 할 때의 어떤 액수가 차이가 많다면 이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저희들이 BTL사업, 대규모사업에도 지

방업체가 50% 가까이 꼭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40%였었는데.....

● 진옥경 위원

그런 업체들 참여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제까지 다목적교실을 지었을 때 업체들 통해서 지었을 때는 한 8억 정도 들었다면 BTL 물론 예측이지만 BTL은 한 3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 그런 액수로 지금 전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2005년도 1회 추경에 보면 1,110㎡ 사직초등학교에 10억 정도가 되겠는데요, 지금 요번 한솔초등학교의 1,110㎡의 13억 8,750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3억 정도이고 또 2005년도 1회 추경에 942㎡ 이원중학교가 8억 6,000정도 들었는데 그보다 못한 846㎡인 우암, 주덕초등학교 뭐 이런 데는 10억 5,000정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액수를 어떻게 책정하신 것이며 물론 가감이 있다고는 하지만 기존의 어떤 사업자들도 이윤을 분명히 남기면서 이것들을 사업을 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그 부분은 일단 BTL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 어떤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을 그 사업을 하게 되면 20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추가로 지불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자의 성격을 띤 그런 임대료를 추가해서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단년도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BTL을 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런 다목적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신축할 때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특별교부금이라든가 해서 국가부담을 해줬었는데 앞으로 이런 국가부담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악한 재정형편으로써는 다목적교실을 별도로 이렇게 재정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이자라든가 이런 걸 감내하면서도 추진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거의 3억 정도의 어떤 그런 차이가 나네요, 실질적으로.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거기에 보면 3억 정도 대부분이 거기에 포함되는 게 어떤.....

구체적인 사항은 시설과장님이 보충설

명 해드리겠습니다.

●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BTL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교실의 공사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존에 교부금으로 하던 사업보다는 조금 단가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부금으로 하던 사업은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책정해서 왔기 때문에 항시 부족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부담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가격이 좀 현실화됐고 그 부분에는 민간인이 설계까지 다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설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제시를 하고 기본설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마친 다음에 제안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좀 단가가 위에 올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200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이 그냥 적용이 되어 왔

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시설과장 안세열

예.

● 진옥경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왜냐하면 임대료하고 운영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합산해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시설과장 안세열

그렇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럴 때에 이 사업비들을 이렇게 책정하게 되는 것이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기존의 어떤 방식과 대비를 시켜 가지고 한 번 더 많은 삭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한 번 요구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시설과장 안세열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마냥 단가가 좀 2002년도에 비해서 현실화됐고 그 부분에 설계비나 감리비가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좀 올라간 것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보면은 이것을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목적 교실을 8억 내지 9억에서 했으면 1억 내지 2억을 꼭 추가로 부담을 해서 하게 됐

었습니다.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포함한다고 그러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 진옥경 위원

1억 내지 2억을 어떤 예산으로 충당했습니까?

● 시설과장 안세열

지금까지 다목적교실을 짓는다면 화장실이 됐던 편의시설이 됐던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증축을 못해서 추가로 증축하는 부분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 진옥경 위원

저도 그런 예를 한 2개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그렇지 않았죠.

● 시설과장 안세열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교부금 나오면 음성의 어느 학교라고 하면 음성군에서 2억을 댄다 2억을 보냈든지 3억을 보냈든지 아니면 옥천 같은 경우에 옥천군에서 또 보태고 전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진옥경 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현장감이 없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차이가 난다는 점 분명합니다.

● 시설과장 안세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 다음에 녹색학교가 있습니다. 1,500만원 정도 있고 또 정원조성 하는데 2,000만원 짜리 사업들도 있는데 이것들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녹색학교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세부계획들을 제가 미리 받아봤어야 되는데 저는 다만 물론 나무를 심는다든지 야생화를 넣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단재교육원의 어떤 예산 일부를 보니까 정원관리에 영향제,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항목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재교육원은 교사나 교장 선생님들이 외부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이런 것들이 좀 염려가 덜 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주로 연수를 받으시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는데, 아이들이 운동장에 가서 나가 놀 때 이 녹색학교를 지금 사업을 하고 물론 제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뒤따라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모초등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아주 뭐랄까 극도의 맹독성의 그런 제초제를 학교 화단에다가 뿌리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들을 만지거나 이럴 때 굉장히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녹색학교를 과연 이런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조성이나 이런 것들에 돈이 들어가겠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학교는 당초에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국고에서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 사업이 2005년도부터 지방으로 이양이 되어 가지고 지방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녹지학교 조성하는 이유는 학교구성원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녹지공간이라든가 휴식공간 그리고 어떤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긍정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맹독성 농약을 쓴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철저히 그렇게 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공문시행을 좀 해 주시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알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이거는 아이들이 제초를 실제로 손으로 하면 됩니다. 그것들을 틈틈이 번갈아서 하면 그렇게 저기 하지도 않을 테고 그것이 가꾸는 마음을 기르는데도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무슨 살충제나 이런 것들은 불가피해서 일요일이나 이런 때에 뿌리고 만다지만 제초제 같은 것들은 아주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고엽제 그런 저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유념해서 녹색 학교를 취지에 맞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 다음에 영동교육청 있는데 영동교육청 시설에 관사보수, 조경, 산책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느 정도나 저기 하기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지금 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부분에 대해서 영동교육청 관리과장이 왔는데요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동교육청 관리과장 김영구

안녕하십니까?

영동교육청 관리과장 김영구입니다.

시설비 1억 받은 것은 거기 2004년도에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로부터 실습지를 800평을 관리전환 받았습시다. 관리전환을 받았는데 거기에 석분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비가 오고 그러면 질퍽질퍽하고 또 민원인들이 요구할 때 불편함이 있어 갖고 그걸 갖다가 포장공사하고 그 옆에 담장을 헐어 가지고서 주민들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 진옥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의 홍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단설 전환하는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구추이를 볼 때 상당히 급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치원 원아들이 줄어들고 있고 또 사립유치원들이 어떤 반발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 속에서도 반드시 단설유치원을 각 시·군마다 하나씩은 반드시 짓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넉넉하다면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단설유치원을 하나씩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원아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단설유치원 설립이 필요한지 여부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주변의 찬반논란도 많이 있었고 또 원아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신설로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여러 장기간에 걸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홍광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단설로 전환하는 게 가장 현재로써는 타당하다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신설은 좀 너무 무리인 것 같고 지금 증설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특수학급을 하나 넣으면 사실은 한 학급정도를 늘리는 정도인데 12억 정도의 예산이 더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대비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유희실이라는 것이 다른 유치원들 단설유치원 보니까 강당겸 1실 정도를 지금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유희실이 기존에 있는데 하나를 더 추가하는 형태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른 청주시내 4개 유치원을 다 봐도 유희실이 그렇게 2개 정도 되는 데는 없는데 구태여 7,100여 만원 정도 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구체적인 시설내용에 대해서는 제천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윤기성

안녕하세요?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윤기성입니다.

저희들 제천에서 단설유치원을 설립 추진하면서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최대한도보다가 유아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받아 가지고 요번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청주시내 제가 비교분석은 안해봤겠지만 이왕 신설유치원 단설유치원이 필요하면 최소한의 이런 시설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 진옥경 위원

글쎄요. 저는 네 단설유치원 청주시를 보니까 유희실이 다 하나씩이더라고요, 근데 야외풀장이나 이런 것들이 청주에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런 거는 없죠?

●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윤기성

없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여튼 아래로부터 수렴된 어떤 의견이라면 그것도 존중해야 되겠죠.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타교실 4개가 더 증축이 되는데 이 기타교실 4개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윤기성**

기타교실은 급식하는데 1실하고 창고 0.5, 화장실 1실, 계단실 1실, 그렇게 해서 4실이 들어갔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단설유치원은 조리실이 있는데 여기는 조리실이 없습니까?

●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윤기성**

조리실은 홍광초등학교에서 조리를 해 가지고 운반해서 급식할 겁니다.

● **진옥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예산 효율성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고 있는데, 특히 전체적인 예산에서 보면 2006년도 예산편성매뉴얼에 보면 소모성 경비를 지양을 하고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인채물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 및 인쇄비 등은 최소의 소요액을 책정해야 하고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도 최소한 경비를 편성해

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여러 가지 영재교육시리즈 초등에서 만드는 단가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방과후 학교의 매뉴얼 여러 가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재정 효율화 추진 매뉴얼 기획관리과에 해당되는 것들도 만원씩이나 단가가 이렇게 해서 600부나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기본지침에 걸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어느 분이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 마는 향후에 이런 것들을 다시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어떤 매뉴얼에 충실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사업별로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출판물이라든가 간행물을 최소화 시켜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좀더 축소를 한다던가 이렇게 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 가지고 줄여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글쎄요. 제가 가장 아이러니컬한 어떤 제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재정 효율화 추진매뉴얼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만원단

가에 600부를 찍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저해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뉴얼 그거 외부인사들이 조금 가면은 안내는 좀 하지만 그렇게 좋은 아주 반질거리는 종이에다가 칼라로 그냥 너무나 하는데 많이 쓰는 것보다는 사실 교육의 질에 직접 투자하는 그런 방향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이런 주문들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잘 알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 다음에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들이 있는데 2006년도 예산편성 수립에서 협조 및 행정사항에 보면 인건비 등 기본경비 우선 편성이라는 것이 두 번째 항목으로 나와 있고, 세 번째로는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예산편성을 이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의 총무과 예산입니다. 비정규직 관리연수 교재를 하는데 5,000원 단가의 1,000부를 책정하셔서

500만원 또 비정규직 관리연수 감사수당에 90만원을 책정하고 계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이게 138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로 예산을 왜 들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교육감님을 뵈고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안성배 중등교육과장님께도 누차 말씀드렸고 또 기획관리국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에 각급 고등학교에 비정규직이 지금 처음에 애초에 국가에서 권장하는 일수, 단가 곱하기 일수에 일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현상들이 가끔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그것들이 문제가 되고 당사자들이 교육위원회에 오고 또 교육청 교육국장님을 찾아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단지 그런 어떤 예산편성 기본매뉴얼을 지켜라 인건비 우선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도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비정규직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할애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학교예산을 쓰도록 하라는 그런 권장공문 하나를 내려보내시면 그런 갈등이나 이러한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권을 침해하기 싫다 하는 의미에서 그것들을 결국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문제의 어느 학교는 지금 365일을 계약해야 되는데 345일 곱하기 단가 계약을 했고 또 다른 학교도 그 어떤 기

준에 못 미치는 그런 계약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비정규직의 인건비를 제가 지난번에 지역교육청 특색사업 보고할 때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의사과에 있는데 그 양식에 의거해서 지금 현황을 각급 학교의 현황을 쪽 자료로 저한테 일단 제출해 주시고,

또 도교육청하고 시·군교육청에도 지금 비정규직이 계시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금 계약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현황을 일단 자료로 주시고,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그 공문시행을 하면 이런 무슨 비정규직 관리연수 교재니 이런 것들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예산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지요?

총무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지금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자료양식은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건 의사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양식에 따라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비정규직이 저희들이 한 28개 직종이 됩니다. 3,600명 정도가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것이 영양사 같은 경우는 학교별보다 몇 명 둘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사, 조리보조원 학생 수에 따라서 학교급식법 관계법에 의해서 배치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제가 그 현황들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신건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교회계에서 나오는 그 회원들도 학급당 인원수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일수문제입니다. 일수문제는 예산체계상 학교 단위기 관별로 업무 추진하면서 2005년도 작년도까지는 인건비를 별도 관리해서 도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인건비를 별도로 목적교부금으로 산정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해서 상시적으로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으로다가 산출규칙을 명시하되 총액으로 주면서 임명권 자체는 학교장에게 전용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을 보시면 지금 사서

보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서보조도 현재 국가에서 내려온 것은 물론 영양사 하고 해서 365일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기준이지 단위학교의 표지공문에 보면 이것은 안에 불과하고 세부적인 것은 자체 기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어느 부분에 그런 말이 나오나요?

● 총무과장 신건환

교육부에서 내려온 학교회계관리지침에 표지공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 진옥경 위원

그 부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그리고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예산 들여 가지고 비정규직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런데 예산 쓰시지 마시고, 공문하나 내려가면 되는 일 아닙니까 이것들이 원칙이 있는 것이예요 어쨌든 뭉뚱그려 내려가던지 간에 그 사람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올해 갑자기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인해서 그런 생존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라고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

하시면 그것이 그냥 남의 일처럼 그렇게 한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예산편성매뉴얼 기본지침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인건비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사회 소외계층 우선 협조하라는 그런 매뉴얼은 그러면 어디에다 쓸 겁니까?

제가 기타 등등의 이야기는 이미 많이 들었고 그런 변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관리연수교재비 같은 것들을 아예 책정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같등을 안고 가십시오.

● 총무과장 신건환

변명이 아니고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 진옥경 위원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정규직에 대한 논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정규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학교측이라든가 또 그 당사자들이 피해가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추진을 해나가려고 저희들이 연수도 하고 그런 교재도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2월말이 계약만료일이고 제가 그전까지 한 2주일 정도를 계속해서 학교로 쫓아가고 또 여러분들께 전화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어디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는 데를 단 한 군데도 못 봤기 때문도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이 예산내역이 이런 것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진 위원님 아직 많이 남으셨습니까?

● 진옥경 위원

조금 남았습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2006년도 예산편성매뉴얼에 보면 신규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에 신규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계상금지라고 했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협의회에 관련해서 도 단위의 140만원 계상된 것은 올해 신규가 아닌가요?

학교운영지원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4페이지입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입니다.

그 140만원은 작년도 본예산에 작년도 보다 덜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작년에도 통과를 해서 세운 겁니다.

● 진옥경 위원

작년도에도 140만원이 있었습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7백.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매년 700만원씩 세웠었는데 금년도 본 예산에 80%만 세웠고 560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 당시예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을 80% 수준에서 이렇게 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번에 추가적으로 반영한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그 민간경상보조 중에 사설평생학습관 운영은 평체과 소관인데 사설평생학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겁니까?

사항별 설명서 124페이지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청주지역사회협의회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계속 사업입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계속이라는 것은 그 평생학습관만을 지정해서 계속 돕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평생학습관이 다른 것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제공과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글쎄 저는 아니 그 기관이 고정되어 있느냐 말썬이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고정되어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사설평생학습관 거기뿐입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한 군데입니다.

● 진옥경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는 단 한 군데라는 말씀입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예.

● 진옥경 위원

조사해보셨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조사된 걸로.....

● 진옥경 위원

사설이라 함은 무엇을 뜻합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민간단체

● 진옥경 위원

민간단체요?

민간단체 평생학습을 하는 기관들 여러 군데 있죠, 지역시민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한 군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편파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지정을 한 군데만 저희들이 해놓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그 사업을 그러니까 왜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느냐 말씀입니다. 기관이 한 군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 군데 조사를해보셨다 하시면서 어떻게 그 한 군데를 지칭하십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이상일

저기 진 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내용을 모르시면 다른 분이 대답을, 양해를 얻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 성빈모

평생교육담당 성빈모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습관 지정은 지역도서관 9개소

와 사설기관으로서는 청주시의 평생교육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설기관 한 군대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10개 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평생교육협의회라고요, 아까 지역사회 교육협의회.....

●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 성빈모
예, 지역사회협의회

● 진옥경 위원

그것이 어째 평생학습관이 그것뿐입니까?

●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 성빈모
사설은 그곳 한 군데만 지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공공도서관 9군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공공도서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설은 여러 개를 돌아가면서 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회피하시는 겁니까?

사설이 한 군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조사가 부족하시면 더 조사해 보시고 이후에 그런 형평성에 맞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면 되는 일 아닙니까?

●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 성빈모
필요한 것을 조사해서 더 추가로 확보해서 더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사단법인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님들께 100만원씩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각 지역교육청마다 100만원씩이 여비인가요?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어떤 용도를 예상하고 저기 하시는 건지요, 각 교육청별로 전부 있는데 교육장님들 여비로요, 어떤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여비규정이 금년 1월 12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전액을 다 반영을 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100만원씩만 추가로 반영을 해서 기본여비보다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원래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어야 하는 건가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평균 한 40% 가까이 올랐거든요.

● 진옥경 위원

40%면 제가 액수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지금 당초예산에 한 4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백5,60만원정

도 더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100만원만 반영을 요번에 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종합수련원에 사항별 설명서 235페이지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노클링이 됩니까, 5만원씩 40개 200만원인데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곽종수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곽종수입니다.

스노클링이라는 건 물대롱하고 물안경을 쓰고 5m내의 얕은 물에서 바다환경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관찰하고.

● 진옥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름을 이렇게 지었으니까 저는 눈하고 관계되는 건지 알았습니다.

●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곽종수

이게 제품명칭이 스노클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 위원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송대헌 위원님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대헌 위원

송대헌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집행청 관계관님들 수고가 참 많습니다.

또 맨 끝에 하다보니까 위원장도 남았지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고 해서 우선 가벼운 얘기부터 먼저 한 두 가지하고서, 오늘이 식목일이라 점심 먹고 청사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주변정리를 아주 아름답게 잘하고 있더군요, 뒤쪽에 개나리도 다 잘라버렸고 잔디도 복토하고 나무에 퇴비도 주고 오늘 아주 나무를 심는 건 참 무엇보다도 좋죠, 앞으로의 이 나무들이 자라면 교육청이 아름다워지거든요.

우리는 오늘 진지하게 나무는 못 심고 우리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옛그제 그저께죠, 지방교육개선특위 위원이라고 있는데 저희 마침 차례가 되어서 방문했는데 정문서부터 들어오다가 참 하나같이 우리 정문에 꽃이니 나무니 조경이 잘됐다고 이구동성으로 차를 먹으면

서 그 위원님들이 참 아름답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피부로 느끼지만 우리 교육청의 진입로라든가 기타 조경은 참으로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에게 여쭙보고 싶은 것은 나는 뭐 해외여행을 여러 번 연수여비 해외에서 나올 때 그 부분 동료 위원님이 많이 짊었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거기 일반직 관계도 혁신연구 해외여행이 있고 직무능력향상 혁신연수도 있는데, 그렇게 고생하는 우리 나무를 심는 기능직들을 어떻게 해외여행 하는 기회를 줘오면 우리 국장님이 그런 사업에도 기회가 된다면 많이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많이 고려해 주세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잘 알겠습니다.

연수를 할 때 반영을 해서 포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감사합니다.

또 요즘에 뭘니까 시대에 화두가 되어 있는 격차 해소 그런 차원에 그런 건 어디든지 사회적으로 있기 마련입니다마는 요즘 아주 그 부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고 열심히 해요 점심때도 봤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한번 가벼운 말씀 하나드렸고, 또 조금 전에 그런 건데 해외관계 또 요즘 좀 저만 들었는지 모르지만 바깥에서 이런 소리를 가끔 해요.

우리는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가벼운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 자신은 예산을 다루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학교에 쓸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는 학부형이나 일반 시민은 교육청은 돈이 너무 많아서 쓸 곳이 없어서 담을 뜯었다 거기다 다른 걸 심었다 폼다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다 아실 거예요.

주변을 다녀보신 분들은 주변에 요새 시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녹색으로 바꾸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담을 뜯어야 되잖아요 블록으로 쌓여있던 부분을 뜯어내고 그 다음에 나무심고 하잖아요 심어야 되니까, 어떤 데는 방음벽도 충북고등학교는 방음벽도 이렇게 했더라고, 이렇게 모르는 시민들은 충청북도교육청은 쓸 곳이 없어 가지고 그저 학교의 울타리를 뜯었다 또 지었다고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그럴싸한 얘기 같아요.

뭐 우리처럼 예산이 줄고 이렇게 어려운 줄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교육의 신뢰 측면에서 많이 홍보가 되어서 녹색사업 차원에서 이렇게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할 수 있

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하던지 교육신탁 풍토조성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가벼운 말씀 던지고서 다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나 125쪽에 교직원단체관리입니다. 교직원단체관리에 거기 125쪽 교원단체 사무실 확장 임차료 1억이 있습니다. 그 밑에 교원단체 기본시설 지원도 또 있고요, 이 부분이 지난번에 올라와서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잘 동의해서 도의회에 갔던 부분입니다. 도에서 삭감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로서는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들이예요. 집행청에서 요구를 했고 우리 지난번에 논의가 있었습니까마는 그래도 집행청에 필요하니까 올렸으니까 우리 통과시키자 해서 도로 갔었고 그것이 도에서는 삭감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요번에는 이걸 통과시키자 깎자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 있다가 계수조정 할 적에 의지를 말해 주세요. 절대로 그런 일없으면 통과시켜 줄테니까 저 도에 가서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통과시키라면 한 번 통과했던 것 두 번 통과 못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집행청에서 전교조 관계 등등해서 인심잃지 말고 위원님들이 알아서 결정하겠지 위원님들이 깎으면 깎고 이런 차원으로 자꾸 해마다 연례로 올라온다면

이건 소신있는 행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있다 계수조정 할 적에 소신있는 답변을 주면 저희들 위원님들은 한 번 통과했던 부분이니까 두 번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이 있으니까 잘 국장님 검토해 보시고 일단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51쪽에 보니까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 대회 운영비 한참 뜻을 생각했어요. 영재교육에다가 창의적 산출물에다가 대회운영비 산출물을 대회 운영비 그 속을 읽어서 사업목적이나 사업개요를 검토해 보니까, 영재교육원생에게 한해서 다 모든 학생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학교 영재교육원생에 한해서 교사 1명과 학생 5명 이내 학생이 공동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돈은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영재교육하는 걸로 봐서는 96만원 많은 건 아닌데 그런데 이런 타이틀하고 왜 영재교육원생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감이 안와요 그래서 조금 보충설명 간단히 해 주시죠.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입니다.

이 영재교육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11개 교육청에 57개 학급에서 지금 1,140명

이 영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영재교육이 우리 전국단위 행사로써 지난해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 대회가 1회째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이번 올해 제2회째가 되면서 저희가 도의 예선 또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이 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 송대헌 위원

근데 무슨 발명품 만들어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선생 한 분하고 연구생 다섯 분이 어떻게 뭐를 창의적 산출물이라는 게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우리 중등 과학분야에서 저희가 대상을 탔습니다. 전에 대제중학교 이쪽에서 했는데 예를 들면 지난해 우리 조상들이 집을 갖고서 이렇게 지붕을 짚으로 했을 때 이 집이 왜 우리 건강이나 이런 것에 미치는 이런 걸 갖다가 학생들이 계속 탐구하고 이렇게 한 내용을 내 갖고 저희가 대상을 탔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의적 산출물이라고 하면 영재교육원에 있는 학생들이 그 영재교육원 활동을 하면서 그때 어떤 탐구해야 될 아이템을 정해서 활동한 그 누적된 포트폴리오를 갖다 제출해서 상을.....

● 송대헌 위원

과학전람회나 이런 거랑 성격이 다른 거든군요.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예, 다릅니다.

● 송대헌 위원

그 대상을 영재교육원생으로 제안하는 이유도 선생님하고 해야 되니까, 그럼 전국대회 같은 겁니까?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있습니다,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 송대헌 위원

예산이 96만원인데 예산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충분해요?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작은 것 같으면 다음부터는 좀더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좋은 상을 탔다니까 좀더 지원해서 올해도 좋은 상을 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감사합니다.

● 송대헌 위원

알았어요.

제가 몰라서 그리고 중앙에도 용어를 그렇게 쓰니까, 우리 타이틀 마냥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중앙에서 대개 그렇습니다.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 대회 지난해가 제1회 이번이 제2회 이렇게 나갑니다.

● 송대헌 위원

말이, 용어가 어휘적으로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 어법적으로는 그게 안맞아요, 어법적으로는 지금 안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맞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렇게 있다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174쪽에 실고생 예비창업제 운영 32개교 실업학교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예산이 서 있는데, 중심학교가 있고 운영팀 지원이 있는데 요번 예산서를 보니까 중심학교 운영이나 운영팀 지원이나 중심학교는 3교이고 운영팀 지원은 32개교인데, 실업고 다 같이 교당 250만원 지원을 중심학교 내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3교를 중심학교를 더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중심학교가 됐던 운영팀 지원이 됐던 똑같이 250만원씩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중심학교는 어떤 일을 더하고 지원팀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입니다.

운영팀 지원은 운영하는 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예비창업팀에 대해서 지원비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중심학교 운영비는 농·공·상 계열별로 중심

학교에서 모여서 창업제 운영의 방향 또 어떤 개선방향이나 또는 요거에 대한 발표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농·공·상 모여서 각각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송대헌 위원

그러면 예산상 차이가 없이 같이.....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아닙니다.

지금 운영팀은 별도로 만약에 어느 학교 농업학교이면 청주농고가 예를 들어서 중심학교가 된다고 그러면 그 학교에 운영팀은 별도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심학교 운영은 그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농업계의 실고생 예비창업팀을 활성화해서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 송대헌 위원

산출내역에 보니까 250 곱하기 3교 7,500만원 아닙니까, 중심교가.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750만원입니다.

● 송대헌 위원

750만원, 그렇죠 750만원 그 다음에 운영팀 지원은 250에다가 20개교 5,000만원 같은 단가 아니에요?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예, 단가는 같습니다.

● 송대헌 위원

그런데 학교별로 들어가는 건 차이가

난다?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운영팀을 한 학교에 2팀이 될 수도 있고 농업계에서 청주농고에서 좋은 아이팀이 나오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좋은 팀이 나오면 그 팀에 청주농고에 2학교가 운영팀이 될 수 있고요, 중심학교는 그 농업계열의 팀들을 모아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또 연구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 송대헌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올리신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돼서 가볍게 여쭙보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3쪽에 충북교육사랑봉사단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쭙보는 건데 충북교육사랑봉사단 운영해서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사업내용에 청주·청원을 제외한 시·군 공공도서관, 그 다음에 삼락회, 문우회, 지역노인회 등을 통하여 지역별로 전문퇴직자를 발굴하여 전문분야별로 봉사활동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빛봉사단하고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입니다.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요.

● 송대헌 위원

그럼 비슷하다면 같이 논의를 해서 더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비슷하게 하고서 거기도 금빛봉사단도 봉사활동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들이 좀 조율이 되어서 금빛봉사단도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업내용도 비슷하게 같은 것 같아요, 거기도 봉사해서 도서관에 가서도 봉사도 하고 사방에 가서 봉사하더라고요, 그리고서 하루인가 점심 값인가 돈을 조금 지급하더라고요.

이것이 교육사랑봉사단이라는 것이 새로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금빛봉사단의 운영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해서, 만약에 비슷하다고 한다면 그걸 두 가지를 일원화시켜서 보다 체계적으로 결국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것이 더 효율이지 않겠는가 해서 여쭙보는 겁니다.

참고가 된다면 예산이 따로 서면 합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알았습니다.

● 송대헌 위원

금빛봉사단을 도서관에서 하더라고요, 같은 도서관에서 하나는 사랑의 봉사단이

고 하나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금빛평생봉사단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 충북교육사랑운원은 지역별로 충북교육사랑단을 결성해서 지역의 고령의 인적자원을 개발해서 평생교육서비스가 필요한.....

● 송대현 위원

알았어요.

비슷하다는 표현으로 충분합니다. 대충 보니까 비슷해요. 그런 부분은 하나 중앙에서 금빛봉사단은 전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충북에서 봉사를 더 잘해보자 해 가지고 아마 지역에 충북교육사랑봉사단을 또 하나 만든 것 같아서 제가 여쭙봤던 겁니다. 얼마든지 잘 합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70쪽 좀 봐주시죠. 단위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공모전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장기 발전계획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모전을 해서 10개교를 당첨이 되면 교당 50만원씩 포상금을 주겠다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뜻 하나 의심보다도 의문이가는 부분이 단위학교의 중장기 계획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도 중장기 프로그램이 있고 또 교육청에도 중장기 프로그램 있고 그런데 제가

좀 문외한인지는 몰라도 중장기 프로그램 쪽의 핵심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돼요, 5년 계획에 의해서 얼마나 예산이, 물론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얼마를 인풋(input)해 가지고 아웃풋(output)을 이렇게 하겠다 인풋해서 아웃풋을 해서 그것이 중장기 계획으로 딱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위학교에서 예산이라는 게 학교교육도 여기서 내려가는 건데 중장기 계획을 잘해서 1등을 했어요, 50만원 상금 포상했어요.

그러면 그 상금 타 가지고 포상 타 가지고 중장기 계획 잘된 건 잘된 것대로 1회용으로 써먹고, 야 그건 참 잘 됐으니까 당신들이 낸 거기에 계획세운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뒷받침해 주겠다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되어야 중장기 계획하고 맞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10개교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에 포상이 되면 예산도 거기에 우선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포함이 된 건가 그냥 대회는 대회대로 끝나는 건가 그걸 하나 여쭙보고 싶어요, 이 타이틀이 하도 좋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은 현재까지는 도교육

청 단위에서만 사뭇 해왔습니다. 요번에 처음 일선 학교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라 대신 공모전은 안한다 지역교육청하고 직속기관은 자체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고, 학교만 지금 우선 공모전을 추진해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물론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좋은 뜻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 송대헌 위원

검토를 하셨는데 좀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중장기 계획할 때는 플랜을 세울 때는 예산이 서 있지 않은 플랜은 공염불이예요.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예산관계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게 나는 지금 판단이 안와서, 참고하세요.

동료 위원들이 다 물어봤고요, 342쪽 저 끄트머리로 갑시다. 수영대회 참가하는데 보니까 여기 청주시장배마스터스 수영대회 참가 150명 지역주민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학생회관에 수영장이 있으니까 하는 것 같은데, 대개 체육하면 나는 또 평생체육과에서 다 체육하고 해외도 나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은 학생회관 사업이예요 보니까 그것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 학생회관 관리과장 김동호

학생회관 관리과장 김동호입니다.

제1회 마스터스 수영대회라고 해서 작년부터 시장배 수영대회가 있습니다. 각 수영장별로 대항입니다. 청주시는 현재 5개 수영장이 있고 내수에 1개소가 있는데 참가하는 선수들의 유니폼 및 그날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그게 없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홍보 면에서 상당히 저희 수영장의 홍보가 잘 되기 때문에 홍보 면에서 올해는 유니폼을 맞추어 갖고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다.

● 송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좋죠. 우리 충북학생수영장이 있으니까 홍보도 되고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수영종목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겁니까?

● 학생회관 관리과장 김동호

대회를 하는 겁니다. 배형, 평형, 접형, 자유형별로 전부다 각 종목별로 시합을 하는 겁니다.

● 송대헌 위원

이왕이면 가서 1등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 학생회관 관리과장 김동호

감사합니다.

● 송대헌 위원

가벼운 것, 우리 저기 국장님이 답변말

씀 하신 것 같은데 교육정책연구과제를 작년엔 17개 과제를 해서 했고 올해는 2개 과제인데 하나는 학력제고이고 하나는 또 뭐라고 하셨죠, 국장님?

두 가지 과제인데 하나는 학력제고이고 또 하나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하나는 학교혁신분야로.....

● 송대헌 위원

학교혁신, 2개의 과제를 설정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종조 뭐 대학교수 기타해서 공모를 한다고 했거든요, 공모를 하는데 단체나 개인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공모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 송대헌 위원

다해서 심사를 해서 되면 그 사람에게 1년간이든지 어느 기간을 줘서 여기에 대한 제안을 하도록 발전과제 제안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해서 우리가 지혜를 합치는 건 상당히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 부분이 공모해서 들어온 것은 공모한 대로 그냥 문서에 그치고 그것이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어 가지고 활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어야만 이 뜻이 돈을 투자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안합니다마는 지난해에 우리

17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실시했는데 그 자료를 공모해서 들어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저한테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내달라는 것이 아니고 시간 되시는 대로 제가 좀 어떤 내용들이 들어왔는지 또 그들의 내용이 어떻게 우리 교육시책에 발전이 됐는지 5월 달에 교육감님을 상대로 한 우리 행정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내가 질의할 항목이 거기서 나올 것인지 아닌지 볼 겸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또 자료 하나를 더 요구하겠습니다.

요새 양극화문제 이게 아마 혁신팀에서도 사실 고심하는 문제들이죠, 어느 사회든지 양극화는 있게 마련이고 곳곳에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또 저소득 차와 고소득 차 사이, 교육도 어떻게 교육의 문제가 양극화 또 논의가 되어서 요즈음 여러 가지 유아 3·4세 청주 같으면 빠지고 어려운 아이들이겠죠. 저소득층 아이의 무상지원, 3·4세 아이의 무상지원이라든가 또 급식비도 그렇고 토요일 공휴일 날도 다 주는 것이 아니죠 저소득층 자녀들을 우리가 급식비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저

소득층 아이들에게 우리가 지원하느라 게 이슈인데, 그래서 이 예산상으로 우리 금년도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시책적으로 도움을 주는 항목을 지금 바로 자료내시라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사방의 것을 여러 군데 숨어있어요 그 부분이 좀 뽑아서 저에게 주시면 또 이 부분은 혁신팀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저한테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곳곳에 숨어있는 부분을 잘 찾아보세요. 내가 봐도 몇 군데는 볼 수 있는데 이거 말고도 아마 더 있을 겁니다. 여기 예산서에 여기 표현된 주요사업계획 이것 외에도 분명히 본예산에 숨어있는 것도 있고 해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얼마 정도의 양극화에서 우리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충북교육청이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 자료를 하나 요구를 드리고 또 그것이 혹시 다음 번 행정질의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양극화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제 표현으로 하면 한끼의 식량이에

요 사실은 한끼식량 딱 주는 거고,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은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력을 높여서 정말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저소득층 잠깐 가려보면 우리 대도시 청주, 충주, 제천 그리고 나머지 촌, 촌의 사람들 지금 청주에 자녀들 보냈고 가난한 사람들만 촌에 남아서 노인들 가난한 자녀들만 지역학교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우리가 방학이 석 달이거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석 달입니다 이거 합치면 석 달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청주에 와 있는 사람, 충주에 와 있는 사람, 제천에 와 있는 사람은 학원도 많이 있고 또 학부모들이 수준이 높으니까 어디든지 보냅니다. 방학동안에 쉬지 않게 해요.

그런데 농촌의 몇 학급 자리, 3학급 자리 이런 아이들 어떻게 학원 갈래야 갈데 있습니까, 못 갑니다. 세 달 공치는 달이 돼요.

그러면 3개월이라고 학력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력의 양극화가 되고 가난이 세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극화문제를 논의할 적에는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나는 요전에 교육감님이 뵈을 때 그런 말씀드렸

어요. 교육감님 양극화문제는 우리 교육감님이 쓰는 돈이 재량사업비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아이들 학원선생을 불러다 쓰던 뭐 하던 거기 선생님들 가리킬 수 있는 돈 줘주고 아니면 쿠폰 줘 가지고 그 쿠폰 가지고 청주시내를 가던 충주를 가던 학원 다닐 수 있는 쿠폰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석 달이라고 하는 공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머리를 넣어줄 수 있는 양극화문제에 가난층 아이들을 어떻게 껴안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여기 아까 보니까 그런 우리 시책이 들어있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방과후 교육활동 쪽에서 그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것 있는데 이것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이 되는 방안 혁신팀에서는 아마 참고가 될까해서 조금 한 말씀 소견을 드려봤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오송중학교, 양청초, 양청중학교 수정발의도 하고 해 가지고 2008년 3월을 2009년 3월로 이렇게 한 사유를 쪽 보고를 받았 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문화재도 나오고 발주도 늦게 되고 등등해서 입주가 늦어지고 등등해서 했는데 이렇게 개교를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끼리는 다 이해가 가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는 두 가지 걱정이 돼요. 당초 학교가 설립될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걸 믿고서 택지를 분양받았던 사람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연계가 된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 단독주택 같은 것이 들어와서 막 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자녀에 대한 문제를 이게 연계되면서 우리가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할적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딱 되어서 오늘 올라와 가지고 의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예상되어서 그전서 부터 문화재 뭐가 나온다 하면 그전에 알았으니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미리 홍보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기가 늦어져서 여기 개교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게 있다 하는 걸 띄워줘야 돼요, 이게 열린 세상입니다.

그런 거 하나도 안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의회에다가 딱 내놓고 가결 땅땅 쳐놓고 이거 2009년입니다 하는 거 하고, 중간에 예견됐던 부분을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런 걸 해서 할 때는 우리 교육청으로써는 서비스거든요.

요즘은 교육이 서비스맨이에요, 저 사람들 우리한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안하면 질책받는 그런 시대가 됐잖

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자꾸 홍보할 것인가 하는 걸 좀 말씀해 주시죠.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먼저 오송단지에 설립계획인 오송중학교를 2008년 3월에서 1년간 뒤로 미루어서 2009년 3월에 변경하는 건, 지금 오송단지는 위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반시설 구축 중인데 기반시설이 늦어지면서 공동주택 들어오는 사업계획이 뒤로 미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워도 거기에 공동주택이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학생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준공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학교를 개교하고자 1년 늦춘 겁니다.

그리고 오창사업단지에 양청초, 양청중은 개인택지지구 내에 저희들이 학교용지 설정을 해놓은 건데 정확한 숫자는 이천이백 한 오십 세대입니다. 개인택지 분양된 게 근데 현재 지금 개인택지에 들어선 가구가 약 6.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학생이 초등학교 18명에 중학교 6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학생들은 중학교는 오창중학교로 다니고 초등학교는 각리초로 다닙니다마는 9월 1일자로 비봉초하고 각

리중이 개교가 되면 비봉초, 각리중으로 수용할 계획인데, 현재 저희들이 설립을 2008년도에 설립계획을 했는데 초등학교 설립해도 자원이 없습니다. 학생이 그래서 물론 개인택지 분양받은 분들은 학교 설립이 되려니 하고 받았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해서 2009년 3월 이후에 초등학교 설립을 하려고 했던 걸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해서 1년 늦춘 2009년 3월에 일단 초등학교는 개교하는 거로 수정을 한 겁니다. 지금 자원이 없습니다. 얼마 없습니다.

● 송대헌 위원

충분히 주신 자료를 봐서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세요.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그래서 청원군교육청에다가 입주자대표들 만나서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해달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 송대헌 위원

또 하나만 더 7차 교육과정에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이 있어요, 홈페이지 구축 1,000만원과 홈페이지 구축 서버 500만원이 들어있는데, 우리도 교육청 홈페이지가 있고 어떻게 7차 교육과정 운영에서 이렇게 별도의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한 것인가, 본 위원의 생각으

로는 연구원 쪽에 서버가 교육내용이 많
더라고요 연구원 쪽에 가서 그 서버 쪽에
뒤져보면 각급 학교의 연구발표에서 우수
됐던 부분 또 거기 연구교사들이나 연구
했던 우수논문, 연구시범 사례했던 것이
다 거기 서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
뒤져보면 모든 학습지도안까지도 다 들어
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같이 좀 해서 예산을 절감
할 수 없는 것인지 꼭 7차 교육과정 때문
에 이렇게 서버를 하고 홈페이지를 또 구
성하고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지어야만 7
차 교육과정이 잘 운영되는 건지, 7차 교
육과정에 몇 가지 물어볼 것이 많이 있는
데 수준별이니 선택별 교육과정문제 이
다음에 행정질문 때 물어보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왜 이렇게 별도 구
상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교육과정 홈페이지는 단위
학교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주5일 수
업제관련 체험학습장 개발보급, 학부모
교육자료 탑재보급을 통한 학부모 교육
등 7차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증진 및
연수장학자료의 정립 보급을 목적으로 하
고있습니다.

탑재할 자료의 형태는 HWP문서, PPT파
일, 그림자료, 동영상자료 등 그중 그림

자료와 동영상자료는 파일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서버에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의 용량이 큰 파일들
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일정 공간을 할당
하여 탑재할 경우 한꺼번에 많은 사용자
가 몰리면 전체 홈페이지에 부담이 가고
심하면 서버가 다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 홈페이지는 기존의 도
교육청 홈페이지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서
버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 서버와 홈페이지를 갖추으로써 교
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장학자료, 연수자
료, 학습자료 등을 개발 즉시 보급함으로
써 보다 신속하게 학교에 전달할 수 있으
며 개정 시 수시로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됨으로 책자나 CD를 제작하는 비용을 절
감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자료와 프로그램
공유, 체제 구축과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송대현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초점의 포
인트는 도에 있는 홈페이지다 하면 좋을
데지만 용량관계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7차 교육과정 운영
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을 잘 분석을 해보
세요. 과학교육연구원이 하는 업무역할을
잘 분석을 해보세요.

사실은 7차 교육과정은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그 밑에 하단계입니다. 그 아래 단계예요. 또 연구원 컴퓨터 거기 전문가들 많아 가지고 얼마나 서버니 운영이니 잘하는지 모릅니다. e-Learning에서 가정하고 통신도 하고 거기 평가문제 개발까지 다 개발해서 넣어놓고 있습니다. 훨씬 위에 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조금 하나 7차 교육과정이라는 걸 떼어 가지고 뭐 그림업데이트 그림업데이트 같은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왕에 우리 체계 시스템을 과학교육연수원이라는 시스템에서는 그런 정보를 다루고 그러한 쪽에 학력관계하고 평가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업무분장으로 해서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하나 더 붙여주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일원화 시켜서 능률적으로 하면 서로 연결이 돼요, 능률이 배가 됩니다.

이걸 손쉽게 우리 구축 하나 하지 뭐 하면 구축해 놓으면 구축만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거기 관리하고 거기다 자료 집어넣고 누가 또 합니까, 우리가 구축만 하고 서버만 하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자료 집어넣고 관리해야 되고 사람 따라야 되고 인력 따라야 되고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고 있는 부서가 홈페이지에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렇게 잘하고 있는 곳에다가 연계할 생각은 안하고 홈페이지 구축, 서버 구축 우리 예산 아껴써야죠 우리 국가 돈이 아니라 우리 주머니 돈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건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의상

예, 알겠습니다.

운영하면서 보완 점검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송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 송대헌 위원

예, 끝났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은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균형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또 시·군교육청별로 밸런스도 맞춰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게 조금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릴까 합니다.

실례로 보면 도서관설치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항별 설명자료 10페이지 보면 좋은 학교도

서관 만들기 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약 730억 원을 투자를 해서 도서관을 신축하고 리모델링해서 교육학습의 장을 넓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시·군별로 학교도서관 현대화 추진현황이 편차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지원비율을 보면 청주가 초등학교에 55.6, 충주가 35, 제천이 50, 청원 46 뭐 이라고 했는데 영동 같은 데는 78% 이렇게 보면 배이상 차가 납니다.

그 도서관은 어려서부터 책 읽는 역할이 소중한데 이런 편차를 가능하면 앞으로 줄여서 비슷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면 다음에 편성하실 때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 학교에 지역에 좀더 많은 도서관을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제천, 충주 거의 시 지역입니다. 근데 저 밑에 영동이나 보은 작은 지역에 2개, 2개 같이 넣다보면 밸런스가 안맞는 겁니다. 충주에는 초등학교만 38개입니다. 이런 편차가 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와 겹쳐서 분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충청북도교육위원이지 충주교육위원은 아닙니다.

그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06년도 시설사업현황을 보면 제1회 추경에 충주에 시설사업비가 3억 9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옆에 제천에는 32억 5,700입니다. 여기에 홍광초 유치원 12억을 빼도 훨씬 많습니다. 다른 쪽도 보면 8억, 9억 다 됩니다. 학교수가 3분의 1도 안 되는 곳에 어떻게 그런 시설비가 편차가 납니까?

그것도 다음에 한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시에 우선순위 결정하느라고 고심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또 시급, 완급조절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제가 3월 이후에 몇 개 학교에서 어려운 사정을 호소해서 가봤더니 화장실이 노후가 되어서 새고 또 변기를 사용할 수 없고, 이 화장실보수라든지 또는 건물이 도색이 된지 오래 돼서 아주 우중충해서 해줘야할 때가 상당히 많은데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이걸 못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쪽 보면 그렇게 급하지 않은 곳에 상당수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제가 어디라고 지적하지 않지만 교육청에 조경석 및 산책로 예산에 3,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교육청 많은 사람들이 와서 꽃피면 산책하는 것 그것도 소중한지요.

그러나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의 변기가 새고 물이 새는 게 더 소중합니까, 교육청에 산책로를 만들어서 꽃구경 오는 사람들이 잘 걸어다니게 하는 것이 소중합니까?

이런 쪽도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우선입니다. 교육이 우선입니다. 늘 적은 예산이라고만 탓할게 아니라 어떤 것이 급한 것인가를 좀 사정해서 딱 자르듯이 자르지 마시고 잘 검토해서 이런 것이 잘 배분이 되어 가지고, 작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좀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있으십니까, 하시죠.

진옥경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아까도 좀 궁금했는데 채 못 여쭙본 게 있습니다.

교사내환경위생측정기구 5종이 있는데 이거를 설치를 하셔서 측정하고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이신가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입니다.

12대를 사 가지고 지역교육청에 1대씩 배분해서 요것을 지역의 각 학교의 측정을 연 1회를 전부 해 줄 계획입니다.

● 진옥경 위원

측정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측정한 이후에 조치를 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미세 먼지가 많다고 하면 미세 먼지를 어떻게 줄이거나 또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같은 것들은 어떻게 줄이실 겁니까?

기구를 몇 억씩이나 지금 총 3억이나 되는데 그 이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 학교보건담당 함정기

학교보건담당 함정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관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가지고 2004년도 이후에 교육부에서 정책연구를 통해 가지고 작년도 3월 24일날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가지고 교사내 실내의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1월 14일날 보건법 시행규칙과 금년도에 1월 20일날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관리기준이 교육부령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매뉴얼이 교육부에서 개발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달이 되어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들이 기구를 구입해 가지고 일선학교 각 교실에 대한 측정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기준치에 오버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또 한번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정확한 측정치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아직 개선조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세 먼지라는 게 애들이 뛰고 저기 하면은 그렇게 하는데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가능한데, 외부환경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자재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차단할 겁니까?

● 평생교육체육과 학교보건담당 함정기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개선 조치로써 만약에 동절기 같은 경우에 실내환경을 측정해서 이산화탄소라든가 일산화탄소 같은 것이 만약에 발견된다고 그러면 환기를 할 수 있는 강제 통풍시설을 설치한다던가, 그 다음에 실내환경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것이 발견된

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슨 코팅조치를 한다던가 그런 새로운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있는 그대로를 수치를 그대로 하셔 가지고 거기에 조치를 정확하게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 학교보건담당 함정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해외연수 중에 전국체육대회 유공 해외연수에 해당하는 예산이 있는데 괄호하고 소년체육대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하고 합한 것입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네, 그렇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2005년도 유공자인지 아니면.....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2006년도 금년도 소년체전, 전국체전에서 혁혁한 공이 있는 사람만 해 주기 위해서 체육과가 전부 특기적성교육에 회피한 일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좀 사기 진작시켜 주자 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 위원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성영용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성영용

예산·결산소위원회 간사 성영용 교육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삭감내역입
니다. 사항별 설명서 95쪽 전교조 사무실
확장임차료 1억원 삭감, 교사내환경위생
측정기구 구입비로 계상된 3억원 중 사항
별 설명서 313쪽 청원교육청 2,500만원,

330쪽 보은교육청 2,500만원, 361쪽 영동
교육청 2,500만원, 379쪽 진천교육청
2,500만원, 397쪽 괴산중평교육청 2,500
만원, 433쪽 단양교육청 2,500만원 등 1
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억 5,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입 조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
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의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일

성영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영용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조정내용
과 같이 본 추경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된
사업비를 예비비에 편입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세입·세출예산 각각 1조
2,215억 2,408만 4,000원과 채무부담행위
액은 642억 651만 4,000원으로 의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에 응해 주
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90회-제2차 예·결산소위원회]

또한 추경예산안 편성부터 위원님들 질의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
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청관계 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상일, 간사 성영용,
위 원 김남훈, 송대헌, 이기수, 진옥경.

○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국장 박의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구명희,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총무과장 신건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서면답변서(별첨 2)

제19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예산·결산
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06. 4. .

위원장 이 상 일 李 相 一

(별첨1)

豫算·決算小委員會 議事日程(案)

第190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06. 4. 3. (월)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06. 4. 5. (수) 10:00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별첨2)

서 면 답 변 서

위원명	자 료 요 구 명
성 영 용	1. 충청북도교육과정위원회 구성원의 인적사항은? 2. 과학탐구·체험학습 지원중 학생수송 차량 800대에 대한 세부계획
김 남 훈	1. 수업스타 선진지 체험연수비의 산출내역은?
진 옥 경	1. 비정규직 인건비 편성, 임용일 현황 2. 교육부 학교회계제도지침 표지공문 복사본
송 대 현	1. 2005년도 교육정책 연구과제 추진 실적 2. 2006년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프로그램 자료

서면답변서

기관명 : 중등교육과

질의자 : 성영용 위원

○ 충청북도교육과정위원회 구성원의 인적사항은?

답변내용

○ 충청북도교육과정 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교육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으로 교육과학연구원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실업교육과장, 교육정보화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을 두며 대학교수, 교육전문직, 교장, 교감, 교사, 교육위원, 학부모위원으로 구성된 12명의 기타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구성원 중 내부위원을 제외한 외부위원 10명에게만 지급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교육과정 위원회는 구성원을 추천 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첨 부 : 2005년 충청북도교육과정 위원회 명단 1부. 끝.

충청북도교육과정 위원회 명단

충청북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안) 심의 위원

1. 위 원 장 : 부교육감
2. 부위원장 : 교육국장
3. 위 원 : 20명

구 분	위 원	비 고	
당 연 직	교육과학연구원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실업교육과장 교육정보화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	대 학 교 수	이병진(한국교원대학교) 박영무(청주교육대학교)	230-3586 017-344-6980 299-0800 02-599-7588
	교 육 전문직	오병천(초등교육과) 이광복(중등교육과)	290-1235 016-9298-8066 290-1326 011-481-0843
	교 장	김형수(단월초등학교) 송승필(진천상업고등학교)	851-5720 016-9630-5079 855-2981 011-9428-1039
	교 감	이해진(남평초등학교) 정용하(옥산중학교)	295-6472 011-9408-4463 260-0142 011-9841-9986
	교 사	강병효(금구초 병설유치원) 조성연(외국어고등학교)	536-7794 011-248-1248 235-2454 016-422-2286
	교 육 위 원	송대현(충청북도교육위원회)	290-1227 016-411-4422
	학부모 위 원	천문자(청주시 학교어머니회 회장)	288-9339 011-491-3333

예상질의

과학탐구·체험학습 지원 차량 임차료 배정 기준은?

【 답 변 】

○ 과학탐구·체험학습 지원 차량 임차료 배정 기준

- 과학테마교육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과학탐구·체험학습 지원 차량 임차료 배정 기준을 정하고 지역교육청에 재원 배분하였음
- 지역교육청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배정 기준 선정하여 임차료를 학교에 배분하는 사업임

※ 과학탐구·체험학습 지원 차량 임차료 기준

가. 학급 수에 따른 배정

학급수	학교수	차량배정 (대)	지원차량 합계(대)	대당 임차료(원)	계
12학급미만	194	1	194	250,000	48,500,000
12-17학급	31	2	62	250,000	15,500,000
18-23학급	32	3	96	250,000	24,000,000
24-47학급	97	4	388	250,000	97,000,000
48학급이상	12	5	60	250,000	15,000,000
계	366		800	250,000	200,000,000

나. 분교 학급 수는 본교에 포함

다. 초·중 통합학교는 초·중 합한 학급 수에 따라 초등학교에 분류

라. 국립은 제외 끝

작성자 직 : 과학교육담당장학관

성명 : 임 재 준

서면답변서

기관명 : 중등교육과

질 의 자 : 김남훈 위원

○ 수업★스타 선진지 체험연수여비의 산출 내역은?

답변내용

○ 「수업연구혁신 발표대회」를 통하여 선정된 ‘수업★스타’에게는 교육선진국의 교육과정 및 운영에 대한 정보수집과 선진 교수-학습방법의 체득을 통해 자긍심을 지니고 열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하게 함으로서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해 계상된 1,000만원(100만원×10명)은 해외연수(일본 4박 5일 기준)에 왕복교통비 및 현지 체류경비로써 1인당

- 왕복교통비 : 40만원
- 숙박비 : 5만원 × 4일 =20만원
- 식비 : 4만원 × 5일 =20만원
- 현지 교통비 : 20만원 등 총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위 경비는 잠정적으로 추정된 것으로 추후 ‘수업★스타’에 선정된 인원, 연수 장소·일정 등에 따라 1인당 필요 경비가 변동 될 수도 있습니다.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충북예술고등학교

(단위: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기준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인원)
		적용분봉	1호봉	연봉기준액(기준호봉*21*92%)		연봉기준액(연봉기준액*계약근로일수/365)	연차일수	연차보상비	특별근무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365	일반직	792,900	15,318,828	15,318,828	15	629,541	-	207,329	111,639	343,687	1,380,331	17,329,700	1	
사서	-	-	792,900	15,318,828	-	-	-	-	-	-	-	-	-	-	
사서보조원	-	가능직	710,700	13,730,724	-	-	-	-	-	-	-	-	-	-	
교무보조원	275	-	710,700	13,730,724	10,345,066	10	376,184	-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습보조원	-	-	710,700	13,730,724	-	-	-	-	-	-	-	-	-	-	
실습보조원	-	-	710,700	13,730,724	-	-	-	-	-	-	-	-	-	-	
유치원보조원	-	-	710,700	13,730,724	-	-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	710,700	13,730,724	-	-	-	-	-	-	-	-	-	-	
전산보조원	275	-	710,700	13,730,724	10,345,066	10	376,184	-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조리사	245	-	710,700	13,730,724	9,216,513	10	376,184	-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1	
조리보조원	245	-	710,700	13,730,724	9,216,513	10	376,184	-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3	
금속사무보조원	-	-	710,700	13,730,724	-	-	-	-	-	-	-	-	-	-	
사서	-	-	-	-	-	-	-	-	-	-	-	-	-	-	
사서보조원	-	-	-	-	-	-	-	-	-	-	-	-	-	-	
교무보조원	-	-	-	-	-	-	-	-	-	-	-	-	-	-	
실습보조원	-	-	-	-	-	-	-	-	-	-	-	-	-	-	
유치원보조원	-	-	-	-	-	-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	-	-	-	-	-	-	-	-	-	-	-	-	
전산보조원	-	-	-	-	-	-	-	-	-	-	-	-	-	-	
조리사	-	-	-	-	-	-	-	-	-	-	-	-	-	-	
조리보조원	-	-	-	-	-	-	-	-	-	-	-	-	-	-	
금속사무보조원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제약현황

학교명 : 충북체육고등학교

(단위:일수/일, 금액/천)

직종	계약근로자일수	연봉액			일할기존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직종 분류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호봉*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자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신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	일반직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교무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13,730,724	37,618	15	564,276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3	1	
실험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실습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유지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복수교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전신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조리사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13,730,724	37,618	15	564,276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3	1	
급식사부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화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상강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자 일수	연봉액			일할 기준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직종 분류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연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자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신재보험		
영양사	365	일반직	792,900	15,318,828	41,969	15	629,541		207,929	111,639	343,687	1,380,331	17,828,700	1
사서	-		792,900	15,318,828	41,969	-	-		-	-	-	-	-	
사서보조원	275	기능직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교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실험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습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유치원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전신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조리사	27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조리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2
급식사무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37,618	15	564,276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6	1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분리 작성 (엑셀화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흥덕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기초액	보수가산			금				합계	비고 (인원)
		직종별	1회봉	연봉기준액 (기준호봉*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인차 일수	인차 보상비	특별근로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신재보험		
영양사	365	일반직	792,900	15,318,828	41,969	629,541		717,677	207,329	111,639	343,687	1,380,331	17,328,700	1
사서	-		792,900	15,318,828	41,969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교무보조원	290		710,700	13,730,724	37,618	376,184		507,849	146,712	78,999	243,203	976,762	12,262,289	1
실황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실습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유지원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전산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조리사	290		710,700	13,730,724	37,618	376,184		507,849	146,712	78,999	243,203	976,762	12,262,289	1
조리보조원	265		710,700	13,730,724	37,618	376,184		465,528	134,486	72,415	222,936	895,365	11,240,431	9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점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서원고등학교

(단위: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 기준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적용 분봉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호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322	일반직	792,900	15,318,828	13,514,144	41,969	15	629,541		183,868	99,006	304,796	1,224,136	15,367,821	1
사서	245		792,900	15,318,828	10,282,501	41,969	10	419,694		139,129	74,915	230,632	926,275	11,628,470	1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교무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13,730,724	37,618	15	564,276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3	1
실습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실습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유치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전산보조원	245		710,700	13,730,724	9,216,513	37,618	10	376,184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1
조리사	322		710,700	13,730,724	12,113,132	37,618	15	564,276		164,806	88,742	273,196	1,097,230	13,774,638	1
조리보조원	322		710,700	13,730,724	12,113,132	37,618	15	564,276		164,806	88,742	273,196	1,097,230	13,774,638	9
급식사무보조원	322		710,700	13,730,724	12,113,132	37,618	15	564,276		164,806	88,742	273,196	1,097,230	13,774,638	1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충주고등학교

(단위: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기초액	보수가산			금					합계	비고 (인원)
		직영 분봉	1회봉	연봉기준액 (기준호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365	일반직	792,900	15,318,828	41,969	15	629,541		717,677	207,329	111,639	343,687	1,380,331	17,328,700	1
사서	365		792,900	15,318,828	41,969	15	629,541		717,677	207,329	111,639	343,687	1,380,331	17,328,700	1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교무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37,618	15	564,276		643,275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3	1
실험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37,618	15	564,276		643,275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3	1
실습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유치원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전산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조리사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조리보조원	28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499,385	144,267	77,682	239,150	960,483	12,057,917	16
급식사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화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주덕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기준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직종 분류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호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영양사	365	일반직	792,900	15,318,828	41,969	15	629,541		207,329	111,639	343,687	1,360,331	17,328,700	1
사서	-		792,900	15,318,828	41,969	-	-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
교무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용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
실습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
유치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
전산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
조리사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
조리보조원	24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3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
사서	-		-	-	-	-	-	-	-	-	-	-	-	-
사서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재척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자 일수	연봉액			일할 기준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직종 분류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호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자 수/365)	인차 일수	인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365	일반직	792,900	15,318,828	15,318,828	41,969	15	629,541	717,677	207,329	111,639	343,687	1,380,331	17,328,700	1
사서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보조원	365	기능직	710,700	13,730,724	13,730,724	37,618	15	564,276	643,275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3	1
교무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13,730,724	37,618	15	564,276	643,275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3	1
실험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실습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유치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전산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사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보조원	322		710,700	13,730,724	12,113,132	37,618	15	564,276	570,483	164,806	88,742	273,198	1,097,230	13,774,638	10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충북과학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기 기준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직종 분류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호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신재보험		
영양사	-	일반직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사서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교무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실형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13,730,724	37,618	15	564,276	643,275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3
실습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유치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전산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조리사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조리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오창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천)

직종	계약근로자 일수	인봉액			일할 기준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호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365	792,900	15,318,828	15,318,828	41,969	629,541	-	717,677	207,329	111,639	343,687	1,380,331	17,328,700	1
사서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13,730,724	37,618	564,276	-	643,275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3	1
교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실형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실습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유치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복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전산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사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보조원	245	710,700	13,730,724	9,216,513	37,618	376,184	-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9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우천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기초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적용 분봉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호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365	일반직	792,900	15,318,828	15,318,828	41,969	629,541	-	717,677	207,329	111,639	343,667	1,380,331	17,323,700	1
사서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보조원	275	가능직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376,184	-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교무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13,730,724	37,618	564,276	-	643,275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3	1
실형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376,184	-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습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유치원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전산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사	245		710,700	13,730,724	9,216,513	37,618	376,184	-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1
조리보조원	245		710,700	13,730,724	9,216,513	37,618	376,184	-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9
급식사무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376,184	-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백셀화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단위: 일수/일, 금액/원)

학교명 : 청산고등학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액 기준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호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신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365	792,900	15,318,828	15,318,828	41,969	15	629,541	717,677	207,329	111,639	343,687	1,380,331	17,328,700	1
사서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교무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형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실습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유치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전산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사	245	710,700	13,730,724	9,216,513	37,618	10	376,184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1
조리보조원	245	710,700	13,730,724	9,216,513	37,618	10	376,184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1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점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영동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월할 기준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직종 분류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승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영양사	365	일반직	792,900	15,318,828	41,969	15	629,541		207,329	111,639	343,687	1,380,331	17,329,700	1
사서	-		792,900	15,318,828	41,969	-	-		-	-	-	-	-	-
사서보조원	365	기능직	710,700	13,730,724	37,618	15	564,276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3	1
교무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37,618	15	564,276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3	1
실용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습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		-	-	-	-	-	
유치원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		-	-	-	-	-	
특수교육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		-	-	-	-	-	
진산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		-	-	-	-	-	
조리사	27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조리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6
급식사무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37,618	15	564,276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3	1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단위: 일수/일, 금액/원)

학교명 : 황간고등학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보수가산			금				합계	비고 (인원)
		1호봉	연봉기준액 (기초연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일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로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365	792,900	15,318,828	15,318,828	15	629,541	717,677	207,329	111,639	343,687	1,380,331	17,328,700	1
사서	-	792,900	15,318,828	-	-	-	-	-	-	-	-	-	-
사서보조원	-	710,700	13,730,724	-	-	-	-	-	-	-	-	-	-
교무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형보조원		710,700	13,730,724	-	-	-	-	-	-	-	-	-	-
실습보조원		710,700	13,730,724	-	-	-	-	-	-	-	-	-	-
유치원보조원		710,700	13,730,724	-	-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	-	-	-	-	-	-	-	-	-
전산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조리사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조리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2
급식사무보조원		710,700	13,730,724	-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진천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 근로 일수	연봉액			일 활 기 준 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 계	비고 (인원)	
		적용 본봉	1호봉 (기준호봉 *21*92%)	연봉기준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신재보험	건강보험			소 계
영양사	365	일반기	792,900	15,318,828	41,969	15	629,541		717,677	207,329	111,639	343,687	1,380,331	17,328,700	1
사서	-		792,900	15,318,828	41,969	-	-	-	-	-	-	-	-	-	-
사서보조원	365	기봉직	710,700	13,730,724	37,618	15	564,276		643,275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6,532,233	1
교무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습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	-
실습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유치원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	-
전산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	-
조리사	28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499,385	144,267	77,682	239,150	960,483	12,057,917	1
조리보조원	28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499,385	144,267	77,682	239,150	960,483	12,057,917	5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단위: 일수/일, 금액/원)

학교명 : 광혜원고등학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기초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인원)	
		직종분봉	1호봉	연봉기준액(기본호봉*21*92%)		연봉액(연봉기준액*계약근로일수/365)	인차일수	인차보상비	특별근무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365	일반직	792,900	15,318,828	15,318,828	41,969	15	629,541	717,677	207,329	111,639	343,687	1,380,331	17,328,700	1
사서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교무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형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실습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유치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전산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조리사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6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교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피산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기준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연봉*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계약근로일수/365)		연차일수	연차보상비	특별근무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소계		
영양사	365	792,900	15,318,828	15,318,828	41,969	15	629,541	-	717,677	207,329	111,639	343,687	1,380,331	17,328,700	1
사서			-	-	-		-	-	-	-	-	-	-	-	-
사서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교무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용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실습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유치원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전산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사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조리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4
급식사무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목포고등학교

(단위 :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 기준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직종 분류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호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신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	일반직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사서					-	-	-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교무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원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실습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유치원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진신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조리사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조리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2
급식사무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익셀화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음성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기초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1호봉	연봉기준액 (기초연봉*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365	792,900	15,318,828	15,318,828	41,989	629,541	717,677	207,329	111,639	343,687	1,380,331	17,328,700	1	
사서	-	792,900	15,318,828	-	41,989	-	-	-	-	-	-	-	-	
사서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13,730,724	37,618	564,276	643,275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3	1	
교무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실습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유치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전신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조리사	289	710,700	13,730,724	10,871,724	37,618	376,184	506,156	146,223	78,735	242,392	973,506	12,221,415	1	
조리보조원	289	710,700	13,730,724	10,871,724	37,618	376,184	506,156	146,223	78,735	242,392	973,506	12,221,415	8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단양고등학교

(단위: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자 일수	연봉액			보수가산			금				합계	비고 (인원)		
		직용 분봉	1호봉	연봉기준액 (기초호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자 수/365)	일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신재보험			건강보험	소계
영양사	365	일반직	792,900	15,318,828	15,318,828	15	629,541		717,677	207,329	111,639	343,687	1,380,331	17,328,700	1
사서	365		792,900	15,318,828	15,318,828	15	629,541		717,677	207,329	111,639	343,687	1,380,331	17,328,700	1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	-	-	-	-	-	-	-	-	-	-
교무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험보조원			710,700	13,730,724	-	-	-	-	-	-	-	-	-	-	-
실습보조원			710,700	13,730,724	-	-	-	-	-	-	-	-	-	-	-
유지원보조원			710,700	13,730,724	-	-	-	-	-	-	-	-	-	-	-
복수교과목보조원	-		710,700	13,730,724	-	-	-	-	-	-	-	-	-	-	-
전산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조리사	-		710,700	13,730,724	-	-	-	-	-	-	-	-	-	-	-
조리보조원	245		710,700	13,730,724	9,216,513	10	376,184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5
급식사무보조원			710,700	13,730,7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청주여자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기초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직종 분봉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승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영양사	365	일반직	792,900	15,318,828	15,318,828	15	629,541		207,329	111,639	343,687	1,380,331	17,328,700	1
사서	245		792,900	15,318,828	10,282,501	10	419,894		139,129	74,915	230,632	926,275	11,628,470	1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	-	-		-	-	-	-	-	
교무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13,730,724	15	564,276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3	1
실용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10	376,184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습보조원			710,700	13,730,724	-		-		-	-	-	-	-	
유치원보조원			710,700	13,730,724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	-	-		-	-	-	-	-	
진산보조원	-		710,700	13,730,724	-	-	-		-	-	-	-	-	
조리사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10	376,184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조리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10	376,184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0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중앙여자고등학교

(단위: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자 일수	연봉액			일할 기준액	보수가산			부영금				합계	비고 (인원)	
		직영 분봉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호봉 *21*92%)		연봉기준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자 수/365)	연차 보상비	특별근로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신재보험	건강보험			소계
영양사	-	일반직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교무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13,730,724	37,618	15	564,276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3	1	
실험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13,730,724	37,618	15	564,276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3	1	
실습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유지면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복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전신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사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급식사(후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충주여자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 기준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직종 분류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호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신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365	일반직	792,900	15,318,828	41,969	15	629,541	-	717,677	207,329	111,639	343,687	1,380,331	17,328,700	1
사서	-		792,900	15,318,828	41,969	-	-	-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	-
교무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형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습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유치원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	
진산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	
조리사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	
조리보조원	280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	490,920	141,821	76,365	236,096	944,204	11,653,546	16
급식사무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37,618	15	564,276	-	643,275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52,233	1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예성여자고등학교

(단위:일수/일, 금액/천)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기초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직종별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봉*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로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	일반직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교무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험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습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유치원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전신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조리사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세천여자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기초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직용 분봉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총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365	일반직	792,900	15,318,828	41,969	15	629,541		717,677	207,329	111,639	343,687	1,360,331	17,328,700	1
사서	-		792,900	15,318,828	41,969	-	-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
교무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37,618	15	564,276		643,275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3	1
실용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습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유치원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
전산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
조리사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
조리보조원	292		710,700	13,730,724	37,618	15	564,276		519,698	150,135	80,842	248,878	999,553	12,546,409	10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보은여자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기준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직종별 연봉	1회봉	연봉기준액 (기준호봉 *21*92%)		연봉기준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일자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365	일반직	792,900	15,318,828	41,969	15	629,541		717,677	207,329	111,639	343,667	1,360,331	17,325,700	1
사서	-		792,900	15,318,828	41,969	-	-		-	-	-	-	-	-	
사서보조원	365	기능직	710,700	13,730,724	37,618	15	564,276		643,275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3	1
교무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37,618	15	564,276		643,275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3	1
실황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실습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유치원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복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전산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조리사	27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조리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6
급식사무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새광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천)

직종	계약근로자 일수	연봉액			일할 기준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1호봉	연봉기준액 (기초호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365	792,900	15,318,828	15,318,828	41,989	629,541	717,677	207,329	111,639	343,687	1,380,331	17,328,700	1	
사서	-	792,900	15,318,828	-	41,989	-	-	-	-	-	-	-	-	
사서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교무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습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습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유치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전산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조리사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564,276	490,920	141,821	76,365	235,096	944,204	11,853,546	1	
조리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7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작성요령 : 식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우호고등학교

(단위: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 기준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직용 분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총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신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365	일반직	792,900	15,318,828	41,969	15	629,541		717,677	207,329	111,639	343,687	1,380,331	17,528,700	1
사서	-		792,900	15,318,828	41,969	-	-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
교무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습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37,618	15	564,276		643,275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83	1
실습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유치원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복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
전신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
조리사	24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1
조리보조원	24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8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화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충원고등학교

(단위: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자 일수	연봉액			일할 기준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호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자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로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신재보험	건강보험			소계
영양사	-	일반직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교무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황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실습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유지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전산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조리사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화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보은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 기준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작성 분봉	1호봉	연봉기준액 (기초월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모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신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	일반직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교무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형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실습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유치원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전산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사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급식사무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화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형석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인봉액			일할기준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인원)	
		적용분봉	1호봉	인봉기준액 (기준호봉*21*92%)		연봉기준액 (연봉기준액*계약근로일수/365)	연차일수	연차보상비	특별근무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365	일반직	792,900	15,318,828	41,969	15	629,541		717,677	207,329	111,639	343,687	1,360,331	17,328,700	1
사서															
사서보조원	-	가능직	710,700	13,730,724	37,618	-									
교무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37,618	15	564,276		643,275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3	1
실습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실습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유치원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전산보조원	320		710,700	13,730,724	37,618	15	564,276		567,098	163,828	88,215	271,577	1,090,718	13,692,889	1
조리사	24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1
조리보조원	24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6
급식사무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패피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자 일수	연봉액			보수가산	금					합계	비고 (인원)				
		직영 본봉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호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자 수/365)	일할 기준액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365	일반직	792,900	15,318,828	15,318,828	41,969	15	629,541		717,677	207,329	111,639	343,687	1,380,331	17,526,700	1
사서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교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실형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실습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유치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전산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13,730,724	37,618	15	564,276		643,275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3	1
조리사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조리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13,730,724	37,618	15	564,276		643,275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3	9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화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충북여자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 기준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호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소계		
영양사	365	792,900	15,318,828	15,318,828	41,969	15	629,541	717,677	207,329	111,639	343,667	1,380,331	17,325,700	1	
사서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교무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생활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실습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유치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전산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사	245	710,700	13,730,724	9,216,513	37,618	10	376,184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1	
조리보조원	245	710,700	13,730,724	9,216,513	37,618	10	376,184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12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양양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기존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호봉*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계약근로일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신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365	792,900	15,318,828	15,318,828	41,969	15	629,541	717,677	207,329	111,639	343,687	1,390,331	17,326,700	1
사서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교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실황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실습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유치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전산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조리사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보조원	245	710,700	13,730,724	9,216,513	37,618	10	376,184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4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청주농업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 기준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적용 분봉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호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	일반직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교무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13,730,724	37,618	15	564,276	185,885	100,065	308,057	1,237,232	15,582,233	1	
실용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실습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유치원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전산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사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보조원	245		710,700	13,730,724	9,216,513	37,618	10	376,184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6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확고별로 별지 작성 (엑셀화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제약현황

학교명 : 충주농업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자 일수	연봉액			일할 기준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직종 분류	1호봉	연봉기준액 (기초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365	일반직	792,900	15,318,828	41,969	15	629,541		717,677	207,329	111,639	343,687	1,380,331	17,328,700	1
사서	-		792,900	15,318,828	41,969	-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교무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험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습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유치원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특수교육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전산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조리사	24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1
조리보조원	24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4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제약현황

학교명 : 제천농업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기초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직종별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종별 *21*92%)		연봉기준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신재보험		
영양사	365	일반직	792,900	15,318,828	41,969	15	629,541		207,329	111,639	343,687	1,380,331	17,328,700	1
사서	-		792,900	15,318,828	41,969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교무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실습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유치원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특수교육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전산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조리사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조리보조원	24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4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청주기체공업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기준액	보수가산		금				합계	비고 (인원)	
		1호봉	연봉기준액 (기존호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연차 보상비	특별근로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신제보험	건강보험			소계
영양사	-	일반직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사서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교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실험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실습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유치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전산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조리사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조리보조원	245		710,700	13,730,724	9,216,513	37,618	10	376,184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음악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충북공업고등학교

(단위: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기초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직종 분류	1회 봉급	연봉기준액 (기준총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로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	일반직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교무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험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실습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유치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전산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조리사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보조원	245		710,700	13,730,724	9,216,513	37,618	10	376,184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7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천산기계고등학교

(단위: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자 일수	연봉액			일할 기준액	보수가산			파급금				합계	비고 (인원)	
		직종별 평균	1호봉	연봉기준액 (기초연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자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신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	일반직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교무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13,730,724	37,618	15	564,276	643,275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3	1
실험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실습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유치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전신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사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화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충주공업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 근로 일수	연 봉 액			보 수 가 산			부 당 금				합 계	비고 (인원)		
		직용 분봉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총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일 할 기 준 액	연 차 일 수	연 차 보 상 비	특 별 근 무 수 당	국 민 연 금	고 용 보 험			산 재 보 험	건 강 보 험
영양사	365	일반직	792,900	15,318,828	15,318,828	41,969	15	629,541	717,677	207,329	111,639	343,687	1,380,331	17,328,700	1
사서	-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교무보조원	275	-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용보조원	-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실습보조원	-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유차원보조원	-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전산보조원	275	-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조리사	-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보조원	245	-	710,700	13,730,724	9,216,513	37,618	10	376,184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6
급식사무보조원	-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채천산업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자 일수	연봉액			월할기준액	보수가산			과입금				합계	비고 (인원)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호봉 *21*8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자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325	792,900	15,318,828	13,640,082	41,969	15	629,541	842,132	185,505	99,887	307,510	1,235,033	15,504,626	1
사서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교무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13,730,724	37,618	15	564,276	643,275	185,86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83	1
실습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실습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유치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진산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사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보조원	215	710,700	13,730,724	8,087,961	37,618	10	376,184	380,887	110,034	59,249	182,402	732,572	9,196,717	3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분리 작성 (엑셀화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채천디지털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기초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적용분봉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호봉*21*92%)		연봉기준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275	일반직	792,900	15,318,828	11,541,583	41,969	419,694	-	538,257	155,497	83,729	257,766	1,035,248	12,966,525	1
사서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교무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13,730,724	37,618	564,276	15	643,275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3	1
실용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심습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유치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전산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376,184	10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6,174	1
조리사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조리보조원	245		710,700	13,730,724	9,216,513	37,618	376,184	10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4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부강공업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자 일수	연봉액				보수가산			파급				합계	비고 (인원)	
		직영 분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호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자 수/365)	일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신재보험	건강보험			소계
영양사	-	일반직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교무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험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실험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유치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전산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조리사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분리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미원공업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자 일수	연봉액			일할 기준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호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자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소계		
영양사	365	792,900	15,318,828	15,318,828	41,969	15	629,541	717,677	207,329	111,639	343,667	1,380,331	17,328,700	1	
사서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교무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13,730,724	37,618	15	564,276	643,275	185,86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3	1	
실황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실습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유치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전산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사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보조원	245	710,700	13,730,724	9,216,513	37,618	10	376,184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4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증평공업고등학교

(단위: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적용 분봉	1호봉	연봉기준액 (기초연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일할 기준액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영양사	365	일반직	792,900	15,318,828	15,318,828	41,969	629,541	717,677	207,329	111,639	343,687	1,380,331	17,328,700	1
사서				-	-	-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13,730,724	37,618	-	-	-	-	-	-	-	
교무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13,730,724	37,618	564,276	643,275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3	1
실형보조원			710,700	13,730,724	13,730,724	37,618	-	-	-	-	-	-	-	
실습보조원			710,700	13,730,724	13,730,724	37,618	-	-	-	-	-	-	-	
유치원보조원			710,700	13,730,724	13,730,724	37,618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13,730,724	37,618	376,184	16,928	4,890	2,633	8,107	32,559	408,743	
전산보조원			710,700	13,730,724	13,730,724	37,618	-	-	-	-	-	-	-	
조리사	245		710,700	13,730,724	9,216,513	37,618	376,184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1
조리보조원	245		710,700	13,730,724	9,216,513	37,618	376,184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5
급식사무보조원			710,700	13,730,724	13,730,724	37,6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음왕공업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기초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직종 분봉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호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365	일반직	792,900	15,318,828	41,969	15	629,541		717,677	207,329	111,639	343,687	1,380,331	17,328,700	1
사서	-		792,900	15,318,828	41,969	-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교무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습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실습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유치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전산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조리사	24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1
조리보조원	24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2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단양공업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월할기준액	보수가산			파급				합계	비고 (인원)	
		직종분봉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호봉*21*92%)		연봉기준액* (인원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인차 일수	인차 보상비	특별근로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신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	일반직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교무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13,730,724	37,618	15	564,276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93	1	
실황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실습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유지엔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복수교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전산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조리사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급식사무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보은자영고등학교

(단위: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 기준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작성 분류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연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영양사	-	일반직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사서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교무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실험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실습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유치원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전산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조리사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조리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급식사무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보수가산			파급금				합계	비고 (인원)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호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365	792,900	15,318,828	15,318,828	15	629,541	717,677	207,329	111,639	343,687	1,380,331	17,328,700	1
사서	-	792,900	15,318,828	-	-	-	-	-	-	-	-	-	-
사서보조원	-	710,700	13,730,724	-	-	-	-	-	-	-	-	-	-
교무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험보조원	-	710,700	13,730,724	-	-	-	-	-	-	-	-	-	-
실습보조원	-	710,700	13,730,724	-	-	-	-	-	-	-	-	-	-
유치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	-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	-	-	-	-	-	-	-	-	-
전산보조원	-	710,700	13,730,724	-	-	-	-	-	-	-	-	-	-
조리사	-	710,700	13,730,724	-	-	-	-	-	-	-	-	-	-
조리보조원	245	710,700	13,730,724	9,216,513	10	376,184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2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화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진천농공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기초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직용분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승봉*21*92%)		연봉기준액* (연봉기준액*계약근로일수/365)	연차일수	연차보상비	특별근무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365	일반직	792,900	15,318,828	41,969	15	629,541		717,677	207,329	111,639	343,687	1,380,331	17,328,700	1
사서	-		792,900	15,318,828	41,969	-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교무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험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실습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유치원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전산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조리사	24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1
조리보조원	24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3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충북인터넷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 기준액	보수개산			파급금				합계	비고 (인원)	
		직종 분류	1호 봉급	연봉기준액 (기준봉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로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	일반직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교무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13,730,724	37,618	15	564,276	643,275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3	1
실험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실습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유치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간선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13,730,724	37,618	15	564,276	643,275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3	1
조리사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제천상업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월할액 기준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적용 분봉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호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365	일반직	792,900	15,318,828	41,969	15	629,541		207,329	111,639	343,687	1,380,331	17,328,700	1	
사서	-		792,900	15,318,828	41,969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교무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37,618	15	564,276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3	1	
실참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실습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		-	-	-	-	-		
유치원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전산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37,618	15	564,276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3	1	
조리사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조리보조원	24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7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보은정보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기초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인원)	
		적용분봉	1호봉	연봉기준액 (기초연봉*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계약근로일수/365)	연차일수	연차보상비	특별근무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365	일반직	792,900	15,318,828	41,969	15	629,541		717,677	207,329	111,639	343,687	1,380,331	17,328,700	1
사서	-		792,900	15,318,828	41,969	-	-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
교무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37,618	15	564,276		643,275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63	1
생활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실습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유치원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
전산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조리사	-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
조리보조원	245		710,700	13,730,724	37,618	10	376,184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2
급식사무보조원			710,700	13,730,724	37,6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우천상업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기준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1호봉	연봉기준액 (기초호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365	792,900	15,318,828	15,318,828	41,969	15	629,541		207,329	111,639	343,887	1,380,331	17,328,700	1
사서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교무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13,730,724	37,618	15	564,276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3	1
실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실습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유치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진산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조리사	245	710,700	13,730,724	9,216,513	37,618	10	376,184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1
조리보조원	245	710,700	13,730,724	9,216,513	37,618	10	376,184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4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점규직 계약현황

(단위: 일수/일, 금액/원)

학교명 : 학산정보고등학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기초액	보수가산			파입금				합계	비고 (인원)	
		직종 분류	1호봉	연봉기준액 (기본호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	일반직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사서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교무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상황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실습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유치원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전산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조리사	245		710,700	13,730,724	9,216,513	37,618	10	376,184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1
조리보조원	245		710,700	13,730,724	9,216,513	37,618	10	376,184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1
금식사무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진천상업고등학교

(단위 :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 기준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총액*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계약근로일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365	792,900	15,318,828	15,318,828	41,969	629,541	717,677	207,329	111,639	343,687	1,380,331	17,328,700	1	
사서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사서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교무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험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실습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유치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복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전산보조원	305	710,700	13,730,724	11,473,619	37,618	564,276	541,705	156,493	84,265	259,417	1,041,880	13,079,775	1	
조리사	245	710,700	13,730,724	9,216,513	37,618	376,184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1	
조리보조원	245	710,700	13,730,724	9,216,513	37,618	376,184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2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단위: 일수/일, 금액/원)

학교명 : 증평정보고등학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기초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1회봉	연봉기준액 (기초호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로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소계		
영양사	365	792,900	15,318,828	15,318,828	41,969	15	629,541	717,677	207,329	111,639	343,687	1,380,331	17,328,700	1	
사서			-	-	-		-	-	-	-	-	-	-		
사서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교무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13,730,724	37,618	15	564,276	643,275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3	1	
생활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실습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유치원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전산보조원	320	710,700	13,730,724	12,037,895	37,618	15	564,276	567,098	163,828	88,215	271,577	1,090,718	13,692,899	1	
조리사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조리보조원	245	710,700	13,730,724	9,216,513	37,618	10	376,184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5	
급식사무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충주상업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기초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적용 분봉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호봉 *21*92%)		연봉기준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	일반직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교무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험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실습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유치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복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전산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조리사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청도정보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자 일수	연봉액			일할 기준액	보수가산			금				합계	비고 (인원)	
		직종별 연봉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연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자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로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	일반직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교무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험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실습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유치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복수교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전산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조리사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필지 작성 (엑셀화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영동인터넷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일수	연봉액			일할기초액	보수가산		부담금				합계	비고(인원)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총액*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계약근로일수/365)		연차일수	연차보상비	특별근무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신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365	792,900	15,318,828	15,318,828	41,969	629,541		717,677	207,329	111,639	343,687	1,380,331	17,328,700	1
사서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사서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교무보조원	245	710,700	13,730,724	9,216,513	37,618	376,184	10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1
실용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실습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유치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복수교학부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전산보조원	365	710,700	13,730,724	13,730,724	37,618	564,276	15	643,275	185,835	100,065	308,057	1,237,232	15,532,233	1
조리사	245	710,700	13,730,724	9,216,513	37,618	376,184	10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1
조리보조원	245	710,700	13,730,724	9,216,513	37,618	376,184	10	431,671	124,705	67,149	206,723	830,248	10,422,946	4
금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자 인원수	연봉액			월 기본액	보수가산			과금				합계	비고 (인원)	
		직종 분류	1호봉	연봉기준액 (기초호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자 수/365)	인차 일수	인차 보상비	특별근로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	일반직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	-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교무보조원	275	-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험보조원	-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실습보조원	-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유치원보조원	-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전산보조원	275	-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조리사	-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보조원	-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급식사/급식보조원	-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익셀화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여성여자상업고등학교

(단위: 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자 일수	연봉액			일할 기준액	보수기산			부담금				합계	비고 (인원)	
		적용 분봉	1호봉	연봉기준액 (기준호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일 수/365)	연차 일수	연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	일반직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교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실험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실습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유지원보조원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전산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조리사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급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2006년도 비정규직 계약현황

학교명 : 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

(단위:일수/일, 금액/원)

직종	계약근로자 일수	연봉액			일할 기준액	보수가산			금				합계	비고 (인원)	
		직종 분봉	1호봉	연봉기준액 (기초호봉 *2(1*92%))		연봉액 (연봉기준액* 계약근로자 수/365)	인차 일수	인차 보상비	특별근무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영양사	-	일반직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	-		792,900	15,318,828	-	41,969	-	-	-	-	-	-	-	-	-
사서보조원	-	기능직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교무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실황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실습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유지원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특수교육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전산보조원	275		710,700	13,730,724	10,345,066	37,618	10	376,184	482,456	139,376	75,049	231,043	927,924	11,649,174	1
조리사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조리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음식사무보조원	-		710,700	13,730,724	-	37,618	-	-	-	-	-	-	-	-	-

* 작성요령 : 서식은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사항중 흰색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비고란에는 직종별 인원수 기재
학교별로 별지 작성 (엑셀파일 SHEET별)



교육인적자원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초중등학교 학교회계직원계약관리기준(안) 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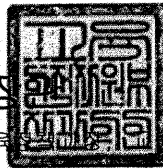
- 1. 관련 : 초중등학교 비정규직대책 시행계획(2004.6.11)
교육재정지원과-2629(2005.6.27)

2. 주5일제 확대 실시 및 공무원보수체계개편에 따라 기 시행 중인 학교회계직원계약관리기준(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보완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송부 하오니, 시·도교육청 및 국립학교에서는 실정에 맞도록 자체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6학년도 근로계약이 비정규직대책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동등한 교육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조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 관리기준(안) 1부. 끝.

교육인적자원부



수신자 시도교육청, 국립학교1, 국립학교2, 과학실업교육진흥정책과장, 특수교육정책과장
학교체육보전급식과장

교육행정주사보 **서경희** 교육행정사무관 **김제명** 지방교육재정담당 **성삼제** 재정기획관 **02/22**
관 **함민철**

협조자

시행 지방교육재정담당관-936 (2006.02.22.) 접수 총무과-1642 (2006.02.23.)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 http://www.moe.go.kr
18층 1711호

전화 (02)2100-6365 / 전송 (02)2100-6374 / seohee@moe.go.kr / 공개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 관리기준(안)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공립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연봉제 계약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봉제 계약방법, 처우, 기타 근로조건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회계직원) 학교회계직원이라 함은 각급 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근로계약) ①학교회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근무는 학교의 장과 직원 간에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의한다.

②근로계약에는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로의 내용
2. 근로계약기간
3. 근무일 및 근무시간과 이를 초과한 근무에 대한 수당지급
4. 보수, 보수지급 방법 및 보수지급 시기
5. 휴가
6. 재계약, 계약의 해지 및 사전예고
7. 퇴직금

제4조 (근로계약기간) ①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의 도중에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한다.

제5조 (근무일) ①직원의 근무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소정의 날로 한다.

②학교의 장은 별표1의 근무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을 정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근무일을 정할 때 연봉기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 기준일수 범위내에서 재량휴일, 개교기념일, 소풍, 시험일 등은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근무일수 산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연봉기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학교의 장은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 중에는 특별히 날짜를 지정하여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근무시간) ①직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의 복무에 관한 조례. 이하 같다)을 준용하되,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1주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 15시간이상 32시간이하의 범위 안에서 근무시간을 정하여 시간제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보수)①직원의 보수는 별표2를 기준으로 하여 연봉으로 계약한다. 다만,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근무일수를 정한 경우는 당해 근무일수를 연봉기준일수로 본다.

②연봉은 상여금, 각종 수당,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의 각 호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1. 특별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2. 연차휴가 보상비
3. 퇴직금

제8조 (보수의 지급) ①보수는 연봉을 12로 나누어 매달 17일에 지급한다.

②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직원은 연봉을 계약일이 속한 달로부터 익년 2월까지의 달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단, 계약일이 17일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지급한다.

③17일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을 보수지급일로 한다.

제9조 (연봉의 일할계산)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계약기간에 대하여 연봉을 일할 계산한다.

②연봉을 일할 계산하는 때에는 별표2의 연봉기준액을 365로 나눈 금액(이하 "일할기준액"이라 한다)에 일할계산 기간 중의 근무일과 유급휴일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으로 한다.

제10조 (결근시 보수의 감액) ①직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2조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제5조에서 정한 근무일에 무단 결근한 때
2. 제6조에서 정한 근무시간에 미달하게 근무한 경우에 그 미달 시간의 합이 1일 근무시간에 달한 때

②제1항에 해당하는 일수가 연차휴가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일할기준액을 곱한 금액을 보수에서 감액 지급한다.

제11조 (특별근무수당 등) ①직원이 제5조제5항에 의하여 특별 근무하는 때에는 특별근무일수에 일할기준액의 1.5배 금액을 특별근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직원이 제6조에 의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때에는 초과 1시간당 제1항의 특별근무수당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연차휴가) ①학교의 장은 직원이 1년간 8월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5일 (별표1의 근무유형 "을" 또는 "병"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10일)간의 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별표1의 근무유형 “을” 또는 “병”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병” 또는 “을”은 10일)에서 공제한다.

④ 학교의 장은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기간 매2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에 1일을 가산하되, 총 연차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학교의 장은 직원이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에 일할기준액을 곱한 금액을 매년 2월 보수 지급시에 연차휴가 보상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병가) ①학교의 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60일(기간중의 휴일을 포함한다)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②학교의 장은 직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간 180일(기간중의 휴일을 포함한다)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연간 6일 이내의 병가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는 유급으로 하되, 제2항의 경우 그 기간중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 청구권은 학교의 장이 갖는다.

④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병가일이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가) 학교의 장은 직원이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기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 (경조사휴가) 직원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여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6조 (출산휴가등) ①학교의 장은 직원이 임신하는 때에는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중 최초 60일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출산휴가 종료후에는 직원을 휴가전과 동일한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여성인 직원에 대하여는 직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17조 (육아휴직) ①학교의 장은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을 재직한 자로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직원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육아휴직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하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학교의 장은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직원을 휴직전과 동일한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①학교의 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때
2. 제13조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하고도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입혔을 때
4. 사업의 종료, 예산의 감축 등의 사유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때

②학교의 장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일차 경고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이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문서로 그 시기와 사유를 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직원이 자의로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14일전에 근로계약의 해지 의사를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퇴직금) ①학교의 장은 직원이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 당해연도 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퇴직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된 특별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의 3분의 1 상당액
2. 퇴직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의 12분의 1 상당액

②학교의 장은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직중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20조 (보수의 정산) 학교장 또는 직원이 근로계약을 계약기간의 중도에 해지하는 때에는 일할기준액에 근무기간 중의 유급일수를 곱한 금액에서 기지급한 보수를 공제하여 가감 지급한다.

제21조 (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 (보험가입) 학교의 장은 직원을 피보험자 또는 연금가입자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 (직무연수) ①학교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원으로 하여금 각종 연수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에 참가하는 때에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되,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재계약) ① 근로계약은 매년 1년단위로 재계약한다.

②학교의 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직원이 제1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직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약의 변경) 학교의 장은 계약기간 중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원과 합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① (종전의 기준적용) 이 기준 시행 직전일 현재 국·공립학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지침, 내규 또는 관례(이하 “종전의 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상시 고용되어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 받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기준에 의하는 것이 당해 직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② (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별표2의 연봉 기준액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시행시기	2004. 7. 1.	2005. 3. 1.	2006. 3. 1. 이후	2007. 3. 1. 이후	2008. 3. 1. 이후
연봉기준액	별표2 연봉기준액의 84% 상당액	별표2 연봉기준액의 88% 상당액	별표2 연봉기준액의 92% 상당액	별표2 연봉기준액의 96% 상당액	별표2 연봉기준액의 100% 상당액

③ (연차유급휴가산정) 제12조제4항의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갑” 근무유형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25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2. “을”또는“병” 근무유형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일	10일	11일	11일	12일	14일	17일	19일	20일	25일

[별표1]

학교회계직원 근무유형

근무 유형	근무일	연봉 기준일수	무급휴일	대상직종 (예시)
갑	관공서의 공휴일을 제외한 날	365일	없음	영양사 사서 사무보조원
을	학교의 수업일, 여름겨울방학일 중 각 4일 방학일 중 학교장이 정한 날	275일	여름겨울 방학일 (방학중 각4일과 학교장이 정한 날 제외)	교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실험보조원 실습보조원
병	학교급식일, 준비일(수업기간중의연간9일), 여름겨울방학일 중 각4일	245일	토요일(수업기간중 의 연간9일의 급식 준비일은 제외) 여름겨울방학일 (방학중 각4일 제외)	조리사 조리보조원

※ 비고

1. 관공서의 공휴일(주차휴가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2.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때에는 근무일수 산정시 3일로 계산하여 연봉에 포함함.
3. 근로계약기간의 구성

근로계약기간			
연봉기준일수			무급휴일
소정의 근무일		유급휴일	
실제 근무일	결근일		

[별표2]

학교회계직원 연봉표

1. 연봉기준액

연봉등급	적용대상	연봉기준액	비고
1등급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일반직 6급1호봉 월 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	
2등급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일반직 7급1호봉 월 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	
3등급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일반직 8급1호봉 월 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	
4등급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일반직 9급1호봉 월 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	
5등급	기능10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기능직 10급1호봉 월 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연봉

가. 별표1 해당자 : 연봉 = 연봉기준액 × $\frac{\text{연봉기준일수}}{365}$

나. 제6조제2항 해당자 : 연봉 = 연봉기준액 × $\frac{\text{연간근무주수}}{\text{연간총주수}} \times \frac{\text{주당근무시간}}{40}$

다. 가산 : 5등급 직원으로 다음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봉액의 5% 상당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 1) 조리사(자격증소지자중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책임자 1인)
- 2) 전산보조원중 학교장이 인정하는 전산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스 관련 자격증은 제외) 소지자 1인

◆ 신구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1] 학교회계직원 근무유형					[별표1] 학교회계직원 근무유형				
근무 유형	근무일	연봉 기준 일수	무급휴일	대상직종 (예시)	근무 유형	근무일	연봉 기준 일수	무급휴일	대상직종 (예시)
갑	관공서의 공휴일을 제외한 날	365일	없음	영양사 사서 사무보조원	갑	관공서의 공휴일을 제외한 날	365일	없음	영양사 사서 사무보조원
을	학교의 수업일, 여름·겨울 방학일중 각4일	275일	여름·겨울방학일 (방학중 각4일은 제외)	교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실험보조원 실습보조원	을	학교의 수업일, 여름·겨울방학일중 각4일, 방학일중 교장이 정한 날 제외	275일	여름·겨울방학일 (방학일중 각4일과 교장이 정한 날 제외)	교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실험보조원 실습보조원
병	학교급식일, 준비일(수업기간중의 연간9일의 급식준비일), 여름·겨울방학일중 각4일	245일	토요일(수업기간중의 연간9일의 급식준비일은 제외) 여름·겨울방학일 (방학중 각4일은 제외)	조리사 조리보조원	병	학교급식일, 준비일(수업기간중의 연간9일의 급식준비일), 여름·겨울방학일중 각4일	245일	토요일(수업기간중의 연간9일의 급식준비일은 제외) 여름·겨울방학일(방학중 각4일은 제외)	조리사 조리보조원
[별표2] 학교회계직원 연봉표					[별표2] 학교회계직원 연봉표				
1. 연봉기준액					1. 연봉기준액				
연봉 등급	적용 대상	연봉기준액		비고	연봉 등급	적용 대상	연봉기준액		비고
1등급	생략	국가공무원 일반직 6급1호봉 월지급액의 26배에 상당하는 금액			1등급	생략	국가공무원 일반직 6급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		
2등급	생략	국가공무원 일반직 7급1호봉 월지급액의 26배에 상당하는 금액			2등급	생략	국가공무원 일반직 7급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		
3등급	생략	국가공무원 일반직 8급1호봉 월지급액의 26배에 상당하는 금액			3등급	생략	국가공무원 일반직 8급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		
4등급	생략	국가공무원 일반직 9급1호봉 월지급액의 26배에 상당하는 금액			4등급	생략	국가공무원 일반직 9급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		
5등급	생략	국가공무원 기능직 10급1호봉 월지급액의 26배에 상당하는 금액			5등급	생략	국가공무원 기능직 10급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		

□ 2005년도 교육정책연구과제 추진 실적

(단위:천원)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비	책임 담당관
공모-1	미래사회의 교육지도성 개발	충북대 교수 정영수	2005.5.16~ 2005.11.15	30,000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공모-2	기초학력 부진아 지도방안	극동대 교수 조규영	"	7,800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공모-3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주말학교 활동 프로그램 개발	충주건국대 교수 유소영	2005.5.16~ 2005.12.15	10,000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공모-4	방학 중 유치원생 Edu-Care 운영 프로그램 개발	청주과학대 교수 지옥정	2005.5.16~ 2005.11.15	8,000	초등교육과 유이특수담당
공모-5	단위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교무 분장 조직과 역할에 관한 연구	교원대 교수 김종건	"	10,000	초등교육과 인사담당
공모-6	English Camp 운영 프로그램 개발(5박 6일)	충북대 부교수 유 범	2005.5.16~ 2005.8.31	8,000	외국어교육원 김준곤
공모-7	글짓기 능력평가를 위한 기준 및 평가자료 개발	서원대 부교수 최지현	2005.5.16~ 2005.11.15	10,000	중등교육과 장학담당
공모-8	한글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효과적인 지도 전략	한글사랑연구회 회장 이혜진	"	10,000	중등교육과 장학담당
공모-9	직업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교원대 교수 김진수	"	10,000	과학실업교육과 실업교육담당
공모-10	컴퓨터 영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충북대 조교수 이종연	"	8,000	교육정보화과 정보교육담당
공모-11	학생들의 '학교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청주과학대 조교수 허정무	"	10,000	기획관리과 행정담당
공모-12	미래형 학교설계 모형 연구	극동정보대 부교수 김승근	"	10,000	시설과 건축1담당
공모-13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시설 개선에 관한 모형 연구	세명대 전임강사 최영식	"	10,000	시설과 건축1담당
공모-14	교육혁신을 위한 학교경영 매뉴얼 개발	용성초 교감 김수연	2005.7.29~ 2005.12.15	10,000	혁신담당관실 혁신기획담당
공모-15	단위학교 학력지원 수능매뉴얼 자료 개발	금천고 교감 임기혁	"	10,000	중등교육과 장학담당
공모-16	학생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개발	보은정보고 교사 우세종	"	8,000	중등교육과 생활지도담당
공모-17	단위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모형 개발	청주대 부교수 이두원	"	10,000	기획관리과 기획담당
합계 (2005년도)				179,800	

2006년도 저소득층 자녀 지원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5		2006(1추포함)		증 감
	인원	예산액	인원	예산액	
교육정보화과	6,496	2,281,761	7,575	2,764,751	482,990
인터넷통신비	3,718	826,384	5,016	1,291,119	
위성방송수신료	201	13,508	175	12,936	
케이블TV수신료	1,206	31,839	1,193	31,496	
컴퓨터지원	1,170	1,404,000	1,191	1,429,200	
위성안테나이전료	201	6,030			
평생교육체육과	32,405	9,097,091	42,349	13,175,091	4,078,000
학생중식지원	21,154	7,420,335	20,600	7,013,226	
- 초등학교	9,594	2,817,252	8,800	2,412,322	
- 중 학 교	5,807	2,259,028	5,900	2,277,604	
- 고등학교	5,753	2,344,055	5,900	2,323,300	
토·공휴일급식	9,085	1,294,612	9,085	2,589,225	
유치원급식비	1,000	180,000	1,000	180,000	
벽지학교무상급식	1,166	202,144	1,090	334,920	
면이하지역무상급식			10,574	3,057,720	1-3학년분반영
기획관리과	4,179	3,612,600	9,826	11,187,872	7,575,272
만5세아무상교육비	3,049	2,690,660	3,380	5,492,732	
만3,4세아무상교육비	726	678,580	5,852	5,301,356	
유치원두자녀교육비	356	128,160	513	208,372	
장애유아무상교육비	48	115,200	81	185,412	
학교운영지원과	17,091	7,957,166	17,080	7,778,753	△178,413
중학생학비지원	7,403	1,207,817	7,317	1,164,077	
고등학생학비지원	9,688	3,789,608	6,378	3,711,086	
고등학생학비감면		2,959,741	3,385	2,903,590	
합 계	60,171	22,948,618	71,671	34,906,467	11,957,849

※ 2005년도 당초예산 : 13,433,204천원(추경 9,515,414천원)

※ 2006년도 당초예산 : 28,669,998천원(추경 6,236,469천원 증)

□ 지원기준

- 국민기초수급자, 모(부)자, 소년·소녀가장, 수용시설, 장애인자녀, 기타 저소득층자녀

